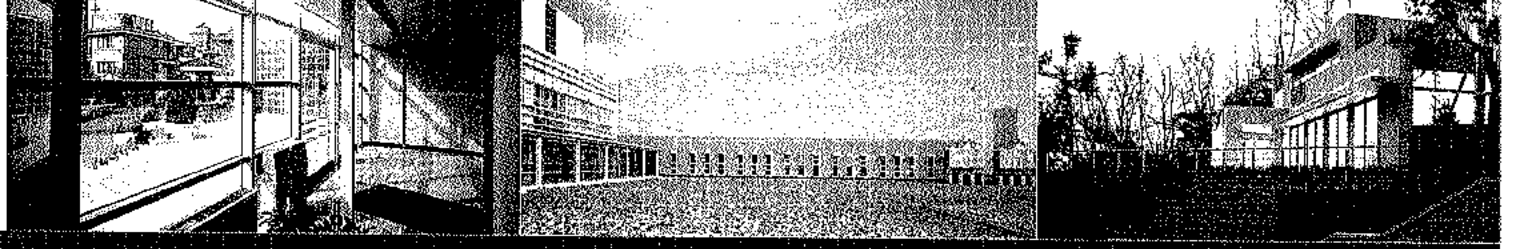

건축사

2000 11 vol. 379

칼럼 선배님들, 그래도 뭘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품리뷰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작품노트 레고이스트의 집과 레고피언의 집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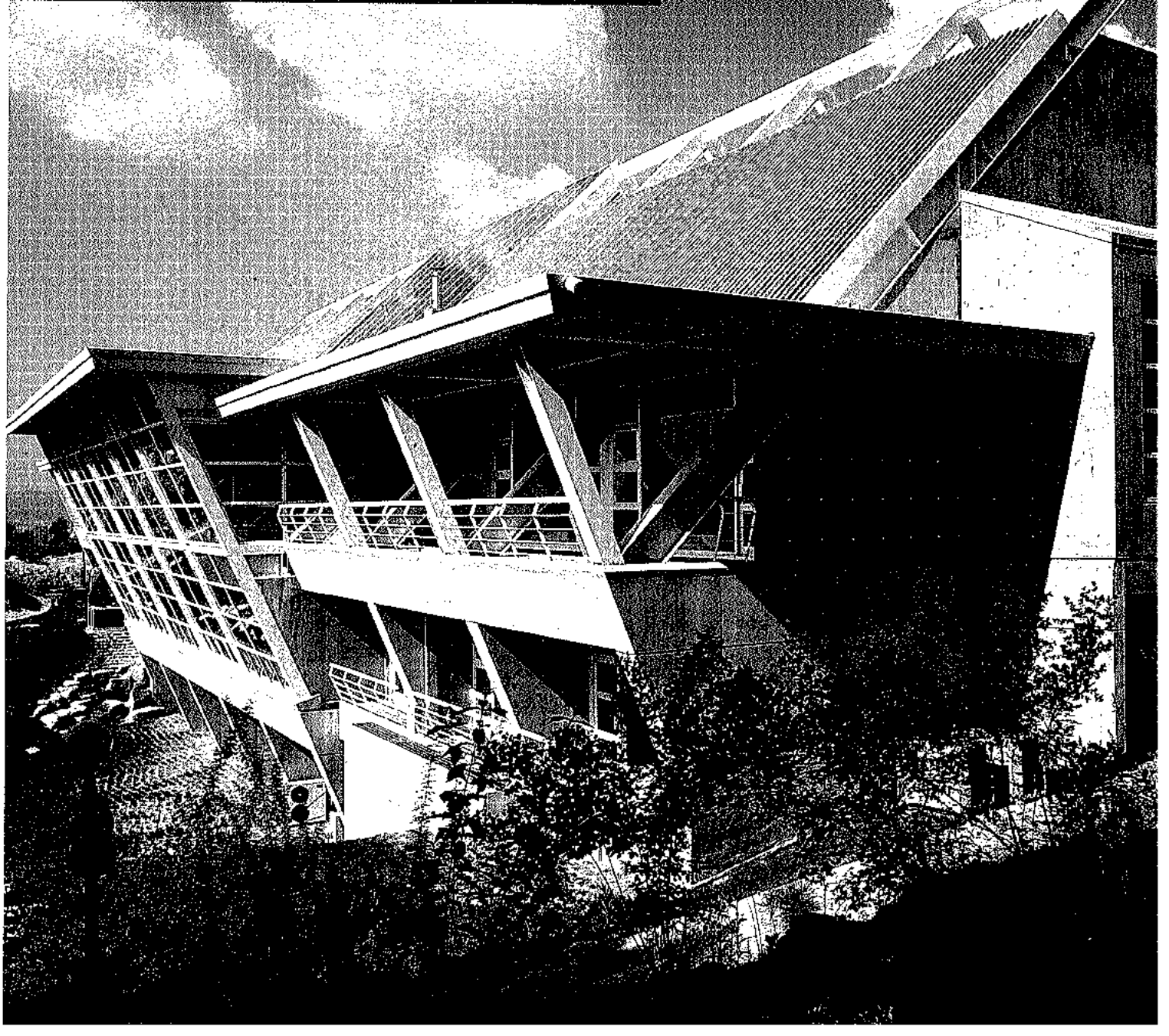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0년 11월호. 통권379호

건축사

차례 2000 11 37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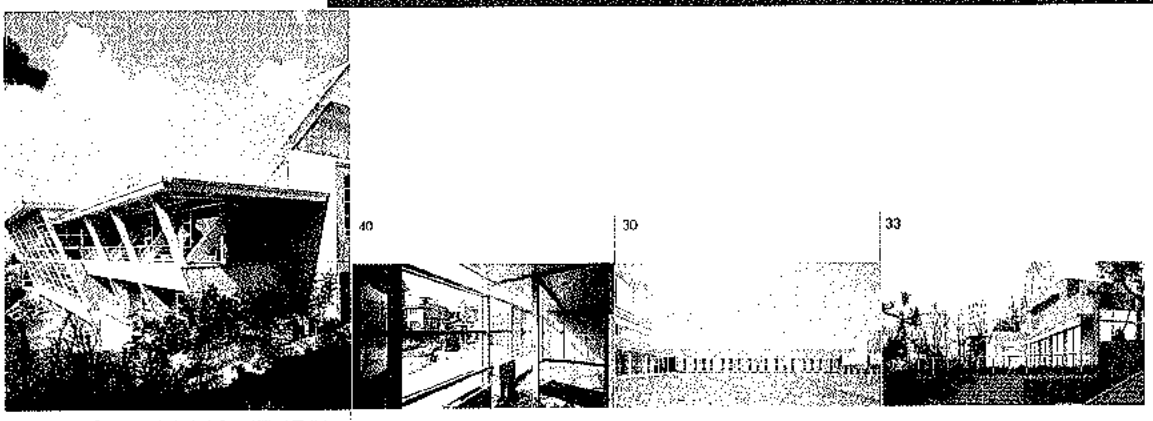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공일곤作)

칼럼	선배님들, 그래도 뭘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종건	12
작품리뷰 /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공일곤 + 김진균	14
	대담 : 소박하고 순박한 건축을 위하여	이범재	23
	비평 : 근대적 역동, 그 즉물적 표현	이공희	26
회원작품	한부엔지니어링(주) 사옥 및 공장	김상길 · 김희옥	28
	성북동 주택	유태용	3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김병년 · 현태헌	36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유경훈 · 한유환	40
	에이스 테크노타워 Ⅱ 아파트형 공장	오근석	43
작품노트	레고이스트의 집과 레고피언의 집	김승회	46
해외건축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4)	한동수	51
기고	풍수지리로 분석한 뉴욕의 명당(1)	박시익	60
리포트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9) 참관기(2)		64
건축만평		유원재	74
건축마당	협회소식		75
	건축계소식		79
	현상설계		83
	해외잡지동향		88
	법령(도시계획법시행령)		94
	회원현황		107
	통계(2000년도 9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08
	뒷마루		110

발행인 : 이의구
편집인 : 서천식
편찬분과위원회 : 위원장 / 장양순
위 원 / 김정회, 김흥수, 유원재, 조현군, 최동규
편집 · 취재 :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 (02)586-8823
인터넷 : http: //www.kira.or.kr
E-mail : hkjo@kira.or.kr hsjoung @kira.or.kr
U. D. C : 69/72(054-2): 0612(519)
인쇄인 : 유상태 / 천풍전산인쇄
광고 : (주)이두컴 (02)566-3984

Publisher: Lee Eui-Koo
Editor: Seo Cheon-Shik
Editorial Member :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Kim Heung-Soo, Yoo Won-Jai,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D.C: 69/72(054-2) :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 월간 "건축사"는 한국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Contents Vol. 379 November 2000

Column

Why Don't You Do Something For Our Society, Elders?	Lee Jong-Keun	12

Review / Engineer House,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ng Il-Kon & Kim Jin-Kyoon 14

interview	For a Humble and Modest Architecture	Lee Beom-Jae	23
critique	A Modern Dynamics and Its Objective Expression	Lee Gong-Hee	26

Works

Hanbu Eng. Office & Factory	Kim Sang-Gil & Kim Hee-Ok	28
Residence for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Korea, Sungbukdong	Yoo Tae-Yong	32
Seoul District Court Southern Branch	Kim Byung-Nyun & Hyun Tae-Hun	36
Dongdaemun Community Center	Yu Kyong-Hoon & Han Yu-Hwan	40
ACE Techno Tower Ⅱ Apartment-Type Factory	O Kun-Sok	43

Design Note

Legoist's House and Legopian's House	Kim Seung-Hoy	46

Overseas Architecture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Han Dong-Soo	51
Architecture of China (4)		

Feature

Propitious Sites of New York According to Feng-shui (1)	Park Si-Ik	60

Report

After Visiting The 9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2)		64

Cartoon — Yoo Won-Jai 74

Architects' Plaza

KIRA News	75
Archi-Net	79
Competition	83
Overseas Journal	88
Laws & Ordinances	94
Members	107
Statistics	108
Bulletin board	11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1~4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940 · 강북구건축사회/903 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 7163 · 관악구건축사회/864-0048 · 광진 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 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 8078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3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9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9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7-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3 · 도봉구건축사회/990-6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3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 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9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시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역건축사회/(031)364-1554 · 안산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694-4121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고신건축사회/(031)375-6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6706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6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 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논산지역건축사회/(041)8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6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 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3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4)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4)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3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 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 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6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8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5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 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 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선배님들, 그래도 뭘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Why Don't You Do Something For Our Society, Elders?

이종건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Lee Jong-Keun

세상이 온통 야단들입니다. 우리세상은 그놈의 경제 때문에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고, 저쪽 세상은 또 저쪽대로 전쟁이며 선거문제 등으로 벌집 들쑤셔놓은 듯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북쪽을 비롯한 소위 제3국들은 여전히 가난의 늪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해, 차마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인가 봅니다. 남이 겪는 생사의 고통이나 사랑하는 자와 생이별하는 현장에서마저도, 한 끼 배고픔과 같은 자기 육신의 고통을 속으로 더 갈급해 하니, 이 얼마나 부조리한 존재인지요. 저쪽 사회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또 개판이라 한들, 그것은 우리 앞에 오로지 영상으로 다가올 뿐, 어찌 나의 손가락에 박힌 가시만 한 구체적인 고통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제가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한들, 근간 상상하기 힘들게 추락한 허가건수와 면적, 그리고 제살 깎기 식의 비참한 설계비로 힘들어하시는 여러 건축사들의 고통에 감히 견주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하자면 또, 우리 건축계의 고난이 아무리 심한들 우리 바깥의 사람들은 아마 코방귀나 뀌겠냐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목전의 자기 욕망에 갇힌 채, 고통을 생산하는 구조나 시스템이나 주변정황들을 쉽게 돌아볼 여유를 갖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고 철없다 할 선배님들도 많을 줄 압니다. 현장에서 몸소 겪을 수밖에 없는 지극한 처절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저로서는,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공감들을 하실 지 알 수 없으나, 희망컨대 이 글을 읽는 순간만이라도 저와 같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잠시 떠나 보심이 어떠하신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목하 의약분업 문제로 여간 고통스럽고 또 만인의 골머리를 썩히는 게 아닙니다. 한 편으로 보건대 그들이 가진 정치력이 마냥 부럽고, 그래서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우리 처지가 더 비참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슈들 중 하나만 들어, 전공의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야말로 '교과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구조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실하고, 또 그래서 누구도 맞서 반박하기 힘든 주장이나, 도대체 어떤 학의 근본도 우리사회에서 도무지 통용될 수 없는 현실의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 모두 알진대, 그게 얼마나 섹시한 요군지 뻔하지 않습니까. 사회의 모든 문제는 힘의 역학 곧 정치로 귀속한다는 사실을 새삼 들추지 않아도, 그들 덕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들여다 볼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인들은 어떤 사회적 측면들의 조정과 변혁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

까? 그 이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회일반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 건축사회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의 견지에서(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회의 도모가 아니라, 약육강식이라는 원시적 힘의 대결구도로 사회를 경쟁의 무대로 치환시키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방편에 다름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그 일이 그 일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에너지가 학회와 가협회와 사협회로 이리저리 나누어져 중복 사용되어 소모되는 지극히 비생산적인 현실을, 항차 후배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우선 짚어봅시다. 세 단체의 발행지(가협회는 얼마 전부터 웹진으로 바꾸었읍니다만, 여전히 기능은 같습니다)들을 왜 하나로 묶어 낼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인력 풀의 문제에서 보자면, 왜 각기 유사한 분과들을 만들어 같은 일들을 해 나가는지요? 더 나아가, 세 단체를 하나로 합칠 수는 왜 없는지요? 최근 FIKA(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 인가 하는 통합기구는 참으로 오랜 정신적 가뭄의 단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계기로 유기적 통합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지요? 제가 감히 판단컨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아마 여타 우리 사회현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기독교가 수십이 넘도록 많은 교파들을 파생시킨 데에는 필시, 서로가 다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소위 천상천하 유아독존 식의 그놈의 유치한 프라이드, 그러니까 제 자리(혹은 밥그릇) 만들기라는 이욕의 뿌리가 엉켜있듯, 우리 세 단체도 그 근본에는 장(長) 자리 욕(慾)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선배님들, 거듭거듭 반복하는 후학들의 소망, 어찌 좀 안되겠습니까?

앞서 말했듯, 당장 일이 없어 사무소 보전조차 막막한 입장이란 걸 저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또 피부로 느낍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보아도, 지금만큼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그러니 마땅히 설계경기가 빈사상태로 돌아선 적은 없는 듯 합니다. 각자의 생존걱정에 코가 석잔데,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이 급한데, 무슨 수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더 나아가 '큰'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느냐고 능히 반문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쯤 거창하게 말해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상념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후손들이나 후학들을 위해, 그래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일말의 관심이라도 가지시고 계신다면, 한 번쯤 옛날 선비들이 걸었던 '배움 10년/ 봉사와 실천 10년/ 죽음준비 10년' 이라는 삶의 여정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혹 그러고는 싶은데, 우리에게 의사들만큼의 정치력이 없는 까닭으로 크게 어찌 할 여력이나 입지가 없다고 말하신다면, 제가 어느 지하철역에서 본 '실패한 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반면 성공한 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는 말뜻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그 말이 품고 있는 함정도 분명 있습니다만 교훈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작 외면한 채, 할 수 없는 일만 고민하는 어리석음을 탓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배님들, 혹시 우리나라 서쪽 절반(전라도)과 제주도를 어떤 사람이 독식한다는 소문은 들으신 적 없습니까? 소문이거니 하며 무시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걸 느끼신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벌써부터 그랬습니다만, 일없는 젊은 건축인들이 특히 요즘 그나마 목을 메고 있는 경기설계들이 어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것조차 해결할, 아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기미조차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두고, 하필이면 이리도 어렵고 힘든 때 그까짓 거창하고 공허한 사변으로 현실을 비켜가려 하냐고 질책하시는 선배님들도 적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시면 저는 그 분들에게,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희망을 동시에 거머쥐는, 니체가 요청한 삶의 태도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대는 벌써부터 영웅을 허락치 않았으니,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의 절박한 생의 질곡에 마냥 빠져들 수만은 없는 까닭으로, 최소한 영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영웅적인' 삶은 마땅히 시도해야 하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블로흐가 말하듯, 인간이란 항상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 가고 있는 도중에" 존재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래적 존재이고 동시에 '희망하는 존재' 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가 있는 곳에 반드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희망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우리건축도 희망 만들기에 그 시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의 어떤 희망도 칠흑처럼 매몰되어 그저 캄캄하기만 하여 도무지 눈을 감고 갈 수밖에 없던 일제강점기 시대, 희망이라는 씨를 뿌리다 앞이 막히거든 오히려 감았던 그 눈을 번쩍 뜨라고 하신 김동주님의 아래의 「눈감고 간다」는 지금의 우리에게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아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윤동주 - 1941. 5. 31) 선배님들, 자리에 계실 때 뭔가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圖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작품리뷰 review

Engineer House, Seoul National University

공일곤 / 향건축사사무소 + 김진균
Designed by Kong Il-Kon & Kim Jin-Ky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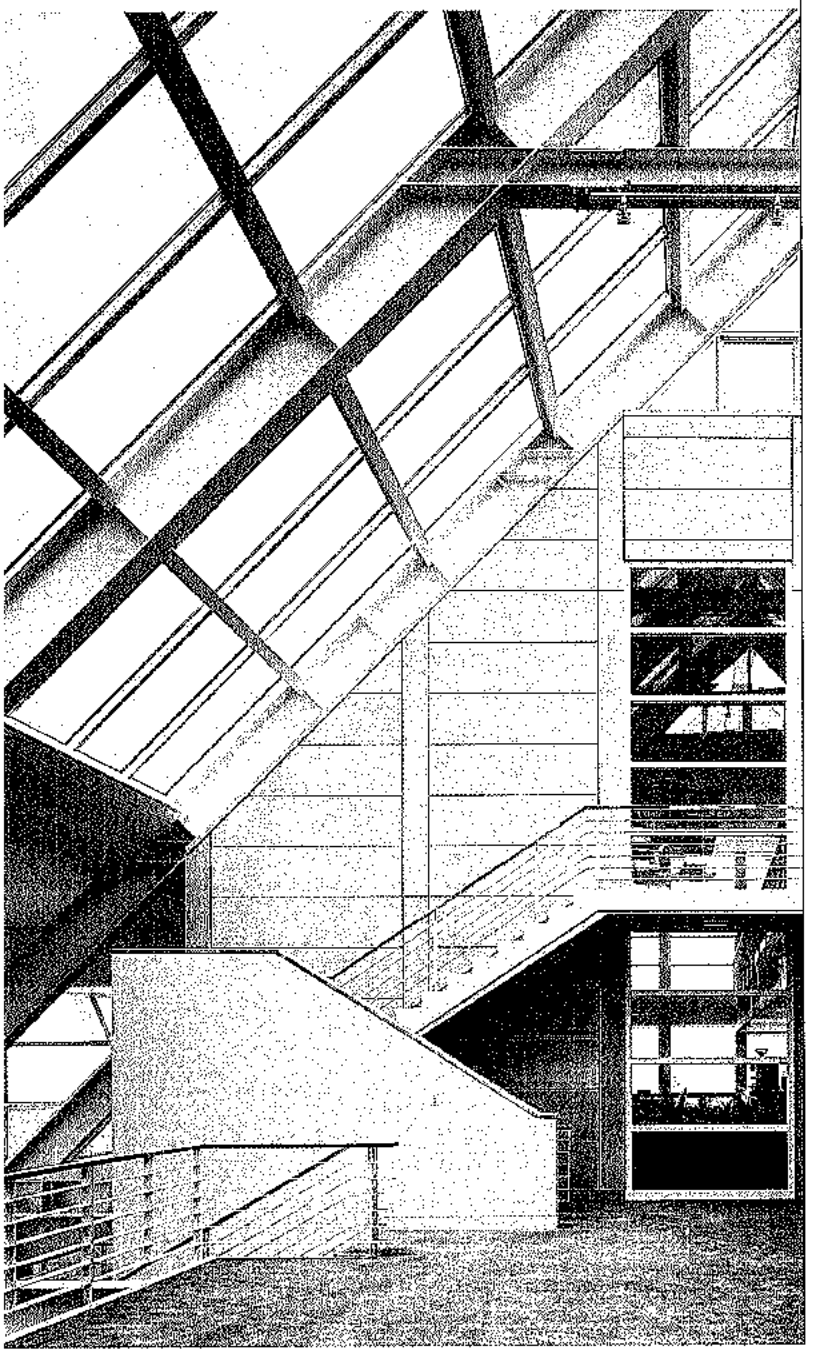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캠퍼스내
구조	철골조, 일부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2층
건축면적	3,014㎡
설계기간	1997. 8.~1998. 3.
공사기간	1998. 7.~2000. 5.
구조설계	이수원(서진구조)
설비설계	나정서(나우설비)
전기설계	이성영(건우전기)
시공	현대산업개발(주)
설계담당	문병국(현,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영일, 전재필

당연한 1차적인 실용성을 제외한 건축물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아마 상징성(조형)이 떠오를 것이다. 한번 땅위에 지어진 건축물은 요지부동이고, 주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다.(경우에 따라서는 후자가 주 목적인것처럼 보일때도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과거의 건축물은 특권층의 권위를 대변하는 중요한 수단이어서 실용성을 떠나 막대한 인력 및 재력을 투입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제와서는 건축물의 주인은 귀족계급이 아닌 일반대중이므로 우리는(건축가?) 당연히 보통사람들의 부담능력과 의식구조까지도 고려하여 설계에 임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건축조형으로 표현하는 상징성도 따라서 달라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성을 중요시해야 하고 공학적으로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조형을 위한 건축이 아닌 건축을 위한 자연발생적인 예술성을 가져야 하겠다. 용도가 없는 순수 예술분야라면 몰라도 현대건축의 의미는 위와 같은 관념하에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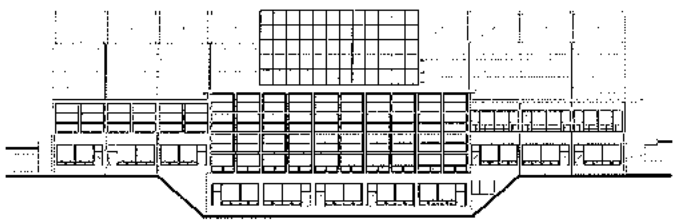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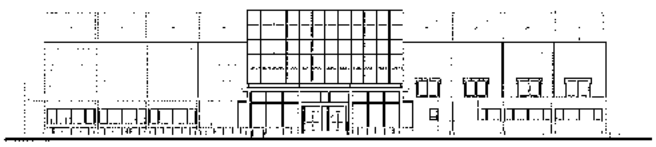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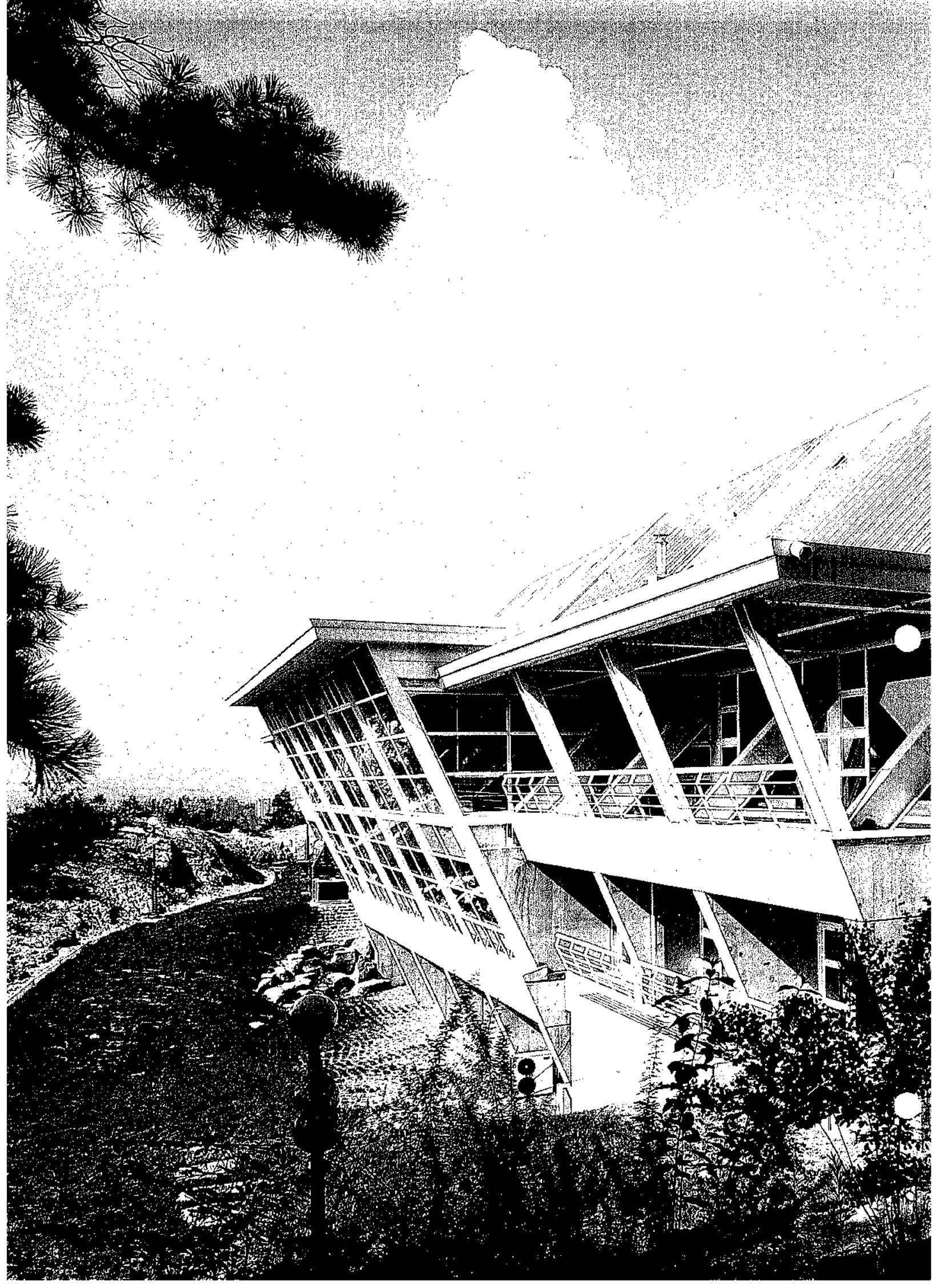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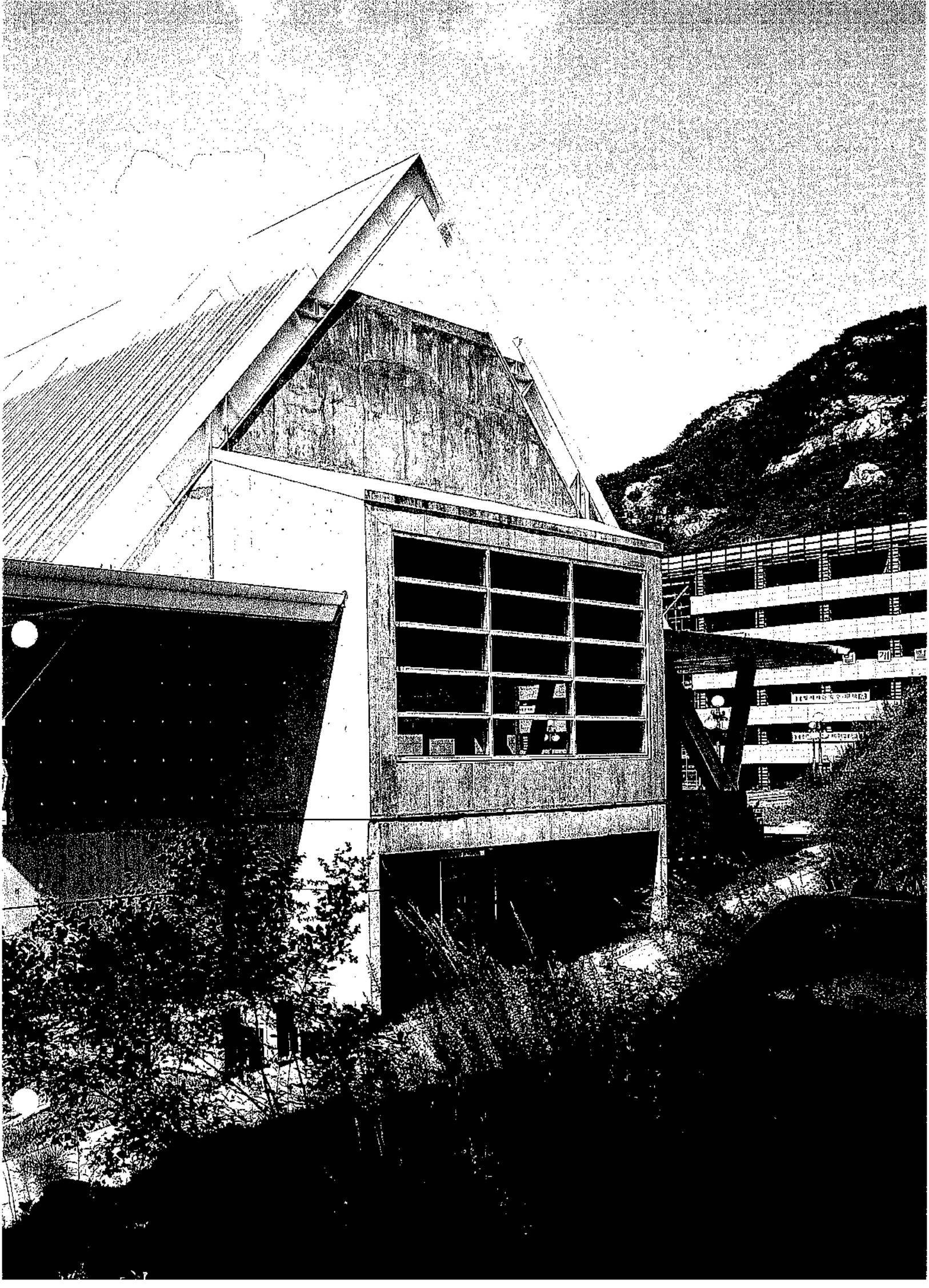

The most obvious characteristic of an architectural work besides its primary function of use would be the symbolic value of its form. A building, once built upon the ground, is a motionless, closed entity that nevertheless works great influences upon its surroundings.(At times, the latter may seem like its fundamental aim.) Therefore the great architecture of the past were mostly acknowledged as an effective tool to represent the authority of the ruling class, built with excessive manpower and wealth that had no direct relation with its practicality. Nowadays the owner of architecture is no more a selected group of people but the general public, so it's quite natural for the architect to consider in the design process the people's usual geists and the limits of their financial support. The object of a work's symbolism, as a result, also have changed, and this is why the economical, technological, and engineering aspects of a work bear great importance. A work must not be pretentious in its forms; its dimensions as art must be generated naturally from the work itself. Unlike pure arts, architecture is always rooted in actual use, and the meanings of contemporary buildings should stem from the concepts mentioned above.

Lo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Shinrim-dong, Kwanak-gu, Seoul
Structure	Steel Structure with Partial Reinforced Concrete
Number of Floors	2 with Additional 2 Below Ground
Building Area	3,014m²
Design Period	August 1997 - March 1998
Construction Period	July 1998 - May 2000
Structural Design	Lee Soo-won, Suhjin Structures
Installations	Na Jung-suh, Now Installations
Electric Installations	Lee Sung-young, Kunwoo Electrics
Construction	Hyundai Development Company
Designers	Moon Byung-kook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Lee Young-il, Chun Jae-p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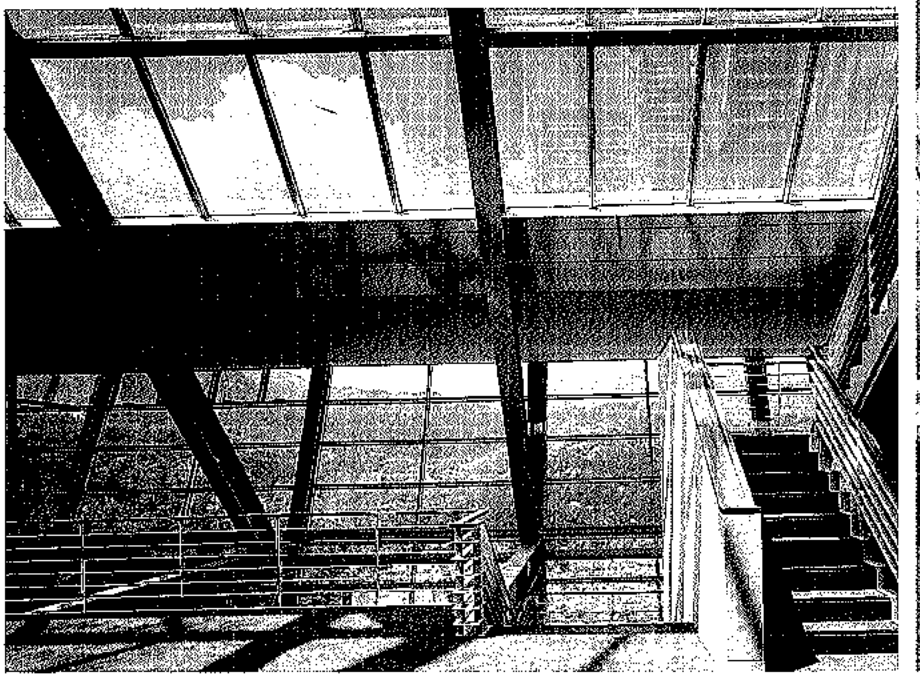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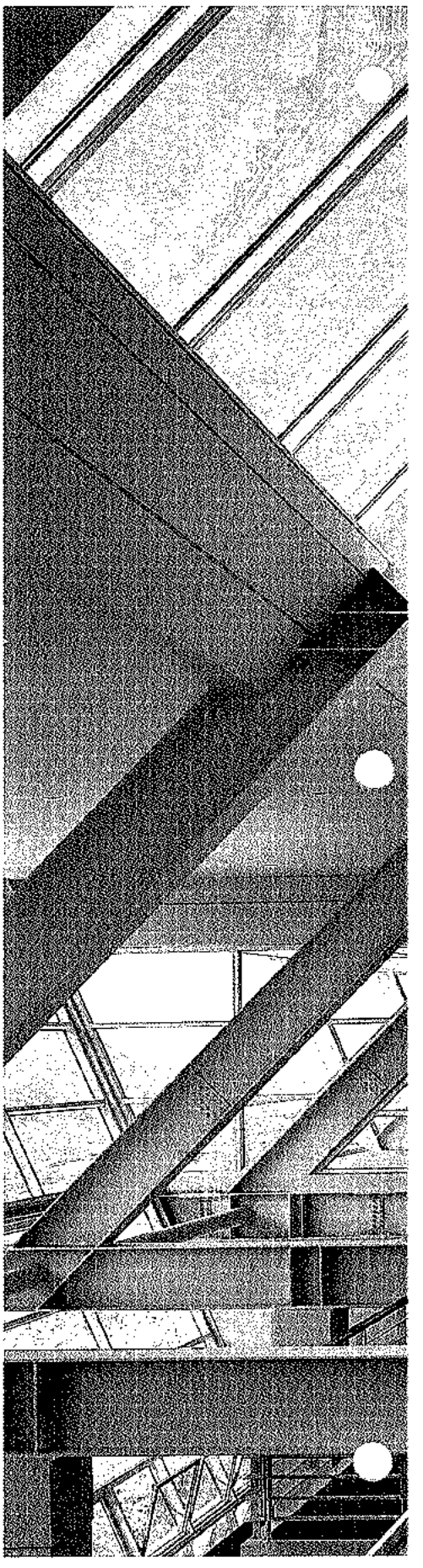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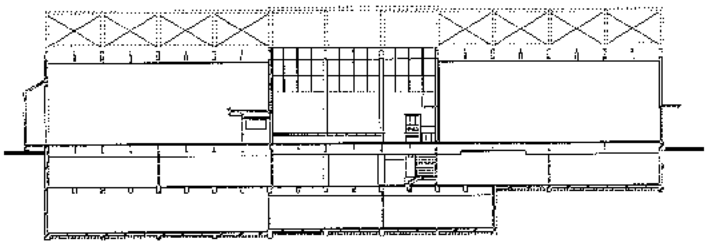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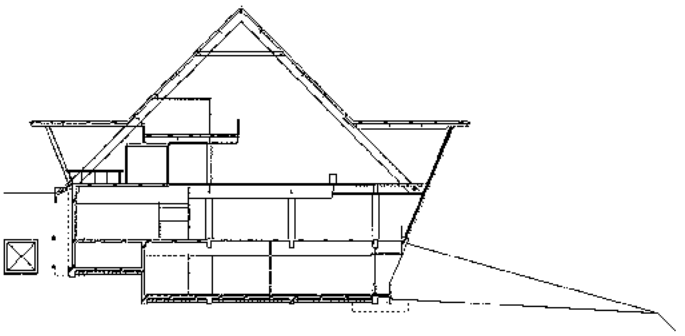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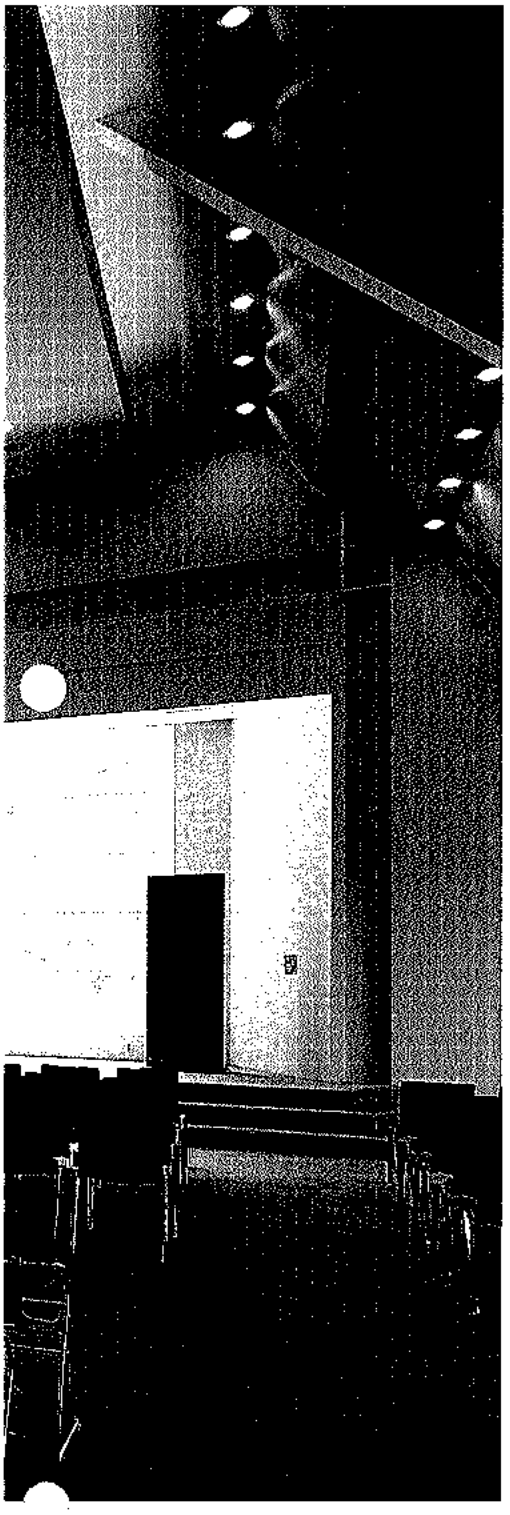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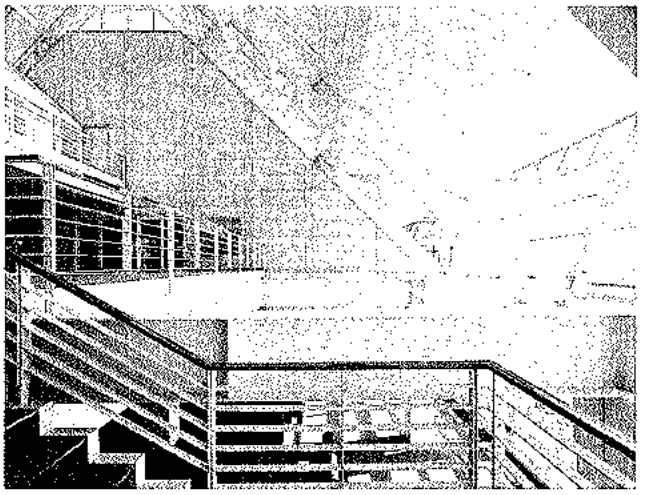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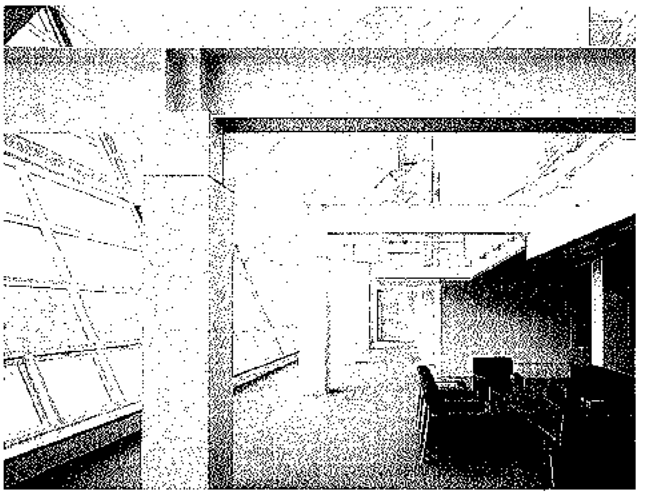

1. 기계실
2. 체력단련실
3. 욕실
4. 휴게실
5. 산학연구실
6. 세미나실
7. 강의실
8. 주방
9. 강당
10. 로비
11. 동창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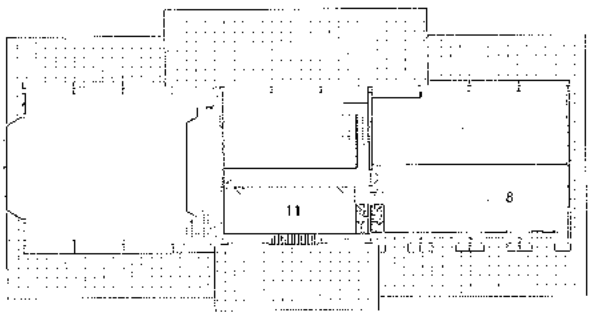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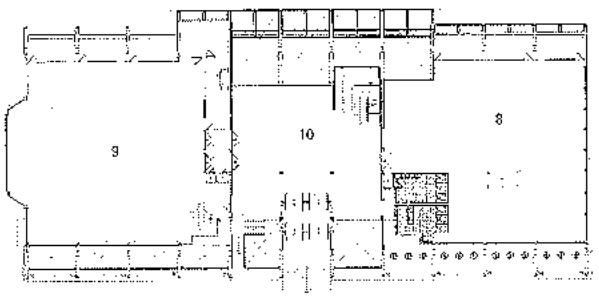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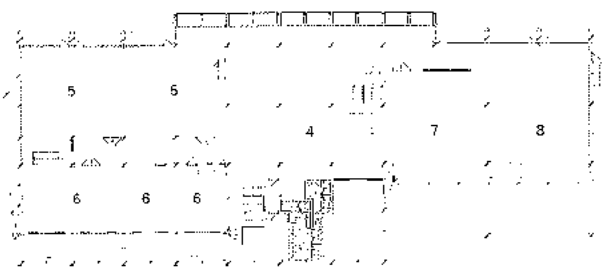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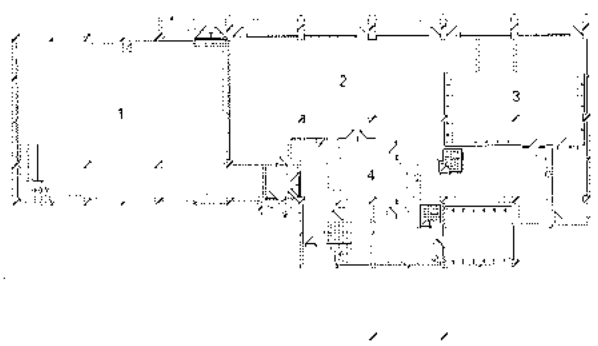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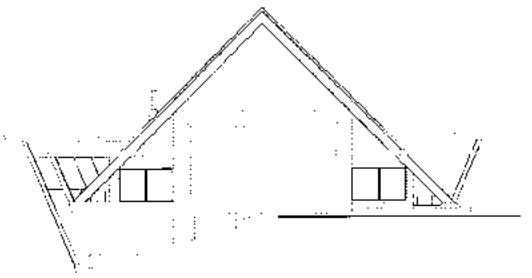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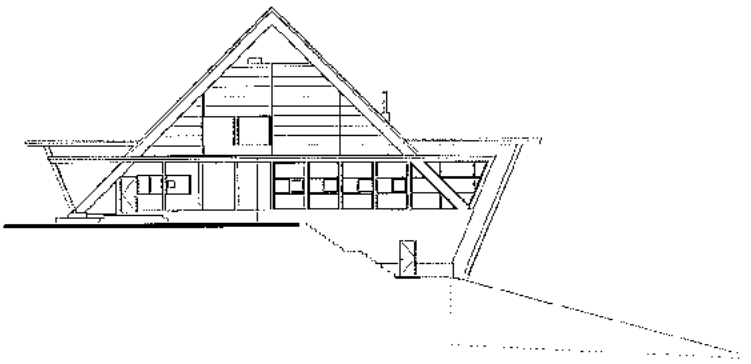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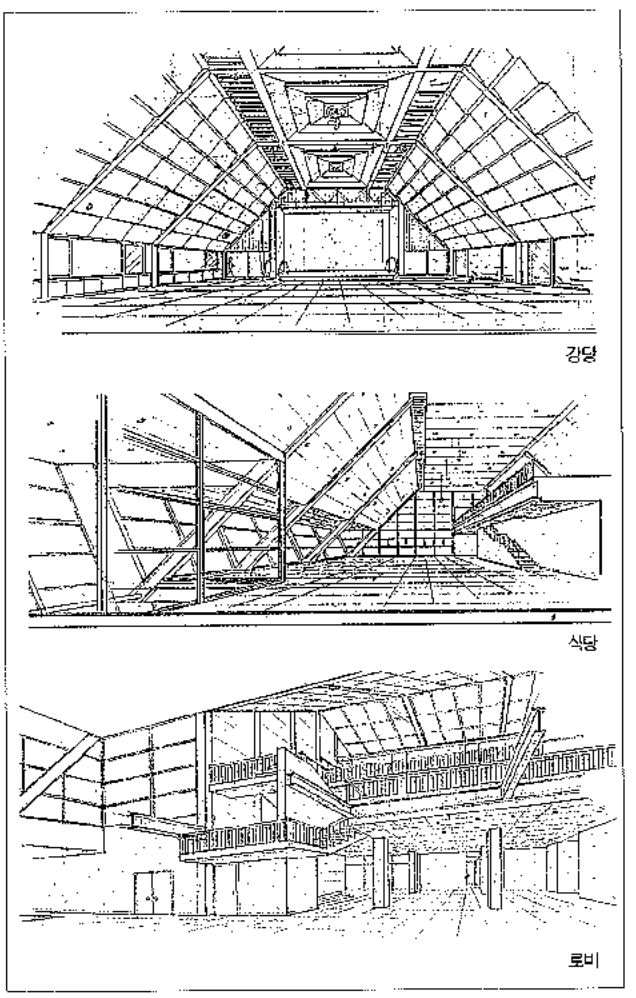

스케치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대담 interview
Engineer House, Seoul National University

소박하고 순박한 건축을 위하여

For a Humble and Modest Architecture

건축사 / 공일곤(향건축사사무소)
대담자 / 이범재(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일시 / 2000년 11월 7일(화)
장소 /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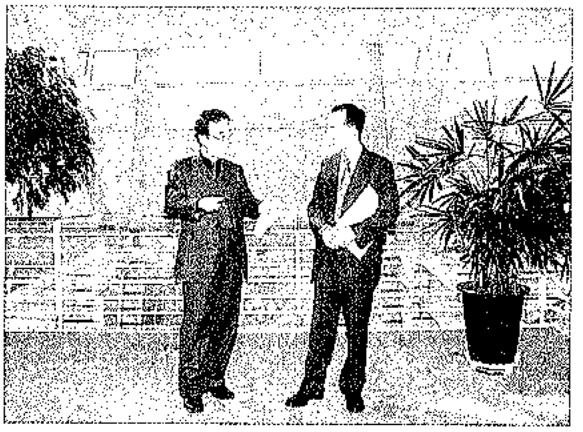

대담광경 (왼쪽:이범재, 오른쪽:공일곤)

이범재____오랜만에 작품을 발표하셨는데, 이런 곳에 이런 건축이 들어서게 되다니 좀 뜻밖입니다.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구상되어서 설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작다고 할 수 없는 규모인데 처음부터 기능과 규모가 정해져 있었는지요? 이곳은 캠퍼스의 외곽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런 캠퍼스의 분위기와는 아주 다르고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 공학관 건물과 인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일곤____말씀하신 대로 인접해 있는 공학관 건물의 느낌이 워낙 강하고, 위치를 고려할 때 과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최소한의 이미지로 처리돼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2층으로 된 것도 그런 이유가 반영된 것이고, 가능하면 지상 1층 이하로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이범재____이 건물은 경사가 심하고, 주위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그대로 있어서 참으로 계획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공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소위 디자인 개념이랄까 또는 건축어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일곤____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주안점으로 염두에 둔 것은 친근감없고 생명력도 부족하다는 현대공학의 산물(재료 및 기술)에다 감정을 부여해 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범재____공선생님은 주택을 많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주택의 아기자기한 스케일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건축적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공공의 공간을 만드는 데에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으신지요?

공일곤____건축가가 선호하는 것만 주로 골라서 설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 동시에 건축가의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차피 생업이 건축설계이고, 건축설계라는 것이 의뢰인의 부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족한 점 등은 보충,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이범재____김진균교수와 합동으로 설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며, 또한 진정한 의미의 합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상대방의 고집이나, 힘에 굴복한다는 단세포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공일곤____그동안 사무소를 운영해 오면서 느낀 것은 건축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리더가 있어서 전과정을 이끌지만 구성원간의 기탄없는 대화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김교수와의 협동은 가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재____소위 공학도같은 또는 엔지니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속이지 않는다, 솔직한 표현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사용된 ALC판이나 철골 등의 쓰임새를 강조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딱 연결되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자재자체의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랄까 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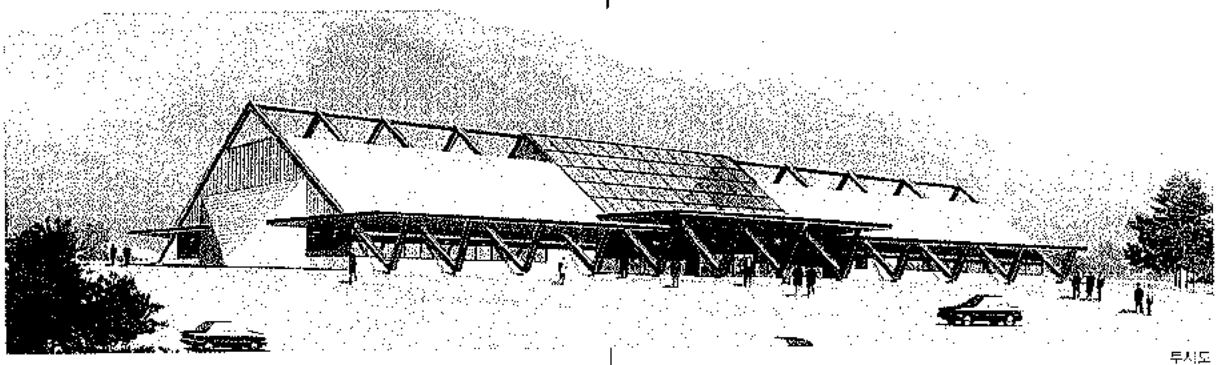

투시도

공일곤___이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주요 테마로 생각한 것은 우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환경에 적합한 자연적인 형태, 또 현재 시장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조립방식)을 최대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한 조형성 창출하기 등이었습니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자연과 어울리는 적합한 형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어느정도 방침을 정했고, 그 후에 조형성 창출하기에 이르러 많은 시간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현대의 공학도답게 표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구조상 필수적인 구조방식, 재료 등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 용도가 없는 장식(조형)을 위한 조작 안하기, 다분히 인공적이고 기계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합리적이고 공학적인 재료를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목재나 석재 등 자연환경을 파괴해야 하는 재료는 가급적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 기계적이고 친화성이 없다는 철재, 콘크리트, 유리 등을 2차 마감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감정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범재___건축주의 경제적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도 나름대로는 정도차이가 아닐까요? 이 건축물은 오히려 처음엔 예산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 예산에 적합하도록 하시다가, 어느정도 예산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당황하신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디까지 그런 돈문제로 인하여 디자인이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일곤___물론 건축물의 영속성을 고려할 때 설계자의 철학이나 판단에 따라 경제성의 관여 비중을 정하겠지만, 저는 의뢰인의 예산을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재___이곳의 로비는 천창이 투명하고, 벽면도 투명하여 그 반사되는 영상이 천정에 비치기도 하고, 여기저기 간섭이 일어나서 어떤 점에서는 마치 온실에 들어온 것같이 느껴지는데, 정작 이러한 공간을 설계하시고 싶어하셨느지? 아니면 이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요? 외부의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시각적으로 그냥 열어놓은 것은 아닌지요?

공일곤___예, 맞습니다.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이곳의 주변환경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로비는 간단히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노출된 공간으로 구성하려고까지 시도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고, 차선책의 하나로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내부공간이 아닌 내부공간에 있는 외부공간으로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범재___자연적인 자재 즉 목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 환경을 나쁘게 한다거나, 있는 것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인공적인 자재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좋은 자연환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런 곳에 건축물을 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뜻인지요?

공일곤___환경파괴의 최소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연을 훼손하는 건축행위는 제한되어야겠지요. 요즘 자연산 제품은 무조건 친화적이고, 산업생산품은 비인간적이라고 비하하는데 대해 일종의 구데타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수목이나 돌산 등이 남아 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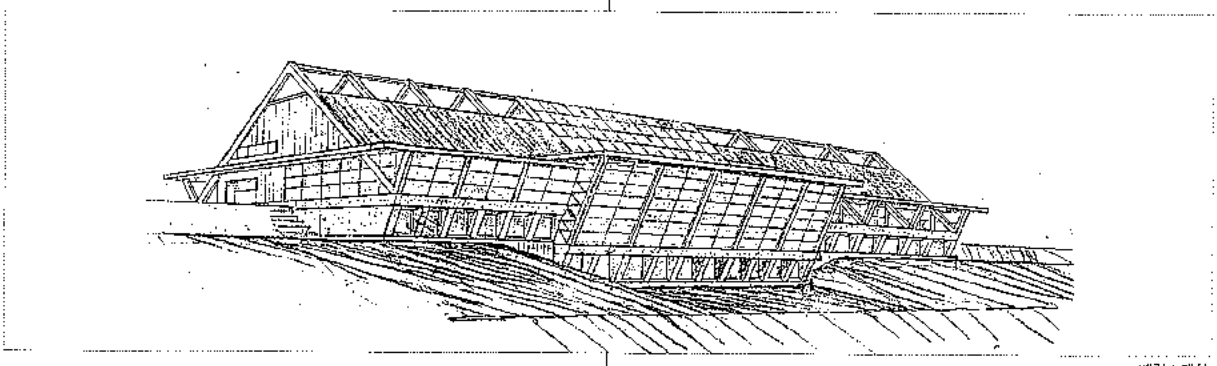

배면스케치

이범재___선생님은 이 작품에서 소위 말하는 장식적인 요소를 별로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솔직한 이미지, 소박한 건축물의 구현을 위하여 그러한 디테일의 사용을 자제하신 것으로 보아도 됩니까?

공일곤___쓸데없는 장식적 요소의 배제는 저로서는 기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생각컨대 저의 세부처리 능력이 부족한 점도 인정합니다.

이범재___왜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형상이 되었습니까?

공일곤___삼각형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구조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연적인 형태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범재___이곳은 현재 음식점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음식점에 맞게 내부가 좀 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결국 건축가가 인테리어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어떻게 그 역할을 규정하여야 할지요? 잘못하면 골조, 외관 또는 내부공간 이외에 여러 가지의 부분이 변하고 말 것인데 말입니다.

공일곤___인간으로 치면 기본 골격형태의 완성은 건축가의 영역이지만, 의상의 문제는 물론 골라줄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주 사용자의 의사개입 여부는 기본형태의 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도리어 적극 협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재___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감동적인 장소는 강당인 것 같습니다. 그 규모, 공간이 아주 아늑하고 휴먼스케일이면서 창으로 틔어진 벽면, 특히 무대의 후면이 유리로 되어 밖의 산이 보이는 이곳은 이 건축물에서는 가장 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강당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두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일곤___설계 착수 후 기본사항 설정 때, 강당, 로비, 식당 등이 성격상 특별한 공간 비례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강당은 이달우 전추진위원장(공대 동창회장)께서 공학 후배들을 위해 최고의 오디오시스템을 기증할테니까 이에 걸맞는 음악감상실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을 주문하셨고, 통상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연단후방의 개방을 김진균교수님이 제안하셔서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이범재___선생님은 건축을 시작한 이래 30여년 동안 본인의 작품속에 연연히 흐르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자세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일곤___설계를 진행하면서 형태나 건축조형에 대해 좋아하는 특정작가의 작품을 모델로 하더라도 결과는 그 작가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듯이 구태여 일관성이란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예술성을 강조하는 미의 작품에 앞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가장 안전성이 요구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현실적인 실용물이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조형성처럼 주관적인 문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닌 감상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감상의 문제가 실은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비평 critique

Engineer House, Seoul National University

근대적 역동, 그 즉물적 표현

A Modern Dynamics and Its Objective Expression

이공희 / 유창건축사사무소, 국민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by Lee Gong-Hee

산세가 배경이 되는 건축이 그러하듯 이 건축의 일견한 조형은 건축 가까이 근접된 관악산 지락을 따랐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이 건축은 캠퍼스 안에 있지만 캠퍼스 마스타프랜 전체가 갖는 지오메트릭한 질서의 힘이나 축이 제공하는 근거에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이 건축의 실마리는 여느 캠퍼스 안에 건축과는 다른 접근과 조형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여느 디자인의 과정과 같은 접근을 찾을 수 있다면 대지가 속해 있는 캠퍼스와의 관념적 연계와 캠퍼스정문의 직설적 상징과의 교감정도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건축은 캠퍼스 안의 하나의 건축이기보다는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즉물적 컨텍스트에서 그 규범과 구조적 실마리를 찾아간 다소 근대적인 접근의 시각에서 논의의 관점을 찾으려함이 의미롭다.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는 산세와 그것이 제공하는 한층차이가 나는 경사된 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요약에 관한 해법으로 후근대의 왜곡과 과장을 대신하여 산세와 지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한 삼각구조로 그 실마리를 풀고 있다. 삼각구조의 개연성을 더해주는 것은 건축이 갖고있는 프로그램들의 단면용적이다. 레스토랑, 오디토리움, 세미나실 등 모두 서로 다른 천정고를 갖고자 한다는 점이다.

대지의 형상에서 찾아진 삼각구조원형은 각기의 프로그램의 용적에 적응하면서 규모가 다른 삼각구조가 그 원형안에서 같은 질서로 조합된다. 마치 크고 작은 모듈이 건축에 적응, 조합하듯이 건축을 만든다. 진입하는 로비의 오픈닝이 가지고 있는 용적의 배분이 그러하고, 수직이동간 전망되는 계단의 외피가 산세로 누어 경사진 커튼월이 삼각구조의 일부가 된 것이 그러하다. 보다 큰 층고를 필요로 하는 오디토리움은 높아진 층고 전체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실용적이 허용하는 외의 용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것은 단면의 양귀가 갖는 공간을 삼각구조 바깥에 둠으로 해서 경사진 천정구조를 갖게된다.

따라서 오디토리움의 중심이 삼각구조의 중심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삼각지붕을 갖는 오디토리움은 무대를 향하여 방향성을 갖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전체

As with other architecture sited against a backdrop of mountains, the Engineer Ho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lso borrows the stream of Mt. Kwanak as its formal inspiration. For this reason, it is unlike other buildings of the campus that rely on the geometric or axial order suggested by its masterplan - it is one of a different approach and formal analysis. What few instances of analogy it has with the design process of others can be found in its conceptual affinity with the campus and the indicative symbolism shared with the University's main gate. In other words, this architecture is not to be read within the fabric of the campus but in its sachlich context of nature, from which the architect, in a rather modernist approach, has extracted the formal order and structural idea.

Its given condition was the sloped contour of the mountain and a difference of a level's height within the building area. Whereas the late-modernist method must have employed devices of distortion and exaggeration, this work suggests a basic triangular structure which effectively reflects its surrounding geographical conditions. What adds to the probability of this structure is the variety of programs it incorporates - restaurants, auditorium, and seminar halls all require different dimensions of area and space.

The triangular structure abstracted from the topology is then adjusted to the breakdown of its functional spaces, and results in a division of triangles with different sizes yet built upon the same rules. Several modules become arranged and assemble the body of the building. The grand opening of the entrance lobby, or the integration of slanted curtain walls to the triangular structure by blending the staircase's exterior skin to the mountain's contour is the gift from the architecture's initial organizational premise.

The auditorium, in need of a greater height, nevertheless does not claim the full dimension of the ceiling. It is thus planned, and reflect the architect's will to provide space not more than the required. The spaces on the edge of its section are placed outside the triangular structure, and are given inclined ceilings.

As its center is placed within the core of the triangular structure, the auditorium, with a triangular roof, is inherited with a flow of space towards the stage. The grand triangular structure, dominating the building's overall form, influences the spaces of each program including the double-storied restaurant. Even in the seminar halls, one side of the wall is slanted and confirms

조형을 지배하는 큰 삼각구조는 중층개념으로 걸린 레스토랑의 슬라브까지를 포함하여 전기능실에 영향을 준다. 세미나실 등에서 보는 외피도 이 삼각구조의 틀 속에 있음으로 해서 한 기능공간 안에 경사진 한 벽면을 갖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사진 벽이 여느 후근대의 경사진 벽으로 보여지지 않음은 또한 그러한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음은 삼각구조의 변환에 일정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고, 이를 보존하고 그 연속선상에 있으려는 의지가 있으며, 그것을 완성하는 수단조차도 기하학적 해법에서 연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해법의 일반적으로 결과되는 조형의 테이스티는 정적 감성을 보이거나 검약한 공간의 질을 보여줌을 안다.

하지만 같은 해법으로 만들어진 엔진이너하우스 건축이 결과된 표현은 다소 다른 결과로 표현된 것으로 읽어진다. 내부공간으로부터 외부공간에 까지 노출되는 삼각구조의 표현은 그 형태의 본질적 형상이 역동적 감성임으로 해서 정적 감성물로 결과되기보다는 동적 속도감을 갖는 조형으로 보여진다. 삼각구조의 모듈 안에서 호흡하는 작은 삼각구조물의 반복이 갖는 한계로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검약한 공간으로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대로 노출되어 만들어진 삼각구조로된 내부공간은 쉽게 인식되어 이러한 시각이 과장되지 않음을 알게 한다.

역동적 감성표현과 함께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감성은 건축화 과정을 통해서 변질될 수 있는 재료자체 물성을 존중하는 접근이다. 이 건축의 구조를 이루는 삼각구조의 철골조차도 별도의 마감이 씌어지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는 즉물적 표현으로 물성의 변화된 표현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1층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벽면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삼각구조골격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한다. 재료자체의 색과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 재료자체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함은 건축의 사용자에게 건축되는 재료의 물성 그대로를 체감하게 하고자하는 건축가의 의사일 것이다. 재료자체의 감성을 공간에 맞게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된 재료의 물성이 건축화의 과정 속에서도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자의 감성까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알미늄 바와 유리로 된 외벽이 그러하고 골격을 구성하는 구조체도 내화페인트로 최소화한 점도 그러하다. 몇해전 건축가 공일곤건축이 모라도 사옥등에서 보여주는 단정한 이미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대해 왔었던 음악적 감성은 건축가의 보다 간결하고자함과 경륜으로 만들어진 논리적 프로세스로 대신하고 있음을 이 건축에서 본다. 대지와 프로그램을 하나의 건축체계로 해석하고자하는 건축가의 의사가 역동적 조형으로 결과되고 있음은 필자의 기억에 남아있는 공일곤건축이 음악적 감성에로의 의지가 유지되고 있음이기를 기대한다. 圖

its presence within the triangular frame. This inclination, or 'distortion,' does manifest itself as a symptom of post modernism, since it is constructed within the order and variation of the triangular structure, preserving and maintaining its rules through geometric compositions. The resulting atmosphere of forms this solution provides is one of tranquil emotions and spatial modesty.

The final expression of the Engineer House, however, at times deliver another sensation. The display of triangular structure from its interior to the exterior, with its strong diagonal lines, is more akin to a form of dynamic velocity than one of silency. The smaller partitions of triangles within the module of the grand structure, along with their repetition, has difficulty - perhaps contrary to the architect's intention - suggesting an air of simplicity. The interior space, with its triangular shelter exposed, enables the viewer to have an easy comprehension of its composition and proves that this view is not far fetched.

Apart from its dynamic expression, the work also features a sincere approach to the use of materials in architecture. Often a material is subject to various kinds of manipulative uses, but in the Engineer House, such converted expression is defied by the objective, or sachlich, use of steel beams that construct the triangular structure.

With the exception of the interior finishing of walls in the first floor's restaurant, the exposed steel structure is preserved and manifested in its primary state. Color and other idiosyncratic features of the material are clearly respected - the architect wishes to deliver to the users the objective properties of the materials, which are chosen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untouched and unhindered by the process of realization. The aluminum bars, the glass walls, and the structural components only dressed in fire-proof paint all are proof of such intent. Architect Kong Il-gon, co-designer of the project, has showed us a few years ago a refined treatment of forms in his Morado headquarters, which survives to this day in the Engineer House. His musical sensibility, however, seems to be substituted with a preference for simplicity and logical process, gained from his long experience. A synthesis of site and program into a singular system of architecture through a dynamic form may well be a positive sign of the presence of his work's musical qualities, which so much lingers inside the writer's mind.

한부엔지니어링(주) 사옥 및 공장

Hanbu Eng. Office & Factory

김상길 · 김희옥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Designed by Kim Sang-Gil & Kim Hee-Ok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남 천안시 백석동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734부지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대지면적	12,000,000㎡
건축면적	3,248.39㎡
연면적	3,948.38㎡
건폐율	27.49%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마감	알미늄 복합패널+THK16컬러 복층유리
설계담당	이광기, 이주현, 류창우, 지금선, 김창균
시공	삼성중공업

한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사옥 및 생산공장의 신축이전 예정에 따른 건축계획으로서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동선 및 기능 부여와 새로운 공조설비 시스템을 제안하고 전 근무자의 업무 및 거주환경을 가능한 한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안락하고 쾌적한 직장이 되도록 하여 모든 직원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화합을 이루는 초일류 회사로 발전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배치개념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ㄷ자 배치를 도입, 마당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업무 및 근무환경을 구축하였고, 진입부 본관의 중앙배치로 중심성과 상징성을 확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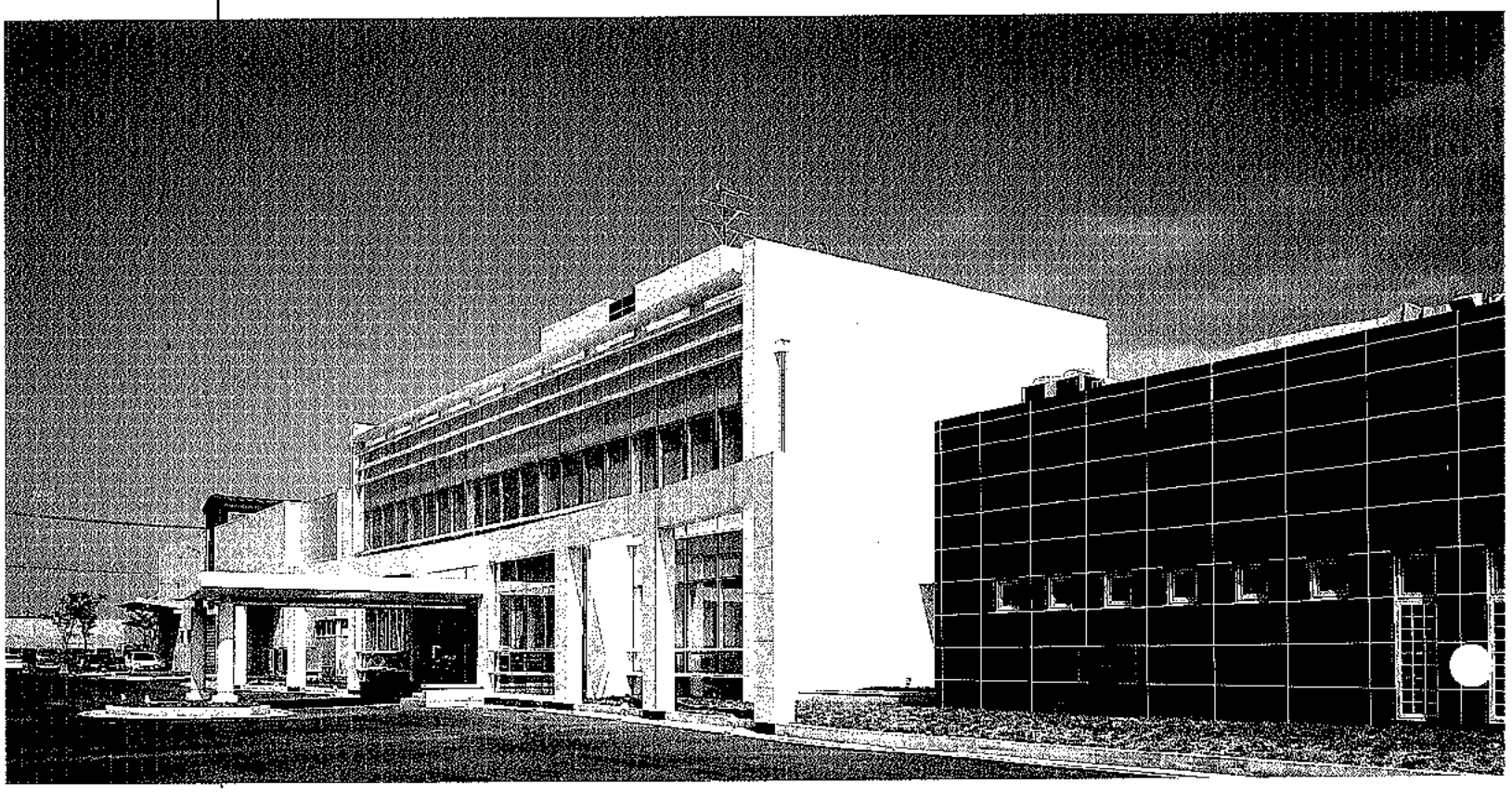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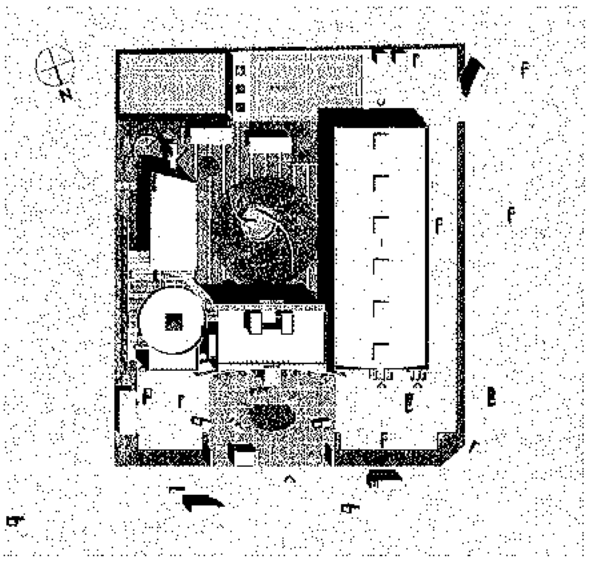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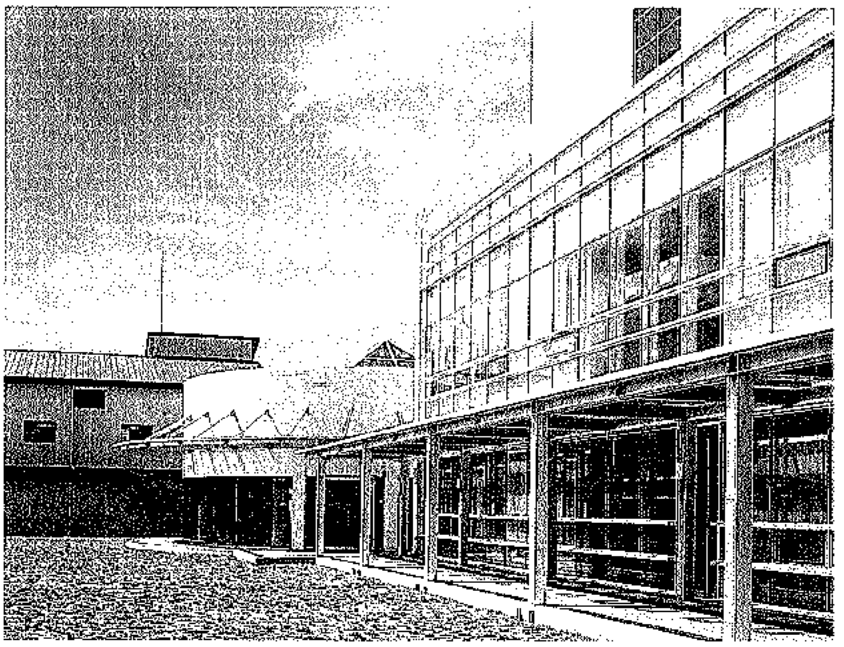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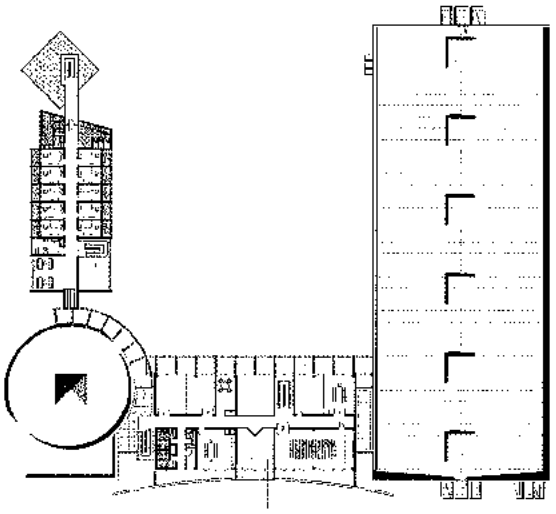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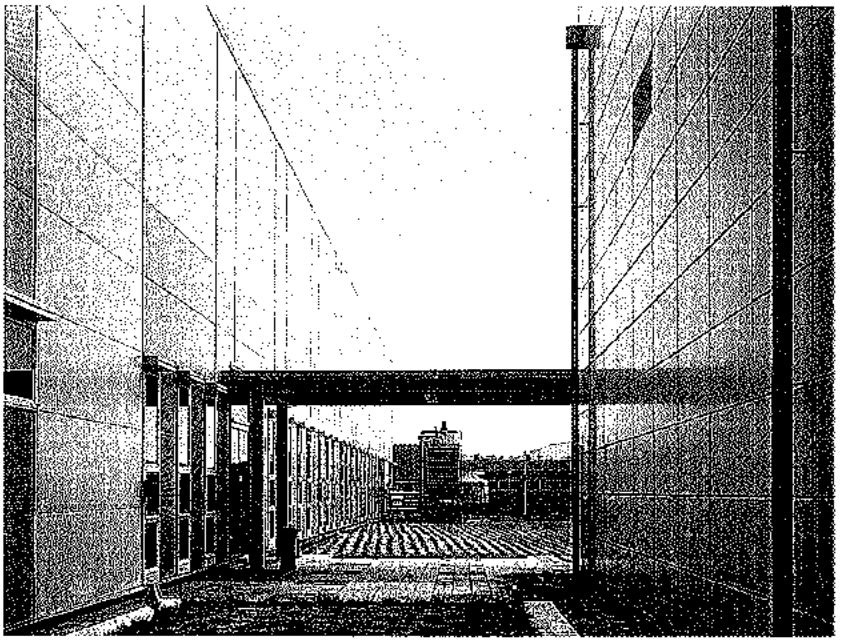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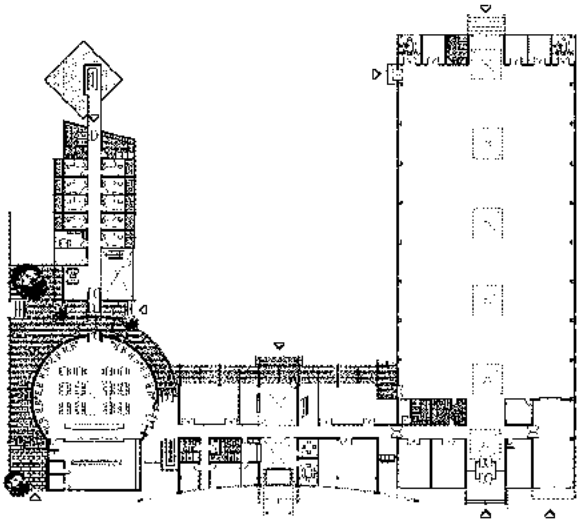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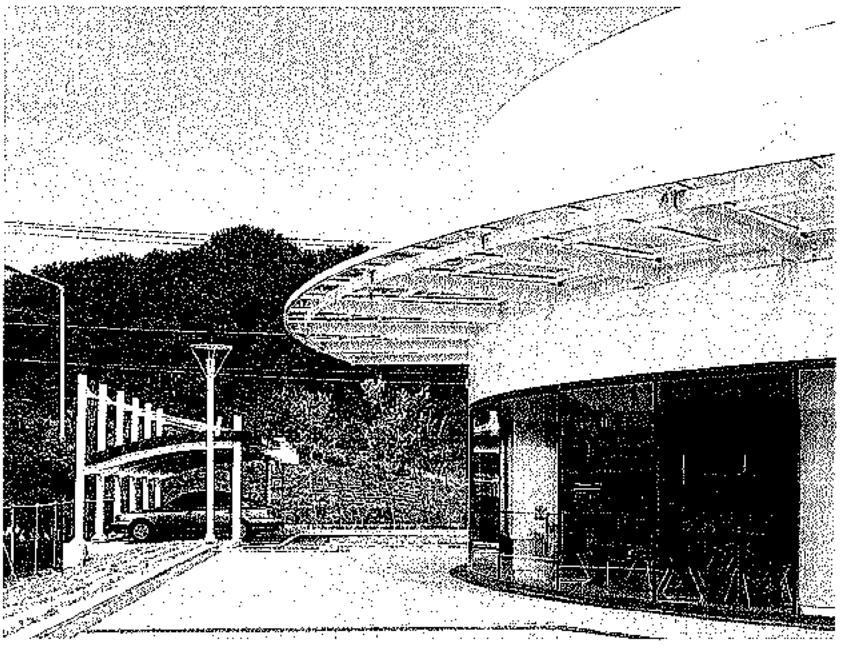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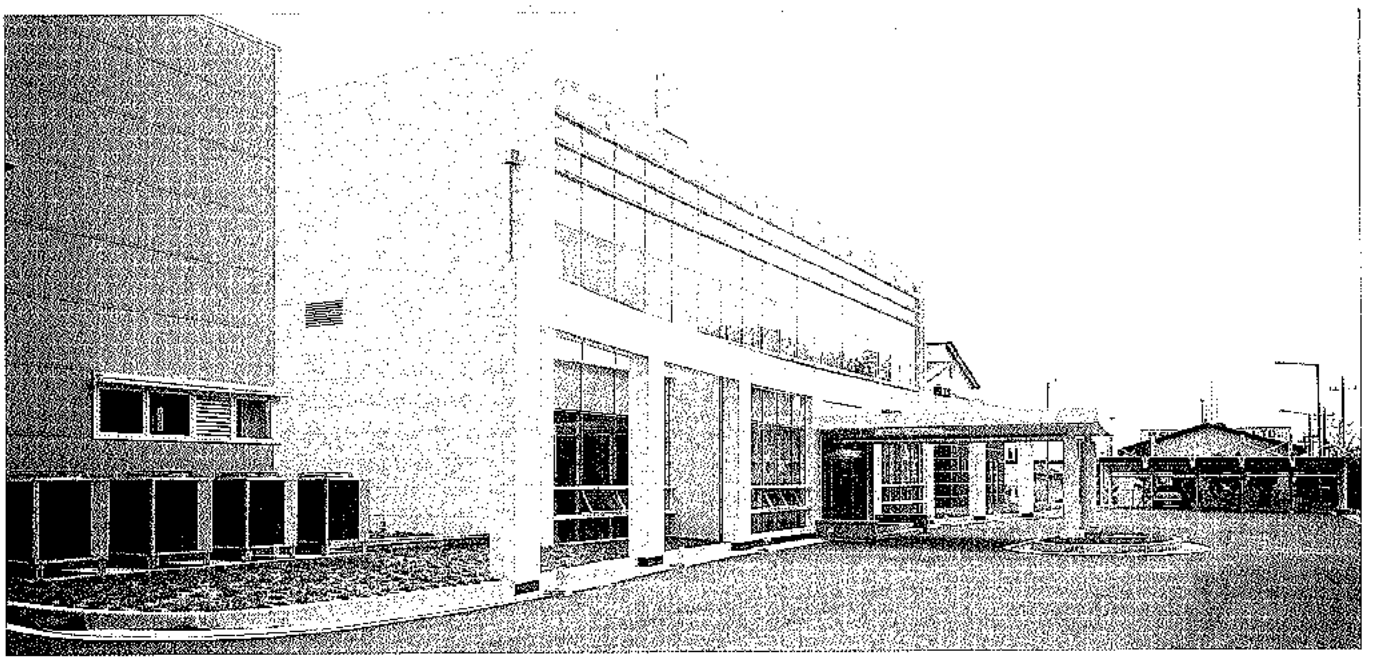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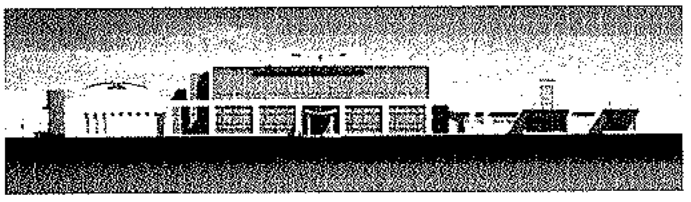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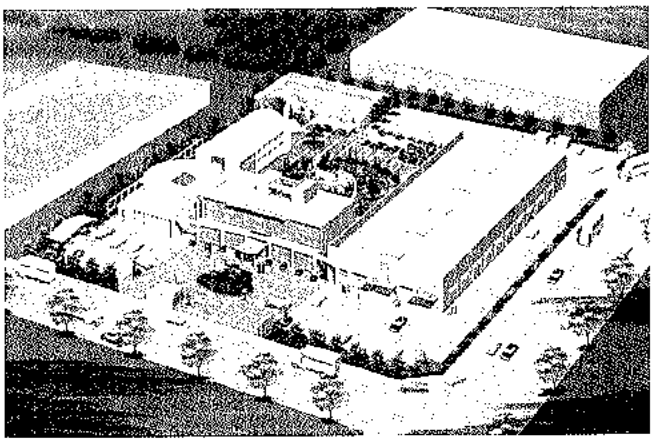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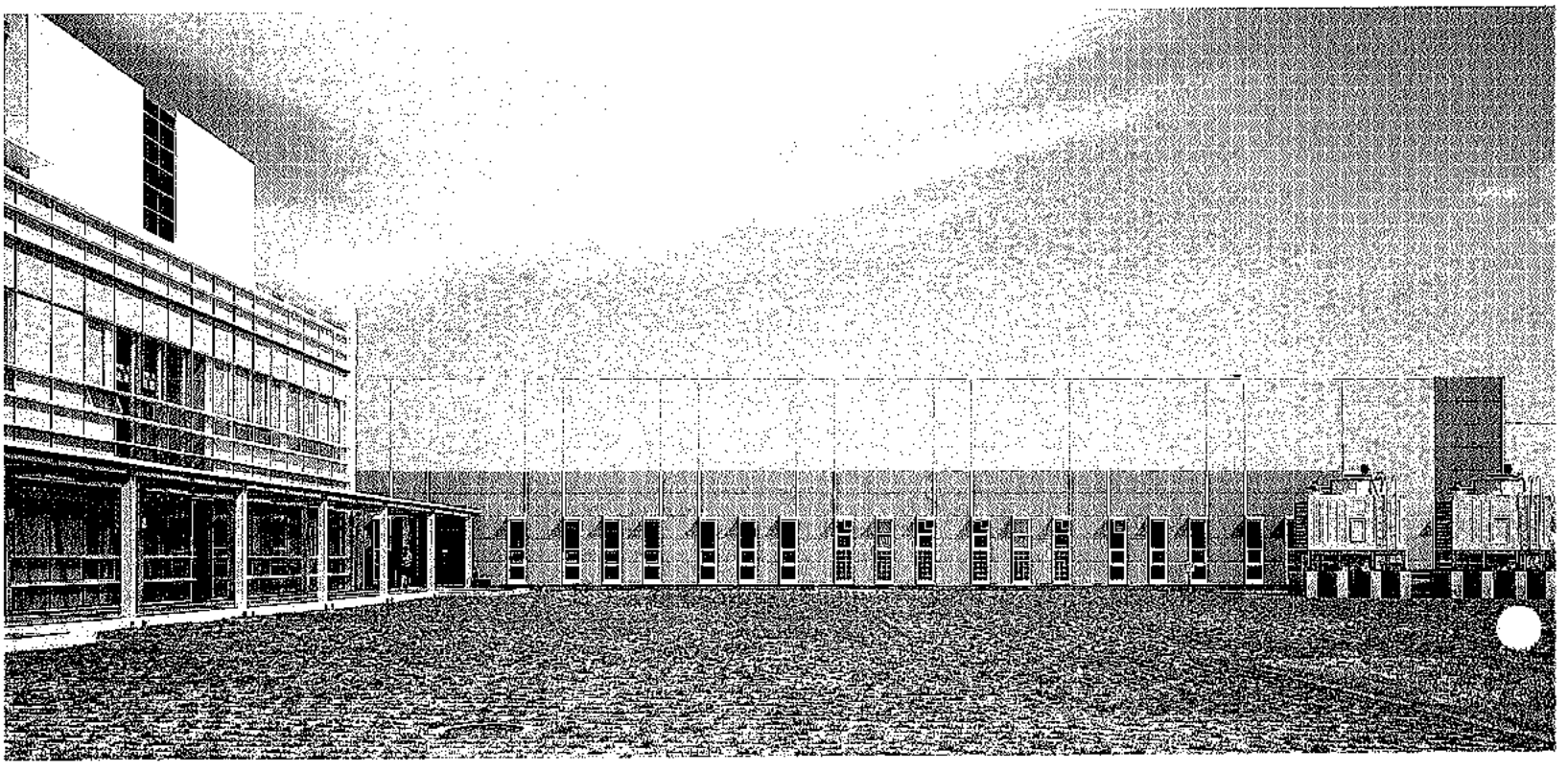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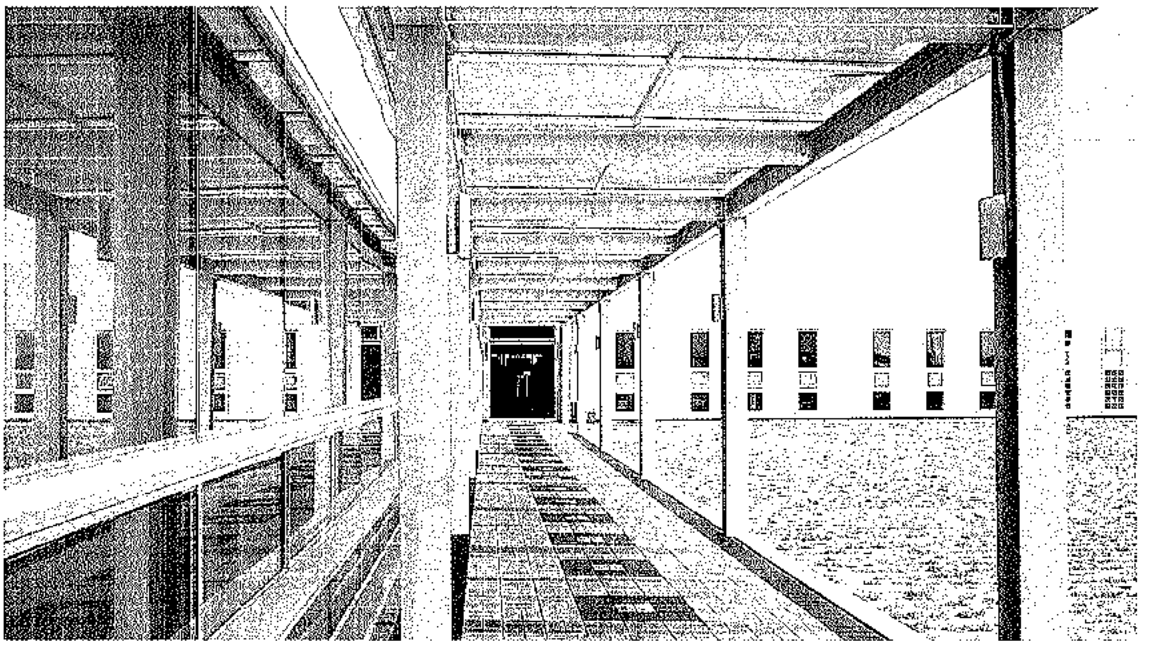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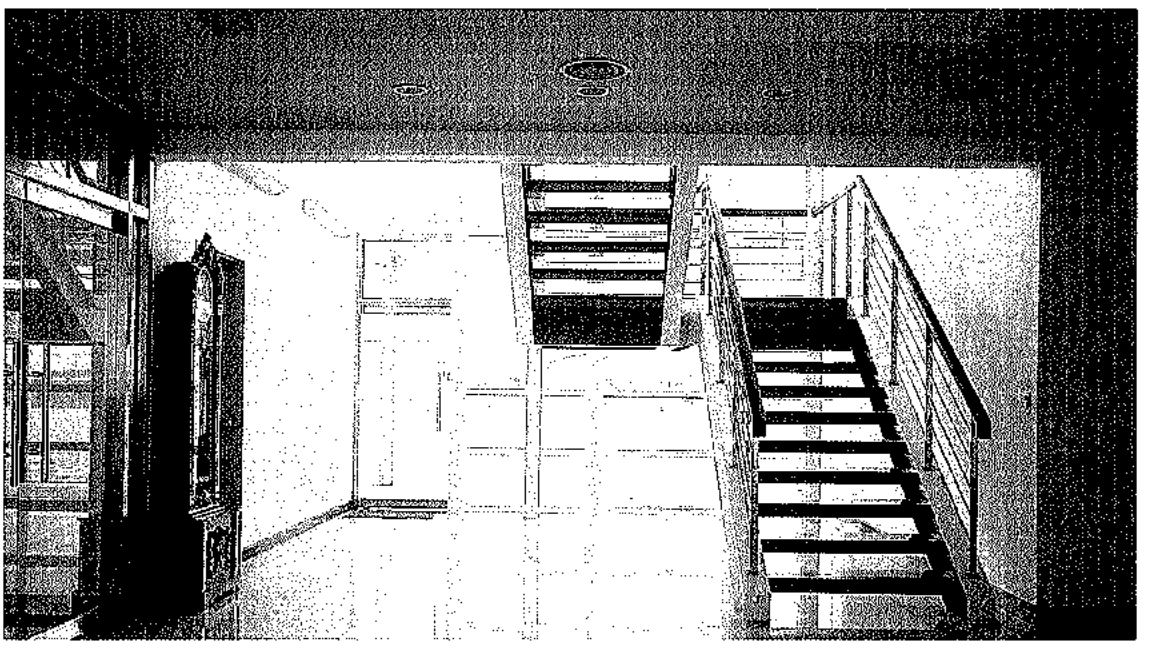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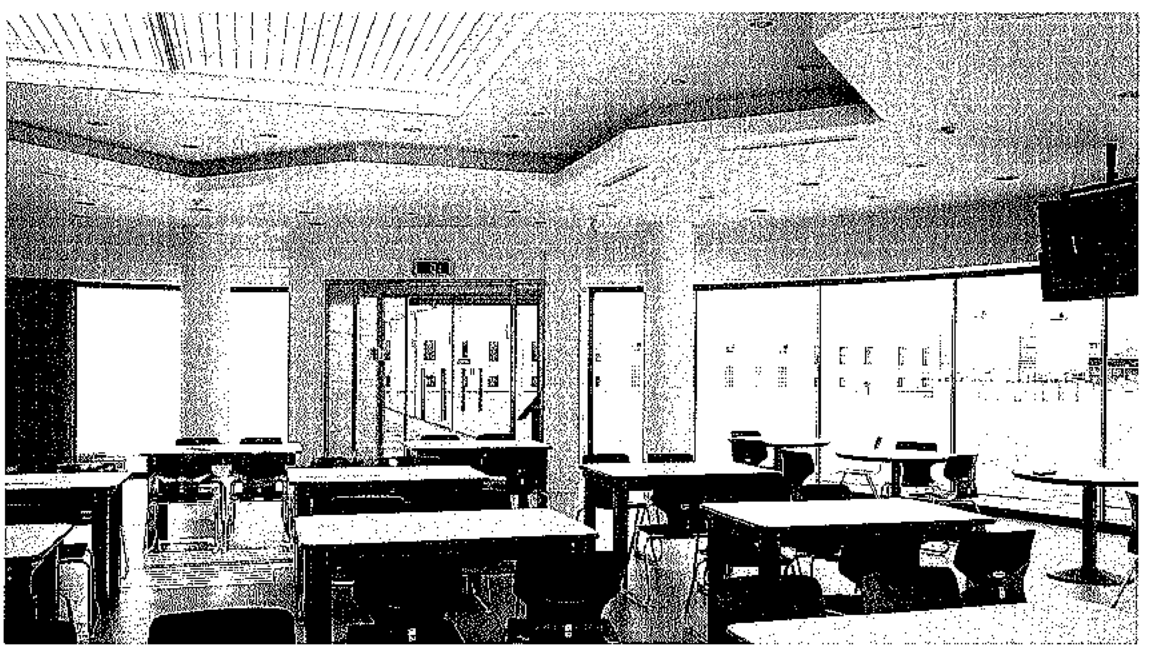

성북동 주택

Residence for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Korea, Sungbukdong

유태용 / (주)테제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oo Tae-Yong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4-32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918㎡
건축면적	274.35㎡
연면적	611.93㎡
건폐율	29.89%
용적률	47.30%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7.65m
외부마감	벽 - THK24 라임스톤, 홍송, 성형압출 시멘트패널
구조설계	나라구조
기계설비	세아엔지니어링
전기설비	신원기술사사무소
설계담당	최서경
사진	이재성+김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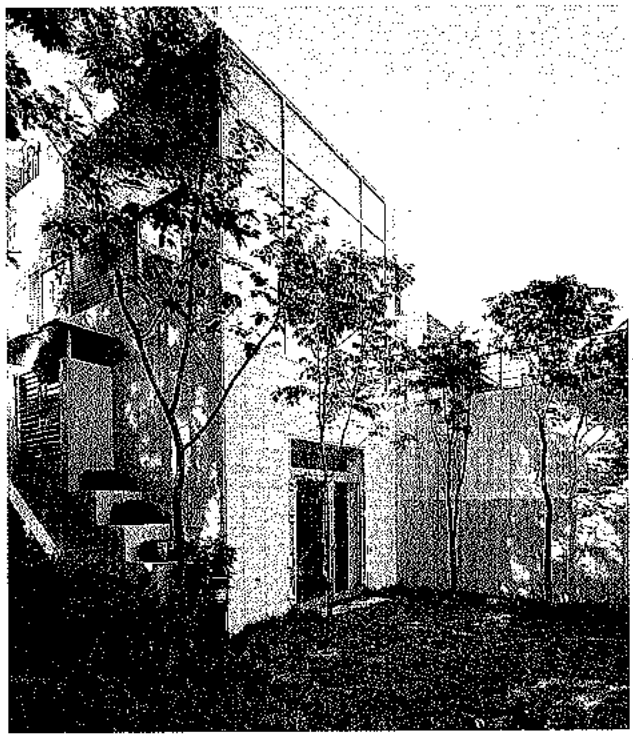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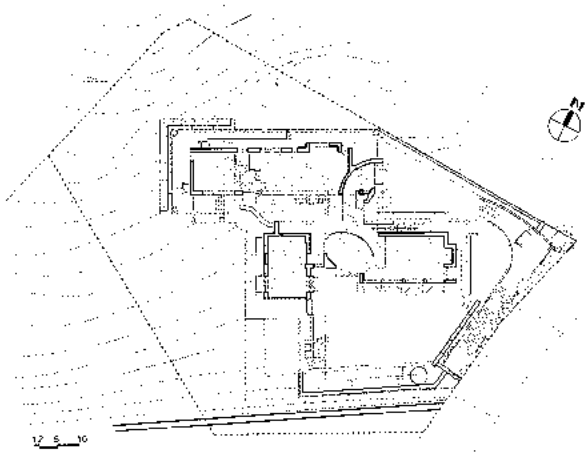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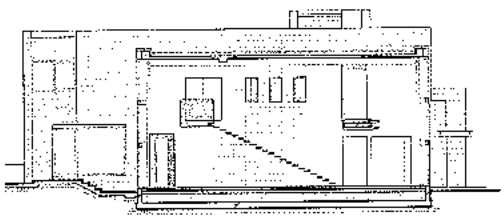

단면도

諸法無我 諸行無常

이는 건축의 공간성과 그 공간이 시각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모든 것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모든 것이 무(無)이며 무거운 중압감으로부터 해방되어 극한적으로는 장(場)에서의 상호 관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성북동 주택은 대지자체의 컨텍스트(context)가 풍부한 곳이다. 특히 서울전역이 훤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건물의 축을 자연스럽게 결정지어 버렸다. 이는 곧 실체를 둘러싸는 외부와는 대조적으로 내부로 체험되는 존재로서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재료로써 구체화되어 디테일로써 마무리 되어진다.

재료의 선택은 주택이라는 틀을 떠나 자유롭게 구사하고자 하였고, 주택의 특성상 건축주와의 협의와 결정은 치밀한 디테일과 엄격한 모듈을 요구하고 그 완성도를 극대화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었다. 결국은 이렇게 완성된 재료들에 의해 공간을 거침없이 구획하고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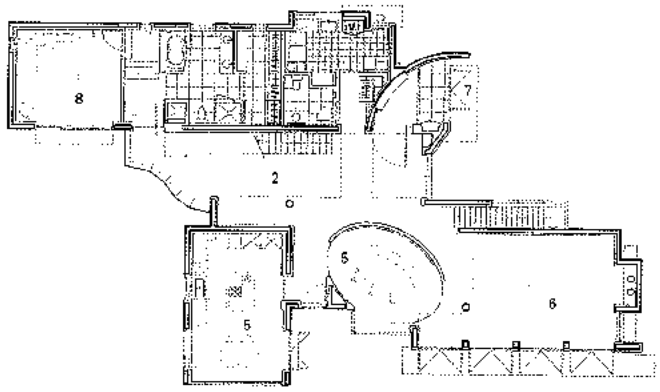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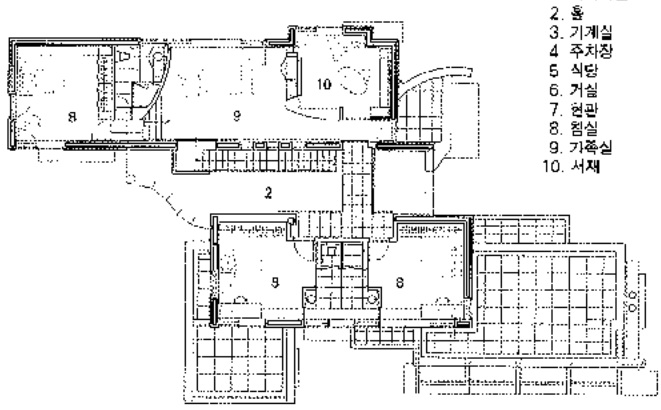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다목적실
2. 홀
3. 기계실
4. 주차장
5. 식당
6. 거실
7. 현관
8. 침실
9. 가족실
10.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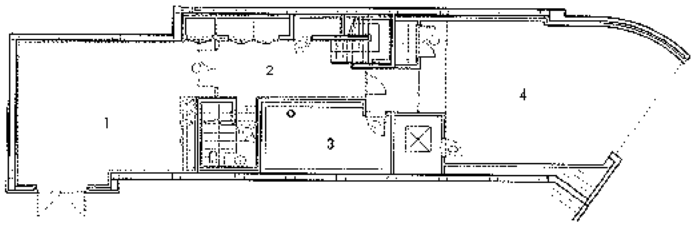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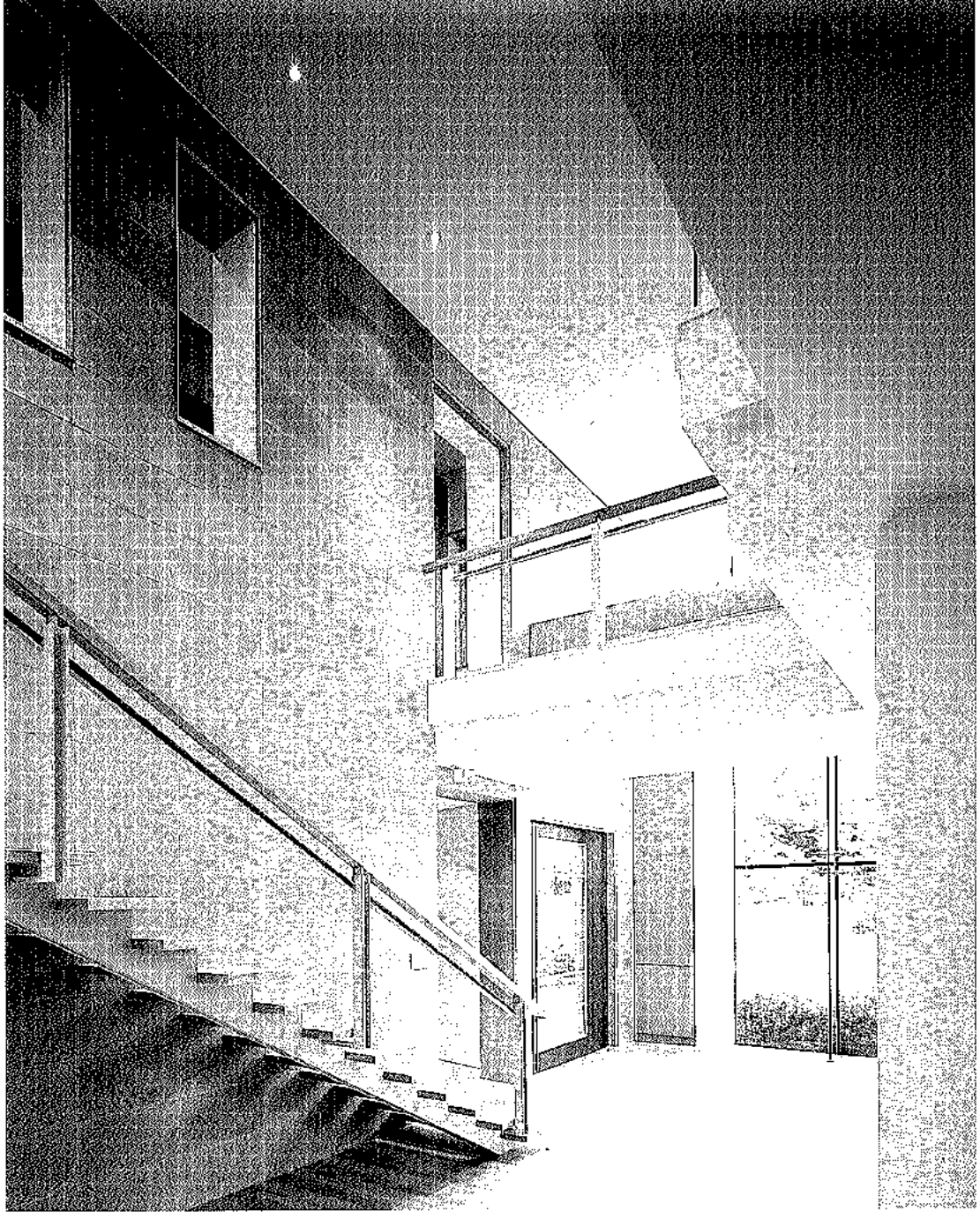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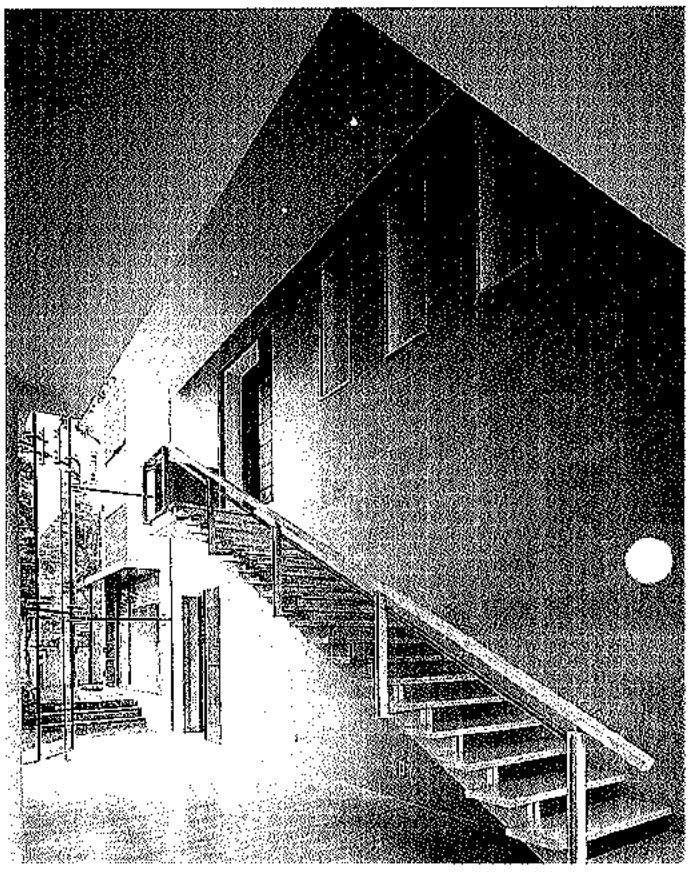

체험으로서의 내부공간은 절제된 인테리어에 의해 구성된다. 효용과 비어있음 이 두가지 주제는 공간으로서의 연대감(連帶感)을 구성한다. 절제와 효용, 비어있음 이것들은 생활이라는 실체안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엄격함 속에서의 자유로움을 제공한다. 기둥과 보로 가구(架構)된 유동적인 실내공간은 커다랗게 자연과 전망을 향해 개방하고 바닥의 영역성과 벽의 연속성은 선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건물은 이로인해 더욱 실체적인 것이 된다. 개념의 형성이 형이상학적인 것으로서 의식속에 한정시켜 온 것이라 한다면 실체의 형성은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함을 필요로 할것이다.

단계적인 공간의 질서

건축물과 지형의 고저차에 의해 형성되는 외부구조물은 단계와 공간의 질서를 가지고 외부 공간을 질(質)을 지닌 곳으로 만든다.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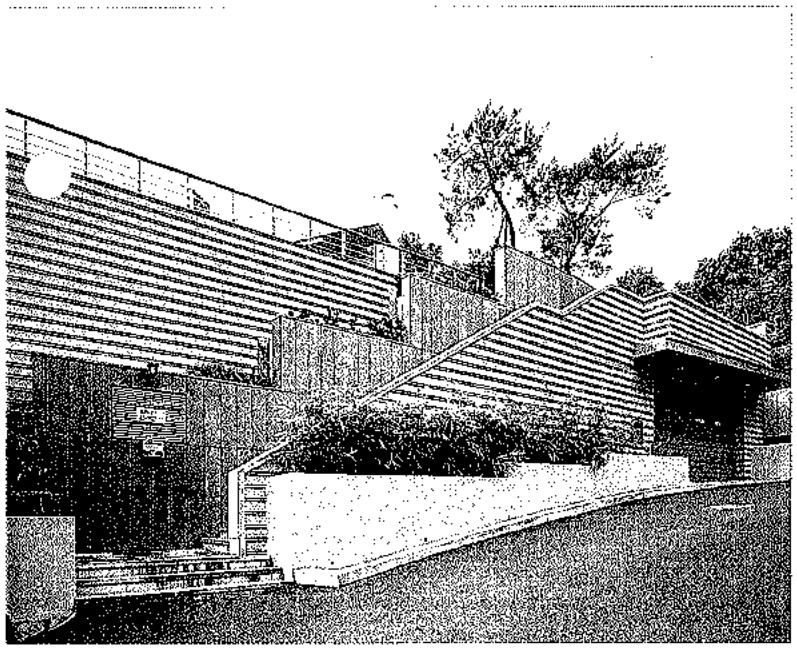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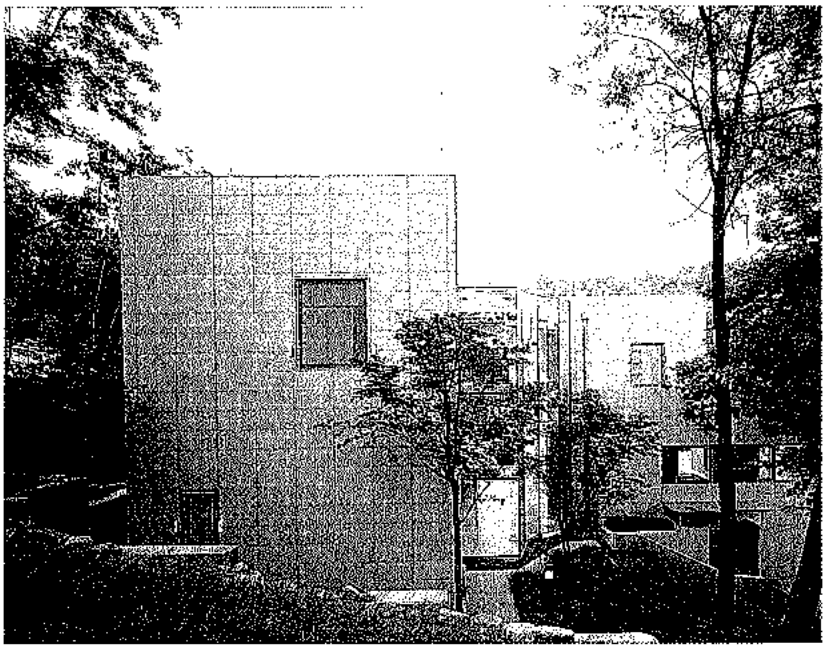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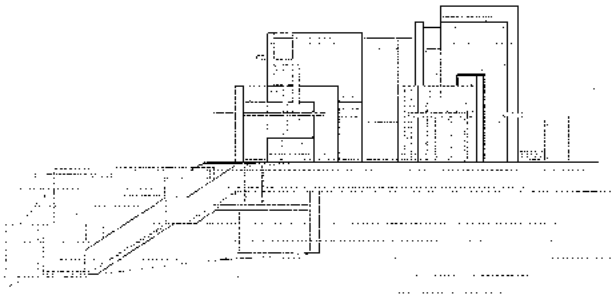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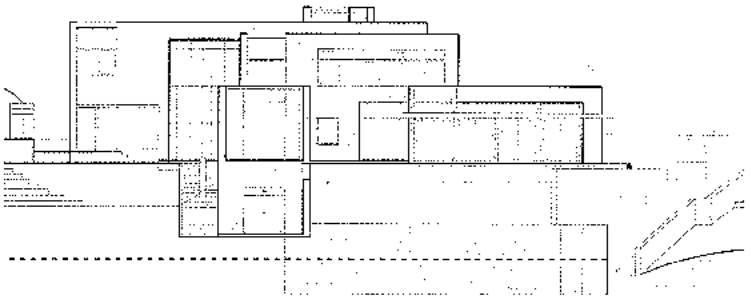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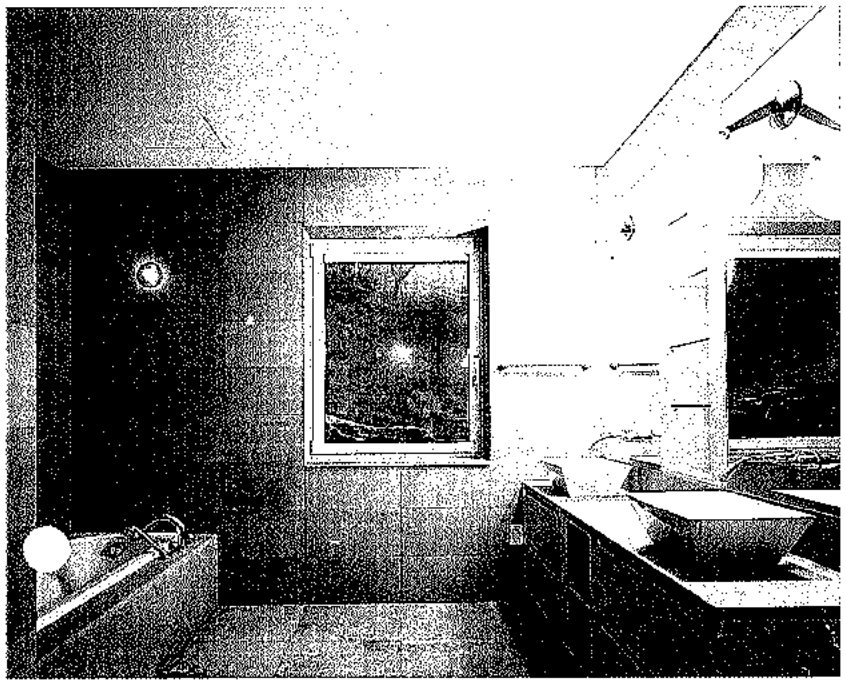

은 계단과 소로(小路)로 이어지는 외부공간의 연속성은 자연과의 연대 – 바닥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나타난다. 특히 가로로부터의 대응은 건물과 경사지가 만나는 접점까지의 논리적인 공간의 질서에 있어 우위에 있어야 했고, 또한 기준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했다. 그 결과로 건물이 경사지와 일체화된 대지 일부분의 영역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가로는 무척 실체적인 것이고, 개념적으로만 형성될 수 없기에 벽과 같은 연속성있는 요소로 접근하고, 그 연속성속에 바닥과 같은 영역성을 제시한다. 무거움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당당함과 생활이라는 효용을 그 안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Seoul District Court Southern Branch

김병년 · 현태헌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Byung-Nyun & Hyun Tae-Hu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313-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5,850㎡
건축면적	4,090㎡
건폐율	25.81%
연면적	33,890㎡
용적률	168.04%
규모	지하2층, 지상10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	T.P.C+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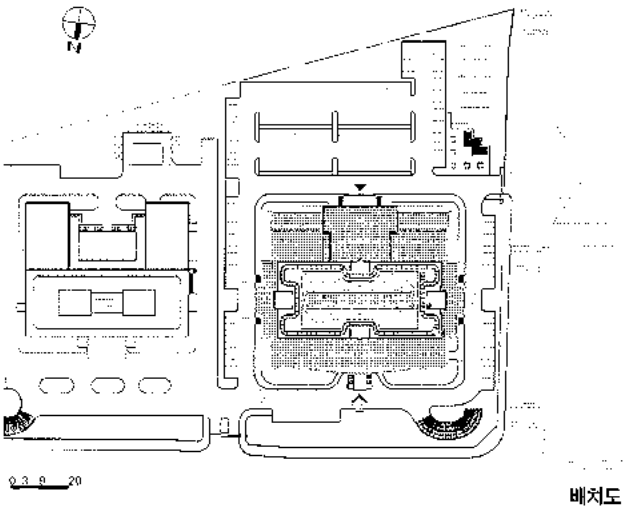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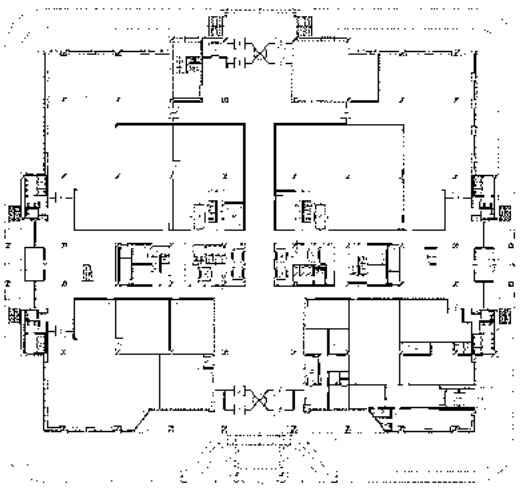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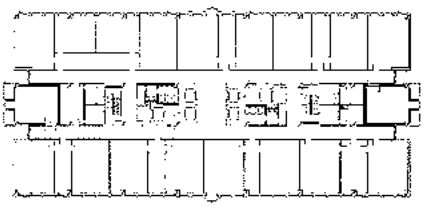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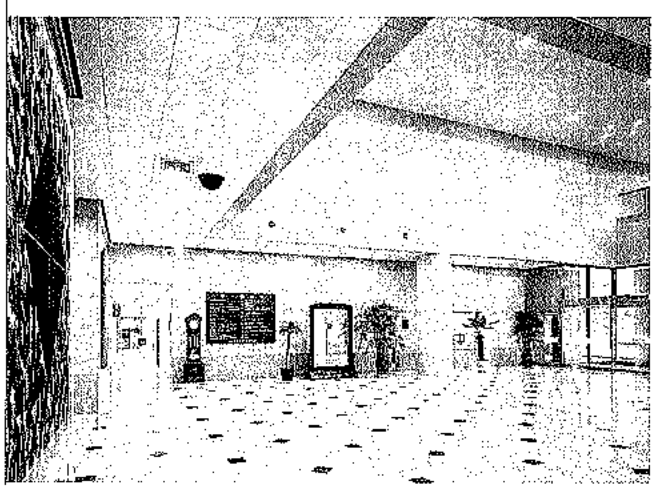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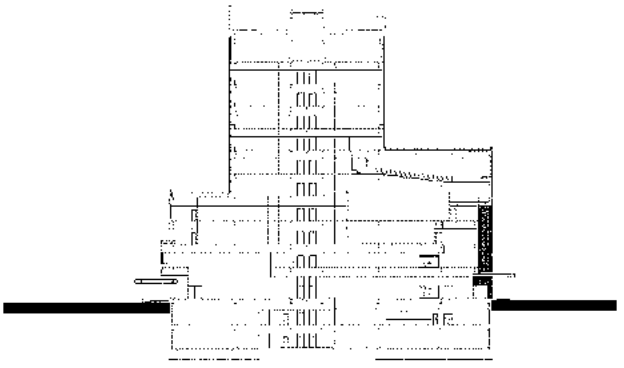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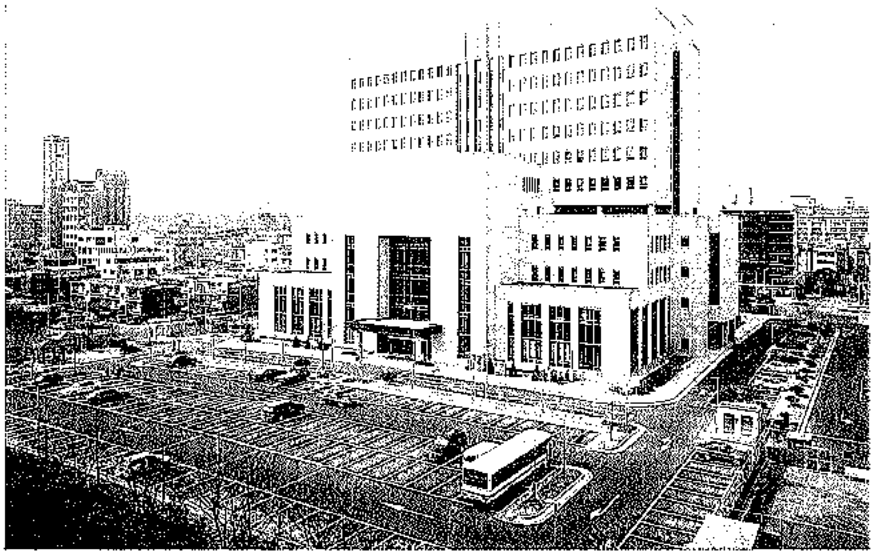

배치계획은 도시 질서의 순응이라는 점에서 대지 북측에 면한 전면33m 도로를 주축으로 삼고, 전면도로에서의 정면성 및 인지도를 높였다. 기존 가로의 도시축 및 신축예정 남부지청과 연계된 법조시설 축을 설정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축 설정에 의한 주변환경과의 조화속에 좌우대칭적 정면성을 강조하여 법원의 존엄성을 고양시켰으며, 장래의 남부지청과 연계한 도시적 시각축 형성을 고려하였다

평면구성은 저층부의 코아를 중심으로 한 법정과 민원홀2개 Zone으로 양분하고 각각의 기능 수행을 위한 독립된 출입구를 계획했으며, 고층부는 법관 사무기능을 저층부와 기능적 분리를 유지하였다. 동선의 명확한 분리를 위하여 독립된 이용자 계층(법관, 사무직원, 일반인)간 동선을 구분했으며, 특정기능 공간의 Compact한 처리로 동선체계를 단순화시켰다.

입면계획은 법의 존엄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코아의 수직적 요소와 법의 평등성을 표상하는 수평요소를 통한 시각적 안전성 및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기능에 의한 저층부와 고층부의 분리로 안정감과 리듬감을 표현했으며, 대칭적입면으로 법원이 갖는 엄격한, 장엄함의 이미지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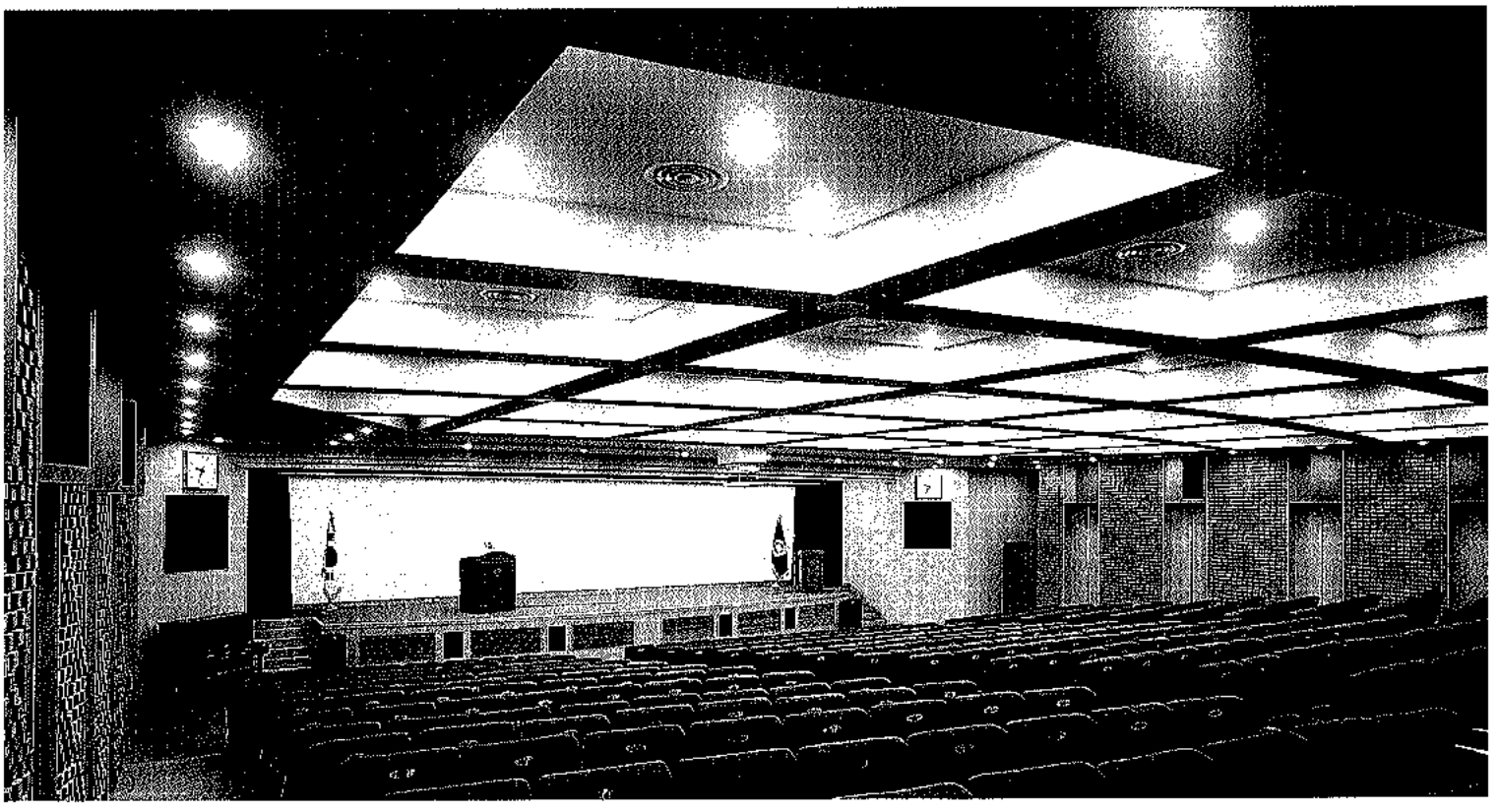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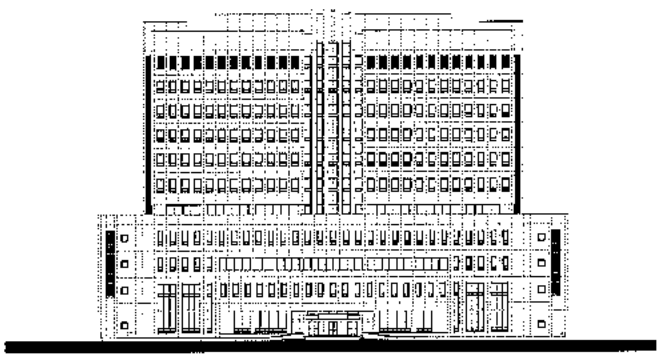

0 2 5 10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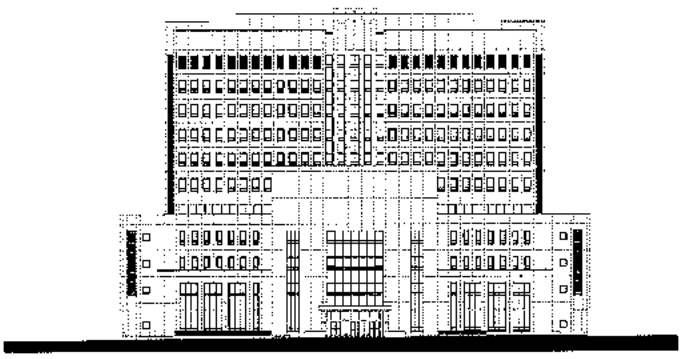

배면도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Dongdaemun Community Center

유경훈 · 한유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전에 컨설턴트
Designed by Yu Kyong-Hoon & Han Yu-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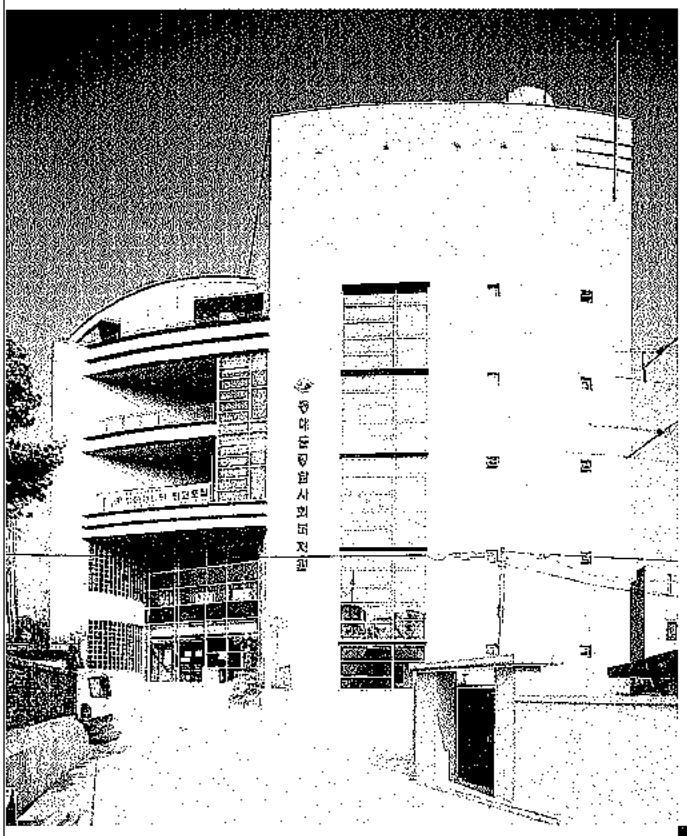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20번지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대지면적	1,849.0㎡
건축면적	1,105.30㎡
연면적	7,463.99㎡
건폐율	59.9%
용적률	255.89%
구조	SRC조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외부마감	외벽 - 화강석 버너
	창호 - 100mm PVDE + 18mm / 컬러 복층유리
건축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사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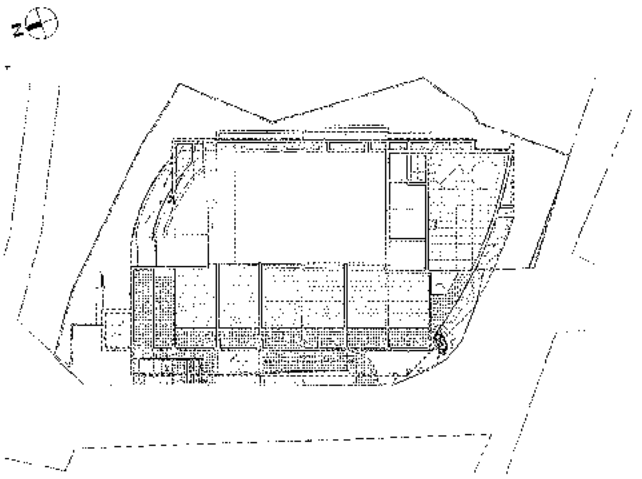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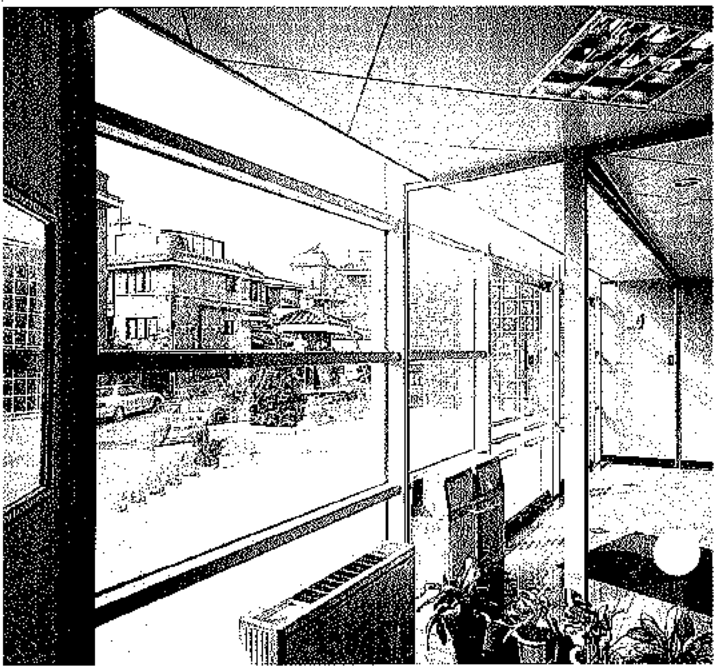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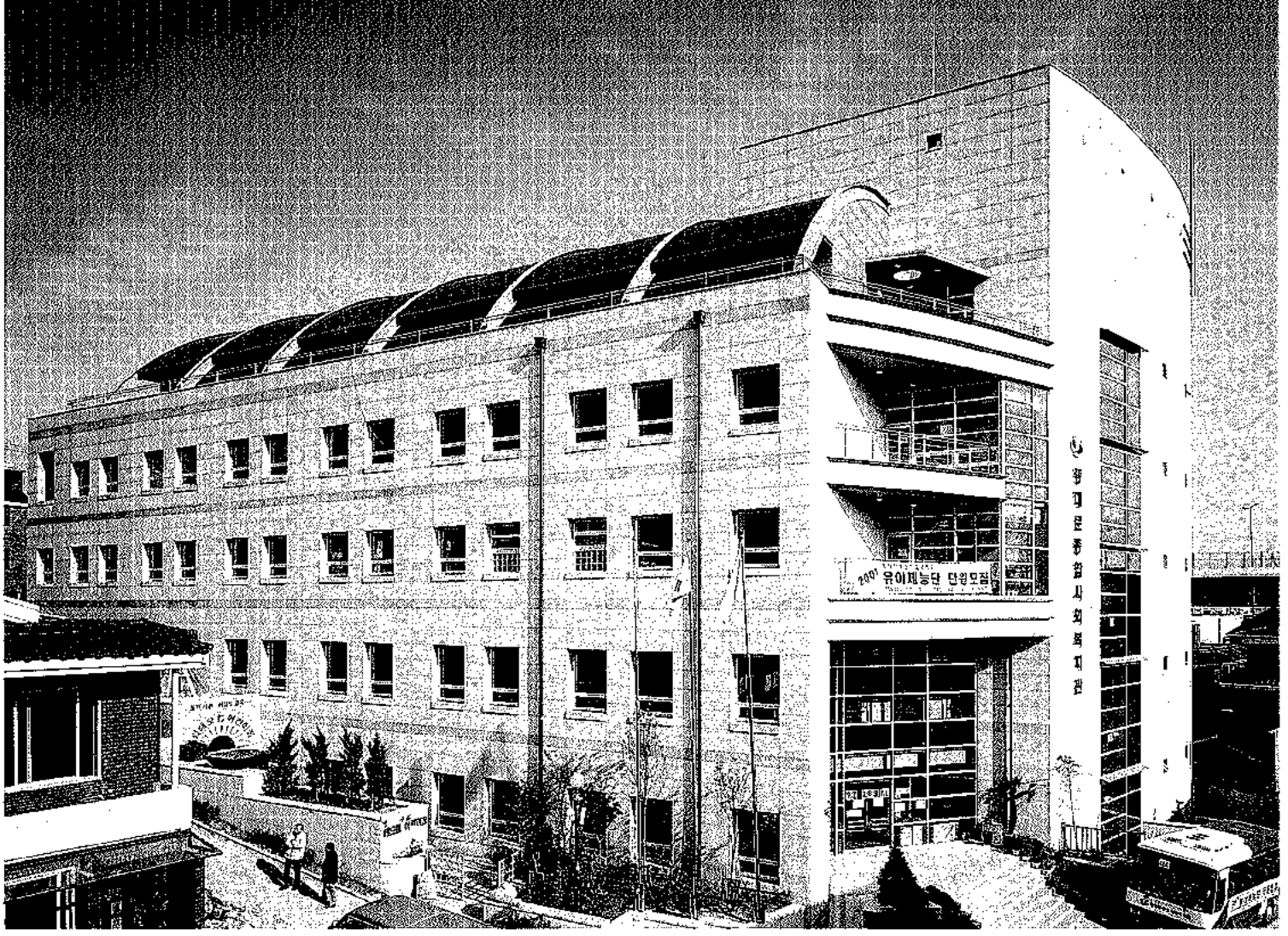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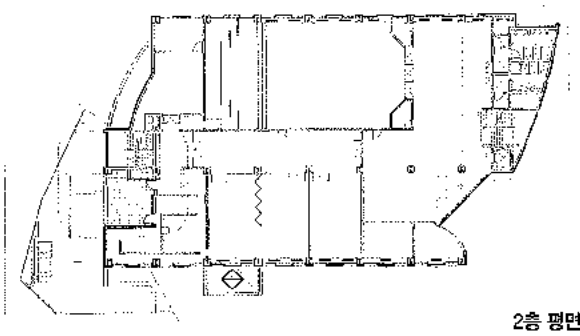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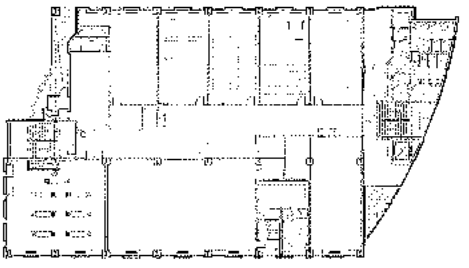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제기동은 인근에 경동시장이 있고, 고려대학교가 있으며, 선농단이 있는 멋스러운 곳이다. 지금은 개발의 뒷전에 밀려 낙후되어 있지만 옛날의 시골 인심 같은 정이 있고 옛것이 묻어나오는 지역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의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이 복지관 건물이 들어섰다. 97년 현상설계를 거쳐 2000년 7월 준공까지 4년여 기간동안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면서 최대한 설계 의도가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공사감리 수행 중 본의 아니게 지역주민의 불편을 끼쳤고, IMF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동대문구청 담당자, 감리자, 시공자가 일체가 되어 건물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부지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양반가옥이 있었으나, 남산 한옥마을로 이전 보존함에 따라 그 부지에 세워진 복지관 건물이다. 건물의 특징으로서는 하나는 5m의 경사지를 활용하여 각 기능별(주방, 유치원, 주차장, 주출입구)로 동선의 분리 처리되어 동선의 겹침이 없고, 주차장은 자연 채광 및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경사지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또한 장 SPAN구조(10.2m, 16.3m)로 처리하여 내부기둥으로 인하여 공간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융통성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간이 구성되고 각각의 동선이 분리되어 처리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수명이 변화에 따라 내부공간 구성에 다양성과 융통성이 확보되도록 장 SPAN구조 및 내부 칸막이 구성을 조립식화 하였고, 각층에 교육공간과 휴게공간을 분리설치하여 교육적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각층의 휴게공간은 휴식기능으로 최대한 증대시키도록 했다. 끝으로 이 건물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재교육 시설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종합복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기여함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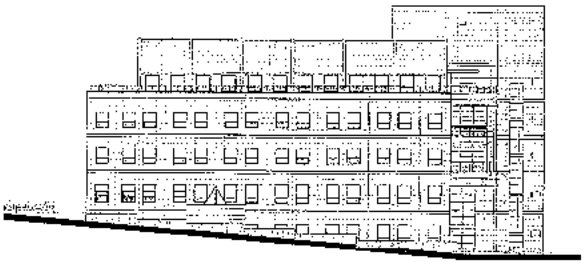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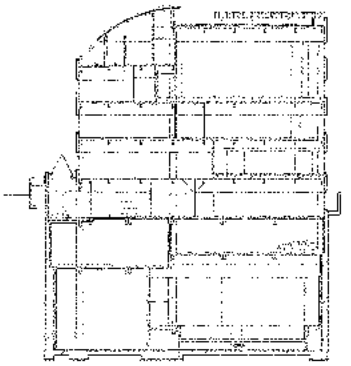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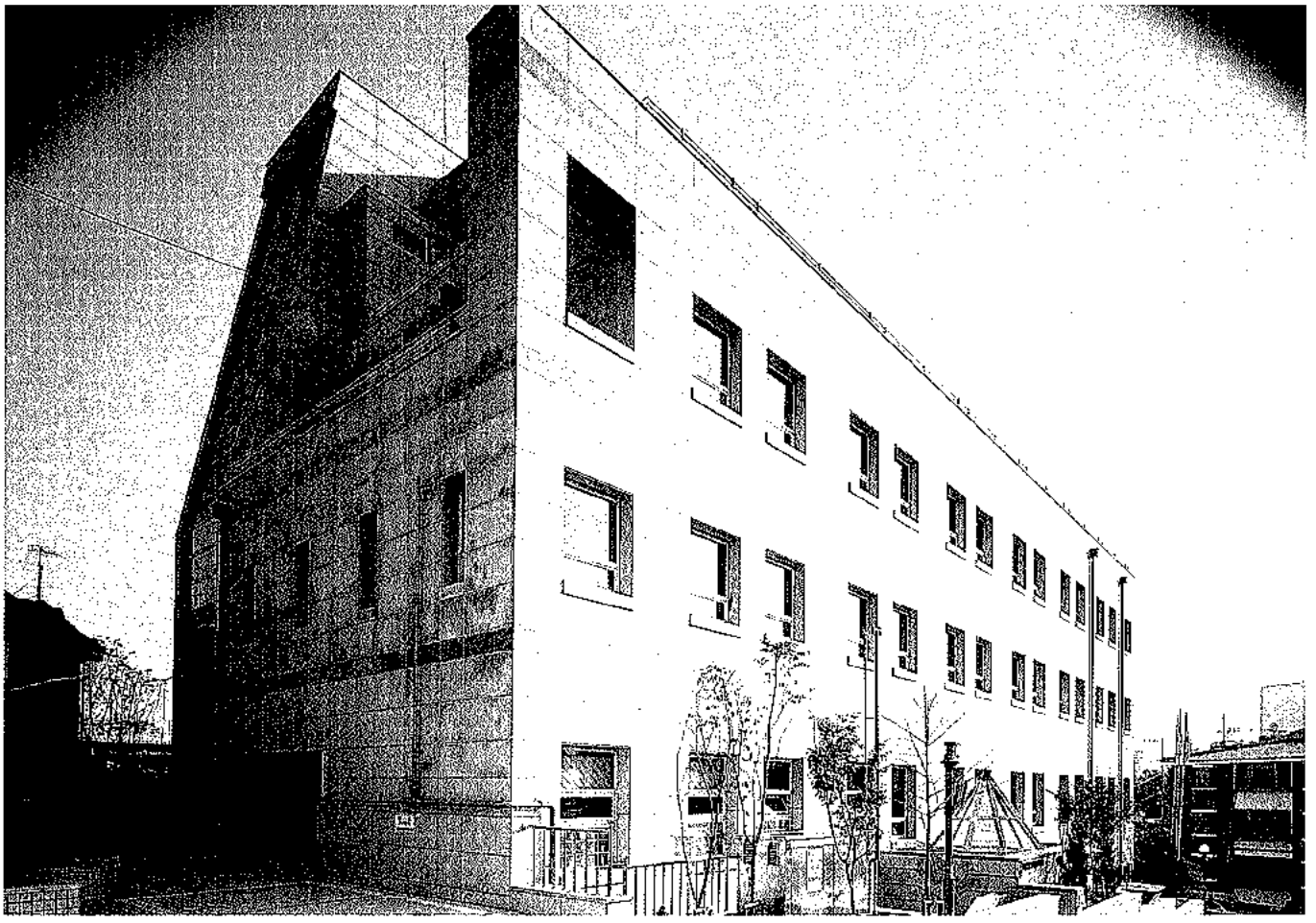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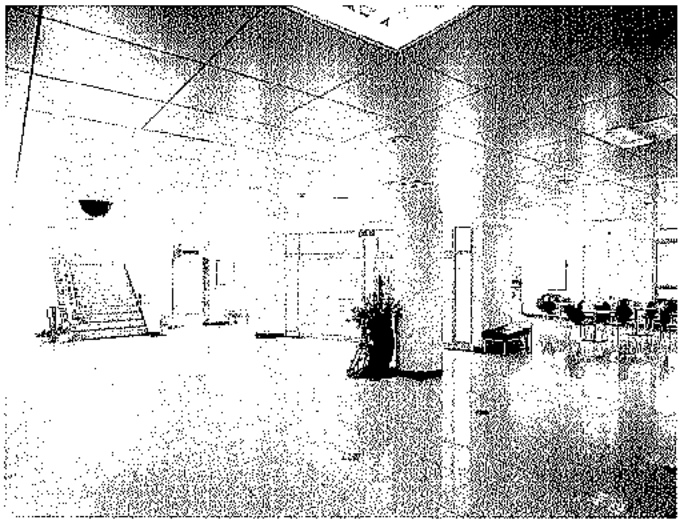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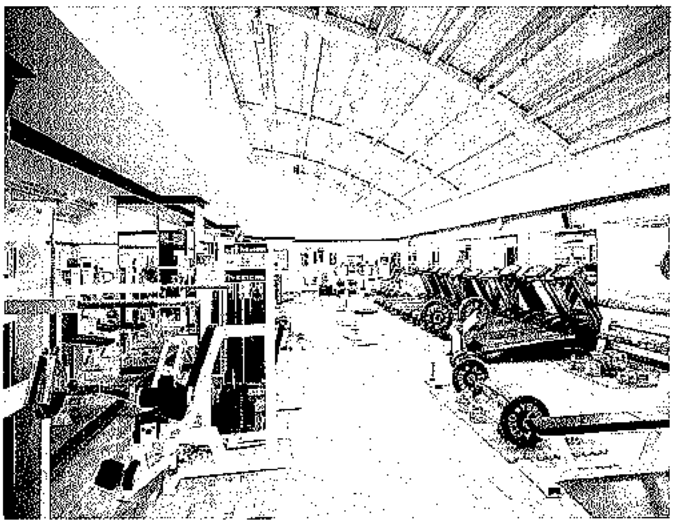

에이스 테크노타워 Ⅱ 아파트형 공장

ACE Techno Tower Ⅱ Apartment-Type Factory

오근석 / 유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O Kun-Sok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번지 7호외 1필지
대지면적	4,959 ㎡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공항고도지구(진입표면)
건축면적	2,387.48㎡
연면적	25,214.73㎡
건폐율	48.14 %
용적률	420.09 %
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아파트형 공장
외부마감	화강석, 드라이비트, 복층유리
설계담당	문호, 최승일, 조진현, 윤종석
감리담당	노덕환
구조설계	PEG 구조
전기설계	청송전기
기계설계	태양기술사
시공	에이스 종합건설(주)
사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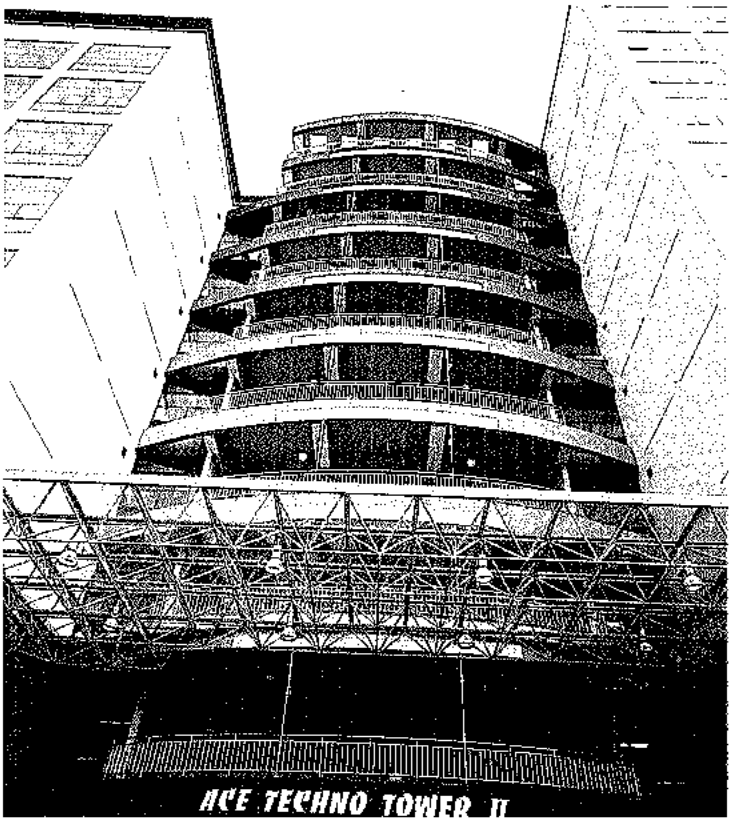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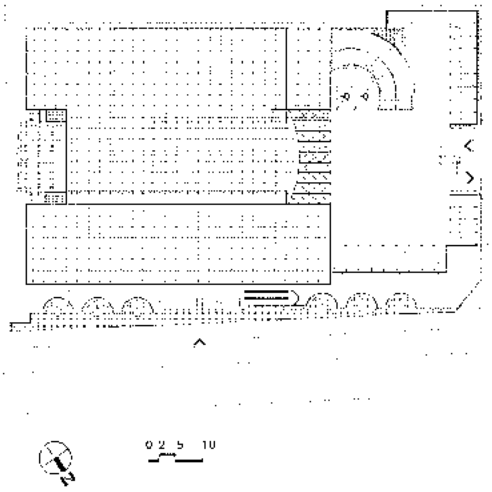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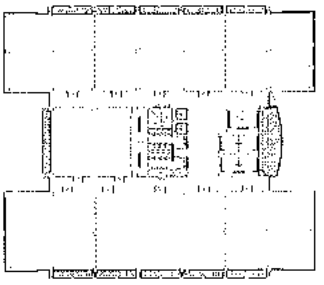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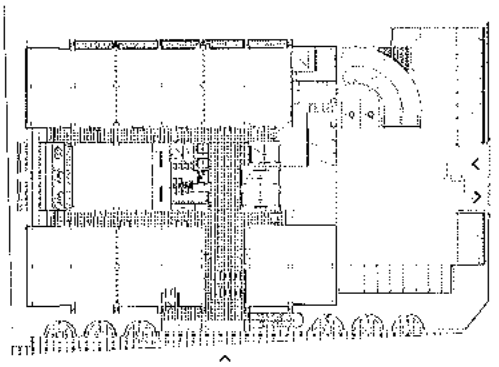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구로공단'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개명되면서 과거의 '구로공단' 이미지는 이제 지식산업 복합단지의 모습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다. 산업화의 중추적 핵심역할을 할 에이스 테크노타워 II는 기존 에이스 테크노타워 I에 이어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에이스테크노타워 I과는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방향으로 마주하고 있어 주변일대를 에이스타운으로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MASS 계획은 중앙코아를 중심으로 세부분의 분절된 대칭적 구조를 갖게하여 내진설계의 우수성 및 동선의 단순화로 공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도모하였다. 양쪽 MASS의 높이의 차이를 둠으로 인한 MASS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옥상주차장을 수용함으로써 상부층 입주자의 편익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한편 CORE를 최대한 단순화함으로써 공용공간을 최소화하여 공장전용면적비율 높이는데 계획의 주안점을 두었다.

외부디자인은 에이스 테크노타워 I 차의 디자인이미지를 도입하여 에이스테크노 타운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였고 안정감있는 격자PATTERN요소와 생동감있는 커튼월을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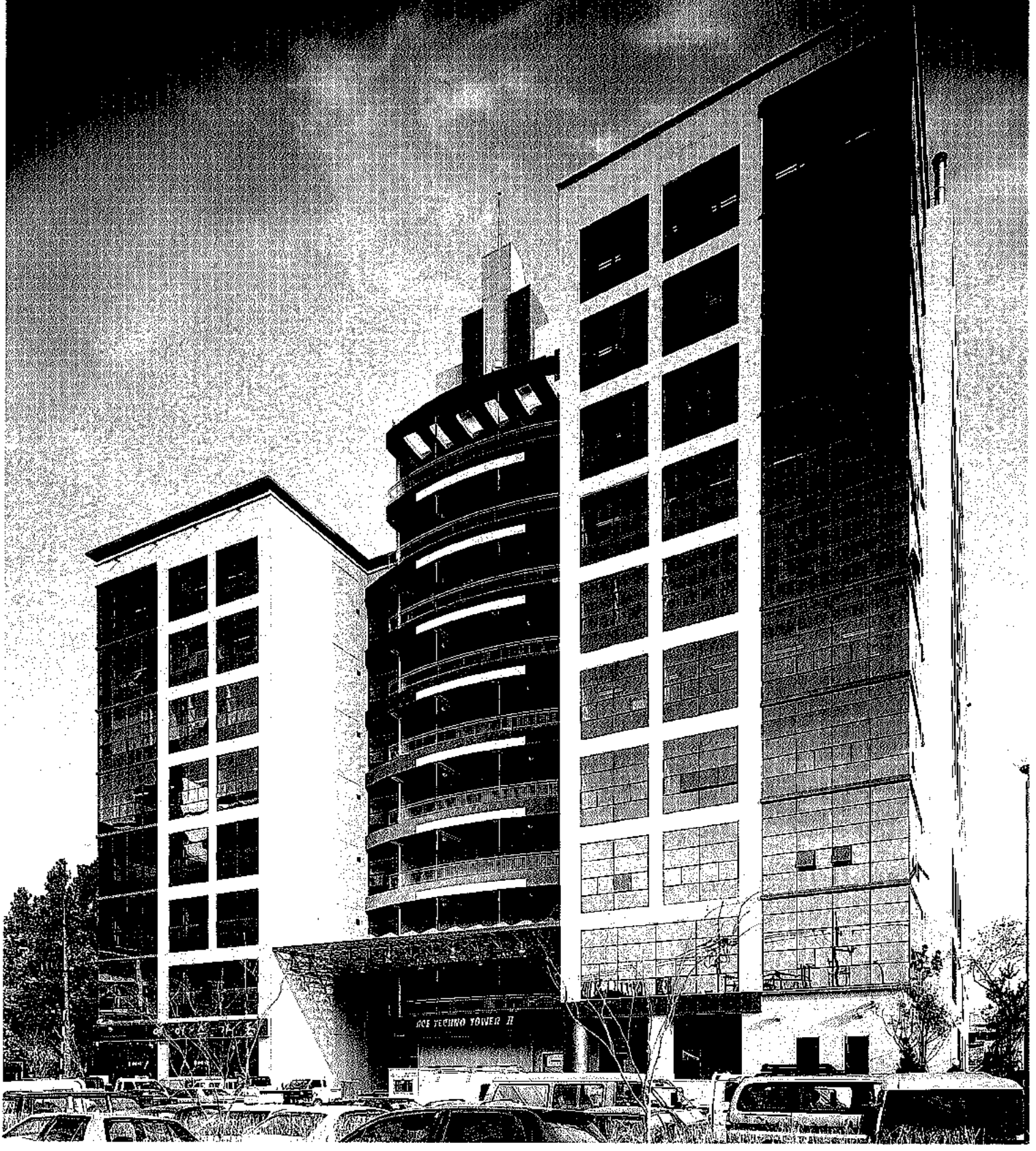

용하여 현대미를 가미했다.

평면계획도 MASS에 따라 CORE를 중심으로 남북방향 2면으로 균등하게 OCCUPANCY을 중점 배치시키면서 분양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공간계획을 하였고 중앙의 CORE는 동선의 간결화를 꾀하고 각층마다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재실자의 편익을 도모하였다. 1층 로비는 개방감있게 계획함으로써 유입동선을 명쾌하게 해결 하였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서 휴게공간은 필요 충분조건이 된다. 각층에 위치한 휴게공간은 시야가 개방적인 곡선의 테라스에 둠으로써 자연환경과 유기적관계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건물 안쪽의 1층 옥외휴게공간은 아늑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면도로의 공개공지쪽의 휴게공간은 지나가던 보행자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건물안쪽의 휴게공간은 건물의 사용자를 위한 정적인 쉼터라고 한다면, 전면도로의 공개공지쪽 휴게공간은 보행자를 위한 개방적이고 동적인 열린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도심의 활력넘치는 표정을 담아내기를 기대해본다.

레고이스트의 집과 레고피언의 집

Legoist's House and Legopian's House

김승회 / (주)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by Kim Seung-Hoy

이 프로젝트는 지난 구월 동경에서 열린 '건축가와 레고' 라는 전시회에 출품된 작업이다. '미래의 주거' 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기획되었고, 레고의 표준블록들만 사용해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 주어졌다. 대중들이 건축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전시회였던 만큼, 제작의도를 관람객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작품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관심있게 들여다볼 사람들을 위해서는 건축적인 동화를 들려주고 싶었다. 완성된 모습보다는 만들거나 부수는 과정이 보다 의미있는 레고의 특성과 '레고' 라는 재료와 구법이 내포하고 있는 근대적 정신의 한계를 음미하면서, 우리의 미래주거에 대한 논의를 담고자 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화를 통해 전개되었고, 그 우화의 주인공은 가상의 레고시티에 사는 레고맨(LEGO-MAN)들로 설정되었다. 레고이스트(LEGOIST)와 레고피언(LEGOPIAN)이라는 두 극단적인 레고맨의 집짓기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속된 오래된 미래이며, 그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지금까지 간직해온 우리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테크놀로지와의 공명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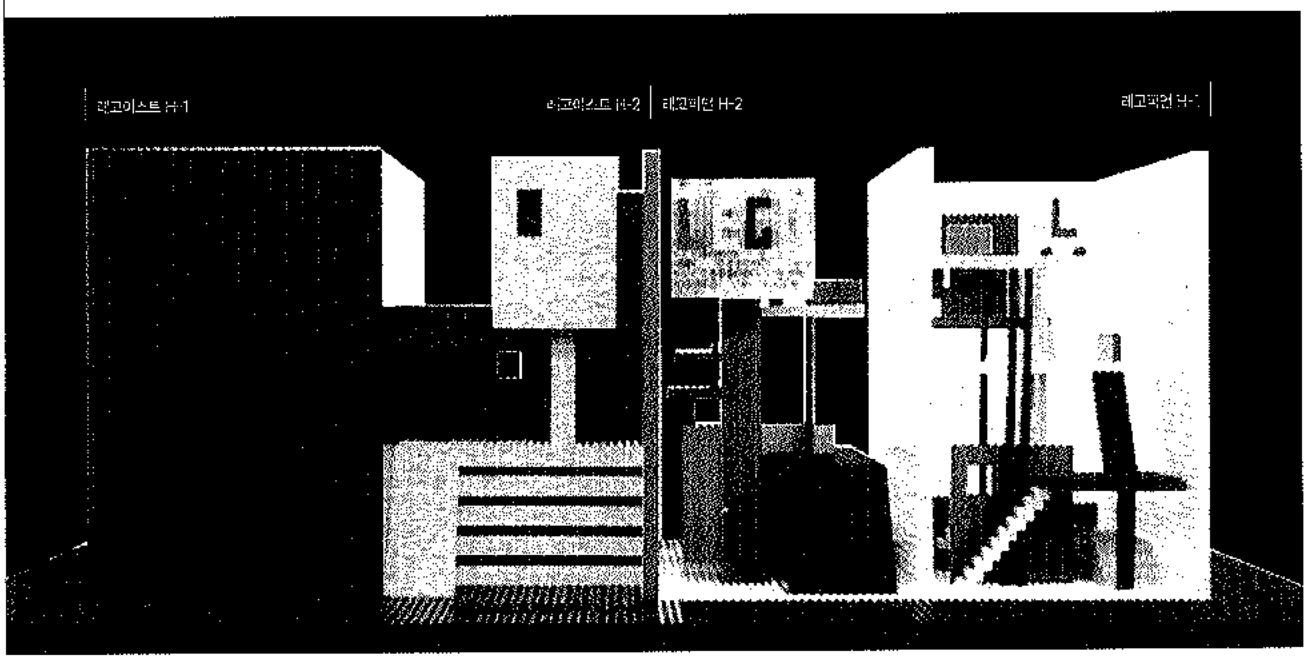

어떤 우화 - 레고시티(LEGO-CITY), 그리고 레고이스트(LEGOIST)와 레고피언(LEGOPIAN)의 집

잘 알려진 대로 레고맨(LEGO-MAN)들의 생활은 계속해서 건설하고 부수는 일로 점철되어있다. 그것은 20세기의 인류, 특히 한국인의 생활과 비슷하다. 무엇이든 끊임없이 건설하고 싶어하는 레고맨들의 원초적 욕구에 따라 도시의 시스템이 결정되었다. 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각의 레고맨들이 소유한 하나의 필지를 다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위한 부분과 앞으로 살집을 위해 공사하기 위한 부분으로 구별된다. 공사중인 집이 완성되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을 부수고 새로운 건설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레고맨들에게는 매우 적합하고 편리한 시스템이다. 그밖에 중요한 건설 규율을 열거하자면 직교좌표를 지켜야하고, 반드시 표준블럭을 사용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접착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건설규범을 위반하면 죄의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는 레고맨들에게 대단한 고통일 뿐 아니라 동시에 무한한 수치이다.

레고시티(LEGOCITY)를 이루는 체계의 뿌리에 대한 의문은 지적 호기심이 많은 이들에게는 커다란 관심거리이자 논쟁거리이다. 어떤 이는 하늘은 둥글고 세상은 사각형으로 이해한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맞추어 도시를 사각 또는 직육면체의 체계로 발전시켰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며 - 여러 도형 중 사각형태가 서로 맞물렸을 때 빈틈을 만들지 않은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말하는 사람 중에는 직각 보행에 익숙한 군인출신이 레고맨의 정신적 원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그 증거로 정복도시의 형태가 직교좌표였다는 제법 역사적인 알리바이를 대기도 한다.

레고시티가 생겨난 것이 아주 최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로부터 레고시티의 원류를 대는 것은 레고맨 자신의 존재근거를 보다 근원적인데 기대보려는 가엾은 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 학설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것은 레고시티의 핵심은 모든 사물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레고블록)로 환원될 수 있고, 반대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어떠한 형상도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레고의 탄생 동기라는 주장이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파괴할 수 있는 세계가 레고시티이지만 동시에 역사도, 신화도, 낭만도 사라진 세계에 오직 생산과 파괴를 위한 메커니즘 자체가 레고시티이며, 그 속의 레고맨들은 저마다의 꿈과 욕망을 갖고 살고있지만 결국 그들은 레고시티의 획일적인 메커니즘의 일부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그 설명은 제법 그럴듯하지만, 오히려 그럴듯하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왠지 정답이 아니라는 느낌도 든다.

레고시티의 근원이 어떻든 레고시티에 대해 이야기하게된 동기가 레고시티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두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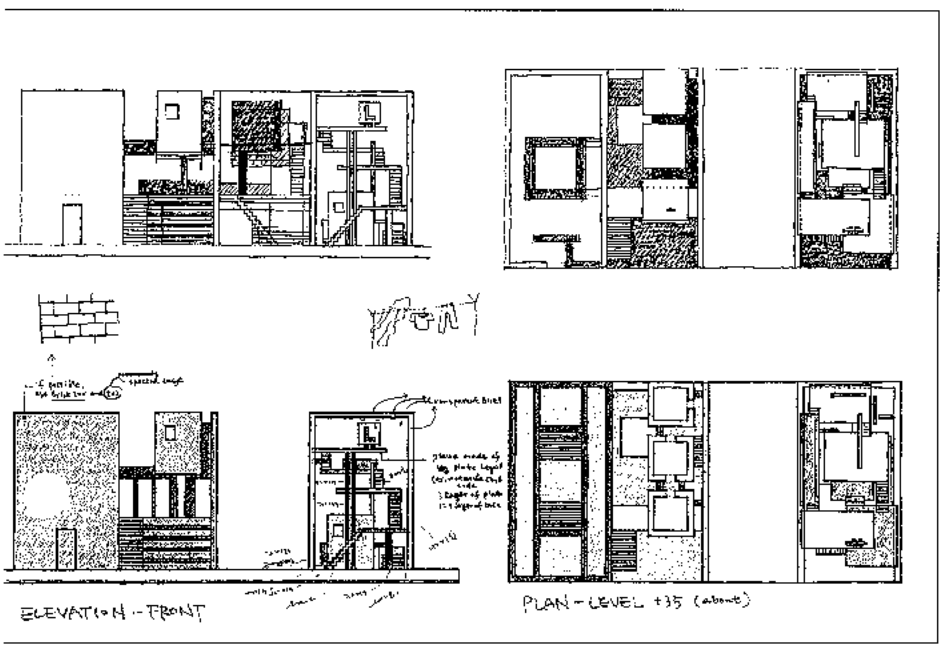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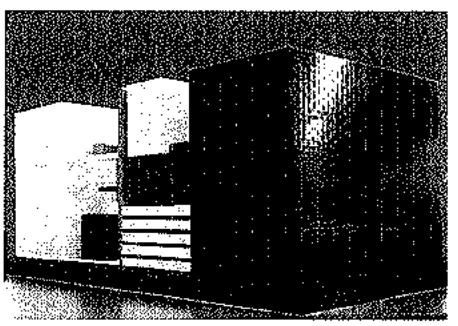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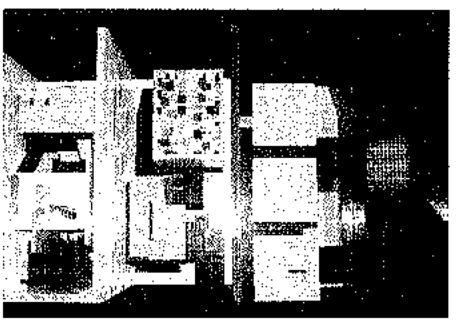

고맨, 레고이스트(LEGOIST)와 레고피언(LEGOPIAN)의 집을 소개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그리고 지면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은 고려할 때 더 이상 그 유명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미룰 수 없다.

레고맨의 집들은 매우 다양하게, 또는 제멋대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 다채로움이란 레고시티의 큰 자랑이다. 비슷한 수준의 기술과 동일한 제약을 갖고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물원의 모습처럼 저마다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레고시티의 시민들에게 무한한 경외감을 느끼게된다. 그러한 레고시티의 다채로운 풍경 속에서 유난히 레고이스트와 레고피언의 집이 화제가 된 이유는 지독히 극단적인 성격의 두 레고맨이 완성한 지극히 극단적인 집의 모습 때문인데, 더구나 둘이 서로의 옆집에 살고있다는 우연은 이 사건에 신화적인 성격마저 부여한다.

먼저 레고이스트(LEGOIST)의 특징을 말하자면 에고이스트(EGOIST)가 그렇듯이 그 자신의 세계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른 레고맨들과의 관계에는 무관심하다. 다만 자신의 구원을 위해 '우주의 축'이라고 불리우는 절대적 존재와 관계를 갖기 원할 뿐이다. 자기자신의 존재를 헛된 시대의 흐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해탈하기를 바라는 그는 레고시티에서 '낭만의 섬에 유배된 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레고이스트와 이웃해 살고 있는 레고피언(LEGOPIAN)은 유토피안(UTOPIAN)과 같이 그가 사는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며, 서로의 이기적인 벽을 허물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제까지 레고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집과 도시를 창조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해방된 자유와 평등함을 누리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정해진 범위에서 충실히 생활하는 보통의 레고맨들은 그에게 '경계와 분수를 모르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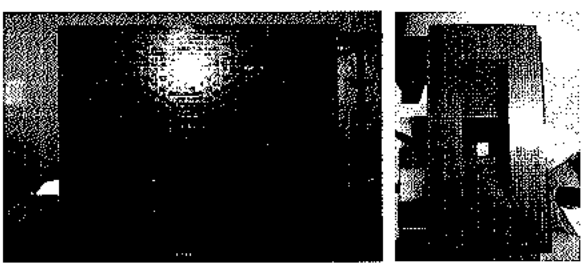

레고이스트 H-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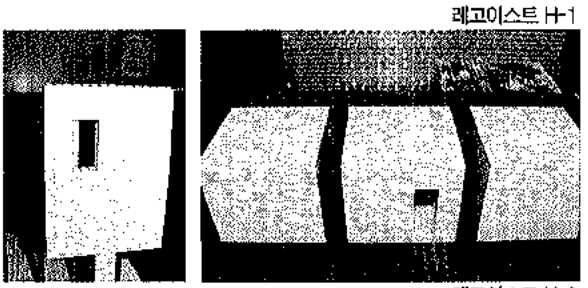

레고이스트 H-2

레고이스트(LEGOIST)의 첫 집은 대단한 충격을 도시에 선사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집은 빨강색만을 사용한 하나의 단순한 덩어리였다. 그 단순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력한 인상을 주었는데 그 집은 내부에 정사각형의 작은 중정을 두고, 외부는 입구 외에는 창문하나 없는 단순한 벽으로만 처리했다. 완강한 형태를 지닌 덕에 레고시티에 '붉은상자'는 유명해 졌지만, 그 단조로운 공간은 레고이스트의 삶의 한 부분만 담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이들의 염려였다. 그러나 레고시티는 영원과 초월을 용납하지 않는 곳임을 누구나 알기에 그 불가능한 도전의 비극이 모두에게 감동을 준 것은 사실이다.

레고피언(LEGOPIAN)의 첫 번째 집 역시 만만치 않은 놀라움을 주었는데 그 집의 정면은 완전히 개방되어있고,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담조차 투명한 블록을 사용해 레고피언의 집은 그의 말대로 세계로 열린 집이었다. 게다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집은 계단과 기둥과 벽이 다채롭게 놓여있으면서 공간은 계속 흐르도록 구성되었다.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동안 누구나 움직임에 대한 충동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는 소감을 말하면서 레고피언이 겪게될 일상의 고달픔을 걱정했다. 그러나 온갖 종류의 색과 모양의 블록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함과 정의되지 않은 공간이 이루는 다이내믹한 흐름 그리고 레고테크놀러지가 만들어낸 레고비젼과 같은 여러 장치들은 레고시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다.

레고이스트(LEGOIST)는 그의 첫 번째 집이 가진 한계를 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 집이 강요하는 단조로운 삶은 그에게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개방적인 소통과 풍부한 삶을 담아낼 다양한 공간이었다. 그는 새로운 집에 노란색을 붉은 색과 함께 사용하는 한편 중정과 아울러 여러가지 마당을 만들어 그가 추구했던 중심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주위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마당을 향유할 수 있게 했다. 정의된 공간에 대한 그의 집착은 여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듯 몇 개의 '방'을 마련했다. 창이 하늘을 향한 방, 도시를 향한 방, 마당을 향한 방 등. 모두 세 개의 방이 마련되어 우주의 축과 교감하면서도 동시에 그 자신과 레고시티와 교감하는 장소를 마련

할 수 있었다. 레고이스트의 두 번째 집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데 비로소 삶이 녹아있는 집이 되었다는 이도 있고, 진실해졌지만 진리와는 멀어졌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이도 있고, 레고피언과 옆집에 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끝으로 레고피언(LEGOPIAN)의 두 번째 집에 대해 소개할 차례이다. 레고피언은 두 번째의 집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레고이스트라면 몰라도 레고피언이 정의된 공간인 '방'을 만들다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방은 레고피언이 레고이스트에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수근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잘못된 짐작이었음이 드러났다. 레고이스트는 그가 현실에서 그의 유토피아를 더 이상 건설할 수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사이버스페이스에 탐닉하기 위해서 주위와 격리된 '방'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 방은 온갖 이미지의 신호들로 가득한 장소로 투명함 속에 온갖 색채의 파편들이 혼합된 이미지의 덩어리이다. 레고피언의 첫 번째 집에 마련되었던 레고비전(LEGOVISION)은 텔레비전이 그렇듯이 레고맨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계였다면 레고피언의 두 번째 집에서는 레고비전이 오브제가 아니라 하나의 '방'이 되어 레고피언을 그 속에 가두는 그물이 되어버렸다. 이제 어쩌면 레고시티에서 레고피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런지도 모른다.

레고시티의 화제거리였던 레고이스트와 레고피언의 집은 첫 번째 집에서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두 번째 집에서는 조금씩 서로를 닮은 모습이다. 그러나 닮아 보이는 그 형태 뒤에 숨어있는 커다란 차이는 닿을 수 없는 지점으로 서로를 밀어 넣는다. 레고시티의 '미래'는 레고이스트와 레고피언의 집이 그랬듯 '서로에 대한 차이와 간격',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아! 지금 막 들어온 소식, 레고피언이 엘리베이터와 레고비전의 방만 있었던 그의 집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몸이 요구하는 바, 먹고 자고 배설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공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방금 전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할는지 모른다.

다음: 그들이 서로 세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신체라는 공통된 한계와, 그리고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비롯될 사유들이 그들에게 교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것이다. '서로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속에서 그들의 미래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작업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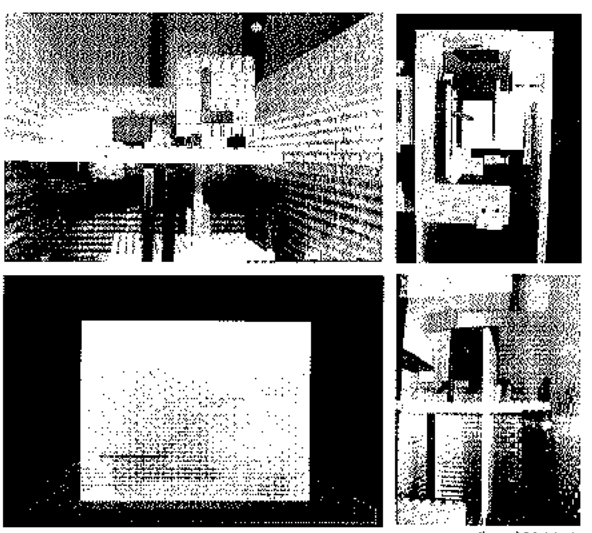

레고피언 H-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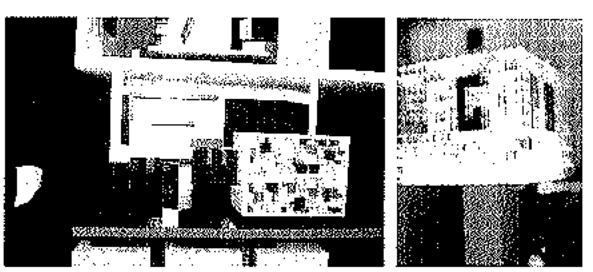

레고피언 H-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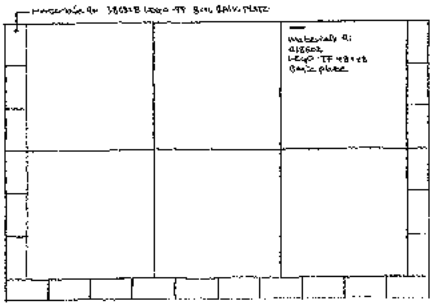

PLAN – BASE PLATE Level-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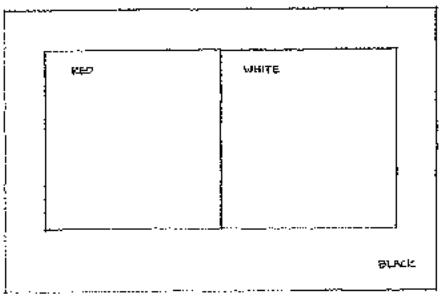

PLAN – BUILDING BASE : Level-0 ~ Level-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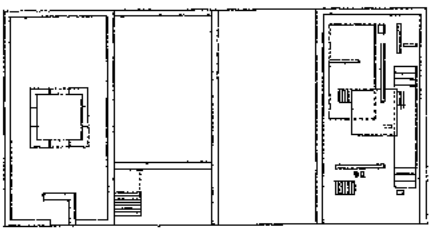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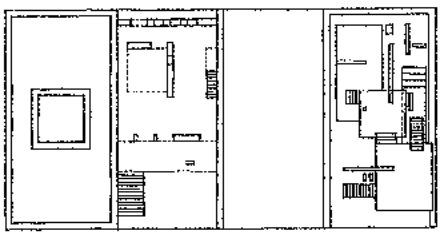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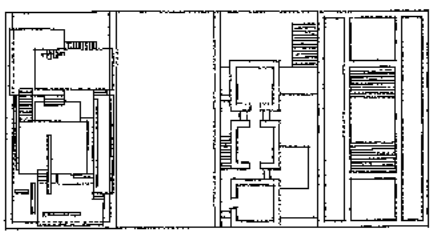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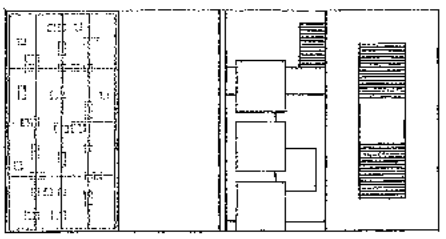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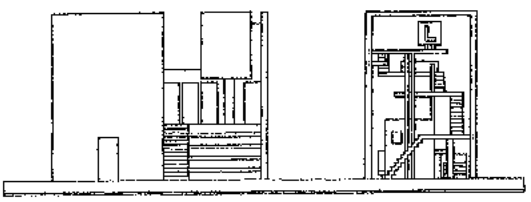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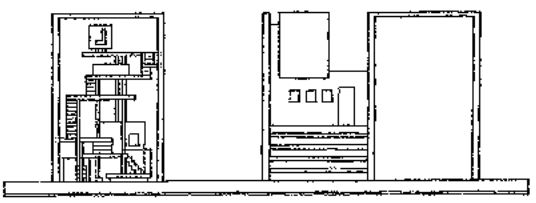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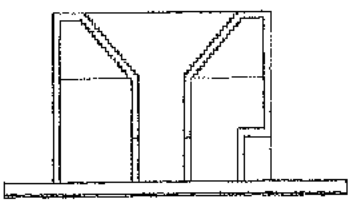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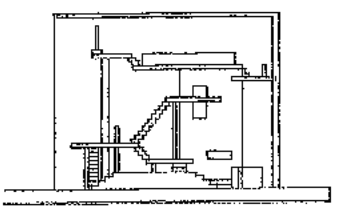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4)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Architecture of China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 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본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연재목차〉

1. 시대적 풍격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중국 전통문화의 세례를 받은 수 많은 지식인과 문인, 화가들은 출세(出世)와 입세(入世)의 사이를 배회하며 자연의 산수 속에 도취되어 다채로운 원림을 조성하였으며 각양 각색의 건축물을 그 사이에 배치하여 자연과 인공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중국 고전 원림 안에 지어진 여러 가지 형태의 건축물은 물, 화목, 돌과 더불어 원림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거주자의 생활욕구를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간을 조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오늘날 원림 내에 세워진 건축물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대의 전통적인 공간의식은 건축물의 내부는 물론 건축의장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으며 건축의 기능

은 생활의 발전에 따라 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가 있어 왔다. 그 결과 건축물은 경관감상의 목적과 외관의 조형적 표현, 놓여진 지형지세, 나아가 관련된 사건 등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명칭과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먼저 경관을 취하고 교묘하게 남향을 지향하도록 했다. 특히, 주요한 건축물이 대부분 남향을 선호하는 것은 전통적인 좌향법에 따른 조치이지만 원초적으로는 지리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어 나온 것이다.

기하학적, 혹은 규칙식 원림이라고 불리우는 전통적인 유럽의 원림이 건축적인 개념으로 원림 전체를 경영하여 건축의장에 따라 수목, 화훼를 기하학적으로 배치하고 심지어 수목 조차도 인위적으로 다듬어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루도록 하는 반면, 포장된 유람노선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건축요소를 수목과 화훼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숨기고 자연경관이 파괴될까 크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중국 고전 원림이다. 특히, 중국 고전 원림의 건축경영에 독특한 견해를 대표하는 강남원림은 사람과 자연의 대립, 통일관계를 그 속에서 구현하고 건축과 자연경관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중국 고전 원림의 경영자들은 원림을 실용의 기능과 성격을 갖추고 있는 인위적인 자연경관으로 파악하여 인공적인 건축 처리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 인공 사이의 대비 내지는 의탁을 통하여 통일과 조화의 예술효과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국 고전 원림은 지표면의 조작, 수목의 배치 등과 같은 자연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경영하되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인공수단, 즉 건축적인 원리와 수법 또한 상당히 중시한다.

중국 고전 원림에서 건축경영은 원림유람의 실용적인 기본요소이고 원림예술의 조직수단이므로 원림 속의 건축은 원림 자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원림이 건축을 에워싸고, 건축이 원림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귀결된다. 또한 원림의 실용성은 건축경영의 존재, 기본규모, 기능, 성격을 결정하며 원림의 예술적 사고는 건축의 형상과 경관의 구조관계를 규정한다. 원림경영의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경관의 주제는 산수의 유형, 화목의 품종을 한정하는 동시에 건축의 예술적 면모를 확정짓는다. 이것은 일종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4.1 건축 특징과 조군의 배치

중국 고전 원림은 원림 경영자의 경제적인 지위와 지역의 기후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주어진 환경조건에 따라 높으면 대를 쌓고 낮으면 연못을 파며, 다양한 건축유형을 배치하고 화목을 심어 자연을 표현함으로써 전형적인 산수경역을 창조하였다. 원림 내의 건축물은 일반적인 주거, 궁궐, 사묘와 달리 중축선의 대칭적인 배치를 취하지 않고 지형과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관의 오묘함을 얻도록 한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계획을 하여 가장 좋은 시선과 경관의 장소를 택한다. 비록 축선은 없지만 오히려 건축물은 서로 대경(對景)을 이루고 아름다운 원림의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배려한다. 따라서 지형과 결합된 건축물은 산을 뛰어넘고 물을 가로질러 자연과 융합되지 않은 것이 없다.

공간적인 처리는 일반적인 중국 고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방형의 폐쇄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대칭을 최대한 피하고 곡절과 변화를 유도한다. 회랑이나 담을 이용한 공간의 분리 이외에 산석(山石)을 쌓고 동굴을 뚫으며 건축물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융통성 있고 밋밋하지 않은 공간을 창조해 낸다. 그리고 꽃벽과 담장 위에 만들어진 누창(漏窓)은 조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공간과 공간이 서로 교감을 갖고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분화를 통한 크고 작음의 대비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경물(景物)의 층이 무한히 전개되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원림 내의 건축물은 실용적인 기능 이외에도 원림을 구성하는 경물의 하나이다. 따라서 건축물 자신의 윤곽과 조형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점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전 건축의 지붕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북방의 원림건축은 대다수가 용마루가 없는 권붕형식의 지붕을 채택하고 있어 경쾌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느껴진다(그림1). 반면 남방의 건축물은 처마선의 강조에 치중하여 과장된 곡선이 하늘로 치켜올라가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그림2). 그러나 이러한 건축물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서보다는 몇 개의 동이 서로 어우러진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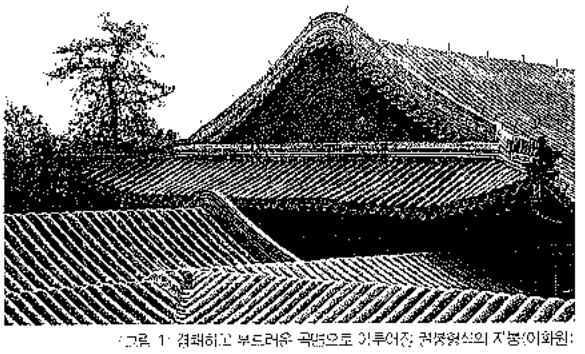

그림 1: 경쾌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권붕형식의 지붕(이화원)

(그림 2) 파장된 처마와 곡선이 하늘로 치켜 올라가는 남방건축의 지붕(졸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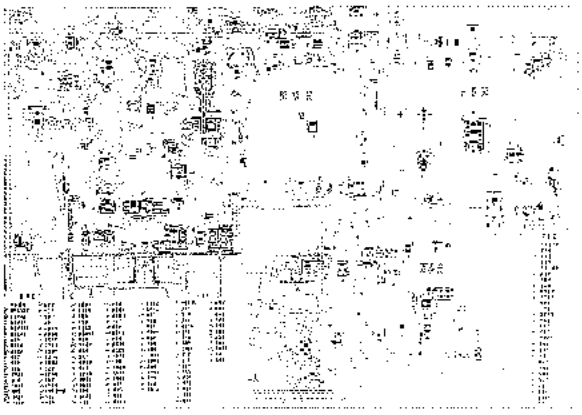

(그림 3) 북경에 있는 대표적인 황가원림 원명원의 복원 평면도

군을 형성함으로써 경관점, 혹은 경관구역을 만들어 낸다. 건축물 자체를 이용하여 조형예술을 구현하는 방법은 동서양의 건축가들이 이미 익숙하게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인상을 남겨준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사례는 대형 원림인 황가원림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경의 원명원(圓明園)이다(그림3). 통계에 의하면 이곳에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조성된 경관점이 150개 정도인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궁전사관류(宮殿榭館類)** : 정대광명(正大光明), 근정친현(勤政親賢) 등과 같은 경관구역과 경관점으로서 이러한 곳의 건축군은 모두 남향이고 축선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며 엄격한 전통적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다.

※ **자형도안류(字形圖案類)** : 전자형(田字形)의 담박녕정(澹泊寧靜), 만자형(万字形)의 만방안화(万方安和), 구자형(口字形)의 염계낙처(濂溪樂處), 공자형(工字形)의 일천림자(日天琳字)등과 같은 것으로 한자(漢字)에서 평면도의 형상을 취하여 태평성세를 추구했다.

※ **임수건축류(臨水建築類)** : 원명원은 수면(水面)이 풍부하여 적지 않은 건축물이 물을 면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가 풍부한 수면 사이에는 낭교(廊橋)와 서로 연결된 상하천광(上下天光), 자운저호(慈雲奢護), 건축물이 밤하늘의 별처럼 수면 위에 분산된 산고수장(山高水長), 영수난향(映水蘭香), 수목명비(水木明瑟), 북원산촌접수산방(北遠山村接秀山房), 조신락덕(操身洛德), 다가여운(多稼如雲) 등의 경점이 있다.

※ **도상건축류(島上建築類)** : 대규모의 가운데 있는 섬들은 복해(福海)의 봉도요대(蓬島瑤臺), 장춘원의 해악개금(海岳開襟), 기춘원의 봉린주(鳳麟洲) 등 비교적 큰 섬 위에 조성된 건축군이다. 대다수는 비록 수면이 포위하고 있으나 물을 건축군의 중정으로 다시 끌어들여 수경(水景)을 재창조한다. 회방서원(　房書院), 낭연대공(廊然大公), 문원각(文源閣), 조원(藻園), 자벽산방(紫碧山房), 여원(茹園) 등의 장소는 수로가 종횡으로 이어져 섬이면서 섬이 아닌 듯 보이는 곳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원림 속의 원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하나의 폐쇄된 공간을 이루고 강남의 원림을 모방하여 원래의 수면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항주에 있는 서호의 삼담인월(三潭印月)과 비교하자면 물속에 섬이 있고 섬 속에 물이 있다해도 원명원의 부분 건축군은 대부분 담이 둘러져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건축군은 주위의 자연환경과 적절히 결합되어 있고 서로 다른 제재(題材)에 의거하여 변화가 풍부한 건축군을 조성해 낸다. 원명원이 있는 북경은 지리적으로 겨울이 되면 매우 추우므로 대부분의 주요 건축은 남향을 취함과 동시에 각각의 조군(組群)은 주종의 관계에 치중한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제명(題名)이 있는 경관구역의 주요 건축은 그 위치가 현저하고 비교적 돋보이도록 주변의 다른 정, 랑, 각, 사 등의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배치한다. 이것은 중국 고전 원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적지 않은 경관구역으로 하여금 엄격함 속에서 긴장감을 갖고 통일감을 이루도록 한다. 다만 여기서 원림의 경영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밀도의 문제로서 건축물 사이의 거리, 크기, 단위면적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수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다.

4.2 건축 유형

중국 고전 원림에서 경영되는 건축물을 편액의 유형으로 보면 청(廳), 당(堂), 관(館), 실(室), 헌(軒), 사(榭), 정(亭), 랑(廊), 루(樓), 각(閣), 재(齋), 방(房), 옥(屋), 려(廬), 사(榭), 처(處), 소(所) 등이 있는데 그 대다

수는 기원이 아주 오래된 고대 건축의 명칭이다. 이같은 다양한 건축물의 명칭은 중국 고대 철학에서 명실관(名實觀)을 대단히 중시한 유가(儒家)와 명가(名家:또는 形名家라고도 하는데 形名學派로서 『戰國策 · 趙策』에 보임)의 영향하에 그것의 실제 기능은 물론 사람들의 심미관점이 일정하게 반영되었으며 본래 각자 일종의 구체적인 건축형식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중국 고전 원림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청(廳), 당(堂), 재(齋), 방(舫), 관(館), 정(亭), 대(臺), 루(樓), 각(閣), 사(榭), 헌(軒), 랑(廊), 실(室) 등 13가지의 유형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청

『광운(廣韻)』에는 "청은 옥이다(廳, 屋也.)"라고 했고 『집운(集韻)』에는 "옛날에는 치관이 거처하는 곳을 일러 청사라고 했는데 뒷말을 줄여 청이라 하여 의미가 보다 넓어졌다(古者治官處謂之聽事, 後語省直曰聽, 故加廣.)", "청사는 사건의 송사를 받는 곳이다(聽事言受事察訟)"라고 하였으며 『석명 · 석궁(釋名 · 釋宮)』에는 "청은 청사다(廳, 所以廳事也.)"라고 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건축을 뜻했다. 청(廳)은 고금의 원림에서 대부분 연회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거나 나무와 꽃을 보고 즐기는 장소로서 공공건축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청의 건축면적은 비교적 클 수밖에 없었다. 송대의 이격비(李格非)가 쓴 『낙양명원기(洛陽名園記)』의 "계곡을 에워싸고 있는 왕개부의 택원은 매우 정갈하다. 시원한 사와 화려한 청은 그 밑에 수백명이 앉을 수 있는데 웅대하고 장려함이 낙양에서 비할바가 없었다.(環溪王開府宅園甚潔. 凉榭錦廳, 其下可坐數百人, 宏大壯麗洛中無逾者.)"와 같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의 면적이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청과 당은 일반적으로 연결해서 불리우는데 명대의 조원가였던 계성은 『원야(園冶)』에서 "무릇 원림의 입지는 청당의 위치를 위주로 삼는다.(凡園圃立基, 定廳堂爲主.)"라고 하며 비교적 큰공간을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림에서 주체적인 건축이며 가구의 진설을 비롯하여 문과 창의 양식 등에서 조형의 정미로움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의 전후에는 대부분 화목을 심고 가산을 쌓아 유람객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 앉아서 주위의 원림 경색(景色)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청의 명칭을 취함에 있어서도 그 부근에 심은 수목과 화초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오늘날 자주 보이는 매화, 연꽃, 계화, 목단 등과 같은 청의 명칭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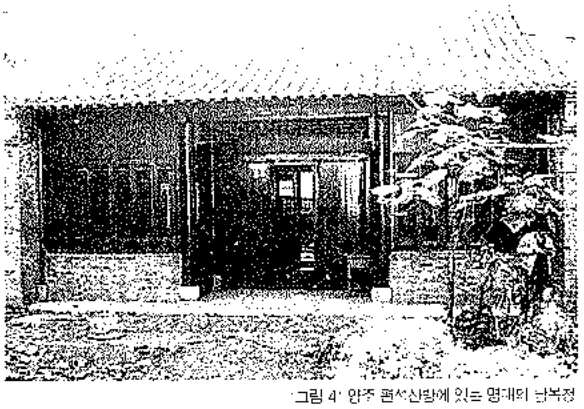

그림 4 양주 평산당에 있는 명대의 남목청

청의 건축재료는 남목(楠木)이나 백목(栢木)과 같은 귀한 목재를 사용하는데 남목을 사용한 청이 가장 많고 백목의 청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그림4). 남목으로 지은 청의 형제(形制)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소주의 유원에 있는 오봉선관(五峰仙館)으로 이것은 유원 안에서도 가장 큰 건축물이다. 청대에는 실내에 남목으로 만든 정교한 의자와 탁자가 여럿 진설되고 벽에는 글씨와 그림 등이 걸려 있어 정미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청의 지위와 사용성질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택의 중축선 상에 놓인 문제(門第) 뒤에 있는 것이 교청(轎廳)인데 다청(茶廳)이라고도 한다. 다청 뒤가 대청(大廳)이고 대청 뒤가 여청(女廳)이며 여청은 대부분 누방의 형식이다. 양측에는 화청(花廳)과 서청(書廳)이 있다. 청의 어칸 맞은 편에 있는 비슷한 양식의 건물을 대조청(對照廳)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방에 회랑, 비첨 등이 첨가되면 호접청(蝴蝶廳)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곤충, 조수로서 청의 이름을 취한 것 가운데 예술성과 결구성을 가장 잘 갖춘 것이 원앙청(鴛鴦廳)이다. 원앙청이란 이름의 기원은 결구부재와도 관련이 있다. 원앙청은 전후 2동의 청을 하나로 결합한 것으로 청의 깊이를 증대시켜 실내공간을 확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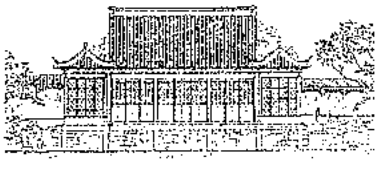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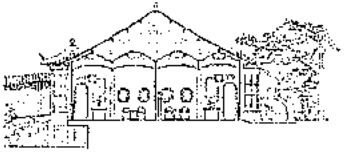

그림 5 소수 물장은 보련에 있는 삼십육 원앙청의 입면, 단면도

(그림5). 그러나 전후 청옥의 결구는 반드시 일체화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원앙청이라고 할 수 없다.

(2)당

당은 원래 흙으로 쌓은 높은 대를 지칭한다. 『석명 · 석궁(釋名 · 釋宮)』에 이르기를 "당은 당당함인데 그 모습이 높이 드러나는 것이다.(堂猶堂堂, 高顯貌也)", "당은 마땅함인데 바로 밝은 쪽을 향하여 놓여져 있음을 이른다.(堂者, 當也, 謂當正向陽之居.)"라고 하여 여러 채로 이루어진 건축군 가운데 정남향에 위치한 주된 건축물로 시야가 탁트이고 밝은 대청을 뜻한다. 이같은 사실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기(臺基)는 전당(殿堂)의 당이 결코 아님이 분명하며 전당의 당으로 쓰이게 된 것은 후대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원림에서의 당은 반드시 중축선의 가운데 위치하며 남향을 하고 당당하게 탁트인 널찍함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명대의 원림 전문서적 『원야』에도 보이고 있는데 청당은 우선 경관의 문제에 유념하여 남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황가원림에서는 거주용의 건물을 당이라고 하는데 유행에 따라 사회의 대다수 문인, 사대부 등도 자신이 기거하는 집의 중심 되는 건물에 당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러므로 당의 명칭은 거주자의 덕성과 멋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되었다(그림6).

(그림 6) 소주 졸정원에 있는 원앙당

원래 당과 청은 관습적으로 규모에 따라 큰 것을 청, 작은 것을 당이라 하고 평면으로 보면 청은 대부분 방형의 규격화 형상을 하고 있으며 당은 변화가 자유롭다. 또한 청대의 요승조(姚承祖)가 쓴 『영조법원(營造法原)』에는 결구부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민도리집에 해당하는 것을 청, 굴도리집을 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과 형식에서 당과 청은 서로 닮았으며, 이후에는 둘 사이에 확연한 구분은 사라지고 두 글자를 붙여서 청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종종 사용되었다.

(3)재(齋)

재는 원래 재계(齋戒)의 의미로서 목욕재계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행해지는 예절이다. 유교와 도교에서 모두 재계의 일을 중시했고, 이후 불교건축에서 재당은 승려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을 지칭하는 또다른 의미를 띄게 되었다. 재라고 하는 어휘는 일반적인 건축에 사용할 경우 학사, 서재를 뜻한다. 원림에 보이는 재는 한가로이 거주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한적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다. 그 양식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실내의 진설은 대부분 고상하고 범속함을 꿈고 있다(그림7).

그림 7) 소주 이원의 회방재

(4)방(舫)

방은 일명 한방(旱舫), 방청(舫廳)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강남의 원림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경관과 어우러진 건축양식인데 화방(畵舫), 누선(樓船)으로 변용되었다. 과거에 소주성에서 하천을 따라 호구산으로, 양주성에서 수서호로, 항주에서 서호로, 가흥의 남호로 각기 유람을 가게 되면 부유한 사람들은 화방과 누선 같은 대형의 수상놀이 도구를 이용하여 연회를 벌였다. 그러나 사가원림의 수면은 작고 좁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흥취를 얻을 수가 없어 점차 화방이나 누선을 모방한 건축양식을 만들어 냈고 이러한 유형의 건축을 방, 한방, 방청이라고 불렀으며 여기에는 사실주의, 자연주의, 추상주의적 창작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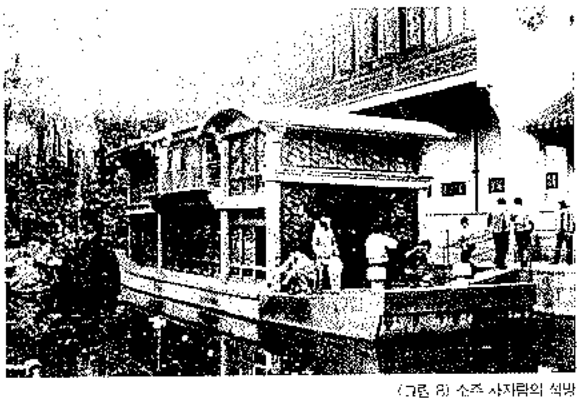

(그림 8) 소주 사자림의 석방

이 담겨 있다(그림8).

(5)관(館)

관은 건축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객사(客舍)의 의미로서 옛날에 공공기관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립한 건축물인데 오늘날의 여관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다. 두 번째 의미는 요제(堯帝)가 자신의 사위를 위하여 만든 전문적인 관사(館舍) 즉, 관저를 뜻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가옥 즉, 옥사(屋舍)를 일반적으로 관이라고 불렀다. 사가원림이나 개인의 주택에서 관은 객사의 별칭이나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었다(그림9). 명대 가경 황제 이후 각 도시에 만들어진 회관(會館)은 객사의 개념에 속하는 관으로 관료, 상인, 시험보러 온 문인, 학사들을 접대하는 장소로 쓰였다. 근대 이후에는 체육관, 도서관, 전람관 처럼 원림에서의 의미와 범주를 이미 크게 벗어나고 있다.

(그림 9) 소주 유원의 임천가석지마

(6)정(亭)

정은 원림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건축물로 초기에는 정자가 있으면 곧 바로 화원(花園)이라고 했으므로 원림을 원정(園亭), 혹은 정원(亭園)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진한 시대에는 정이 경관을 감상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이 아니라 도로의 양쪽 혹은 변방지역에 여행객이 머물거나 적진의 상황을 관찰하는데 쓰였으며 건축양식도 후대의 것과는 아주 달랐다. 이같은 정에 관해서 『석명 · 석궁(釋名 · 釋宮)』에는 "정은 사람들이 머물러 모이는 것이고, 전하러 들리는 곳이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다 가고 후인이 다시 와서 전갈을 서로 전하는데 항상 머무는 주인은 없다(亭者, 亦人所停集也, 傳轉也. 人所止息而去, 後人復來, 轉轉相傳, 無常主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정은 원래 여행도중 비를 피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간단한 천막이었다. 그러나 정은 비교적 일찍부터 원림에 이용되었다. 원림에서의 정은 휴식을 취하고 풍경을 감상하는 건축으로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크기가 동일하지 않고 평면의 형식이 다양하며 항상 지형에 따라 조성되었다. 평면의 형식에는 원형, 방향, 육각형, 팔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꽃모양을 본뜬 것도 있다. 그리고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계정(溪亭), 하정(河亭), 산정(山亭), 교정(橋亭)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것이 세워지는 장소로는 원림의 유람노선에서 강조하고 싶은 곳, 회랑의 끝, 길모퉁이 등이며 담과 문에 붙여서 만들기도 한다(그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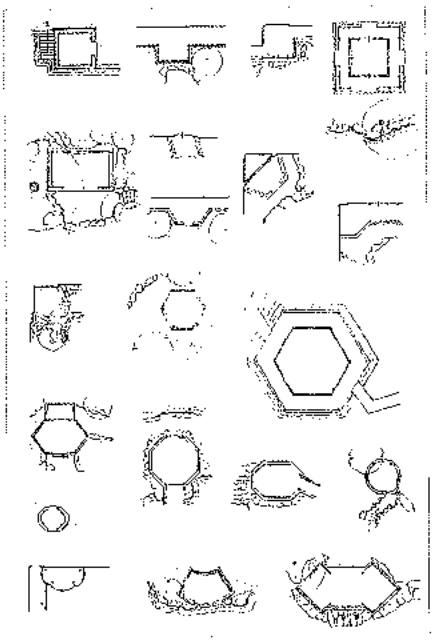

(그림 10) 정자의 다양한 평면형식

(7)대(臺)

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조망해 보는 일종의 토목 구축물이다. 초기에는 항토(夯土:흙을 단단하게 다지는 방법으로 달구질이라고 함)라고 하는 간단한 기술을 이용하여 흙을 쌓아 높은 장소를 만들었는데 유관건축(遊觀

建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고전 원림에서 대를 쌓는 것이 가장 성행한 시기는 진한 시대였다. 그러나 후대에 들어서면서 원림에 대를 조성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나 그 제도에 관해서는 『원야』에서 『석명』의 내용을 인용하여 "대는 지탱한다는 뜻이다. 흙을 견고하고 높이 쌓아 능히 지탱하는 것을 말한다. 원림에 있는 대의 경우는 어떤 것은 돌로 높이 쌓고 그 위를 평탄하게 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나무를 엮어 높이 쌓고 그 위에 평판을 깔되 지붕이 없는 것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누각의 앞면에 한 보 정도 튀어나오게 하여 개방시킨 것도 있는데 모두 대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대의 제도는 이미 고대의 상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루(樓)

루는『설문』에 "중첩하여 지은 집이다(重屋也.)"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중(重) 자는 반드시 2층에 국한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2층 이상의 중층으로 된 건축물은 모두 루라고 할 수 있다. 명대의 원림에서는 대부분의 루를 청이나 당 뒤에 위치시켰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침실, 책방, 혹은 풍경을 감상하는데 사용하였다. 루는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항상 원림 경관의 두드러진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물을 향하거나 산을 등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9)각(閣)

이것은 루와 유사한 건축물로 비교적 정교하다. 각은 대부분 2층이고 사방에 창을 설치했으며 일반적으로 책을 보관하거나 경치를 감상하는데 사용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곳에 큰 불상을 모시기도 했다. 가장 초기에는 문짝을 멈추게 하는 일종의 목조부재를 각이라고 불렀으며 진한 시대에는 랑도(廊道)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였다. 『옥편(玉篇)』의 해석에 의하면 "각은 루다(閣, 樓也)"라고 하여 각과 루는 서로 동일한 의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두 간란식(干闌式: 원두막 처럼 바닥을 지상에서 일정하게 띄운 구조) 건축유형과 동일한 형식에 속한다. 그러나 건축물 매스의 볼륨이 비교적 간단하고 호리호리한 것을 주로 루라고 불렀고 이와 반대로 매스의 볼륨이 집중적이고 비교적 복잡한 것을 각이라고 했다(그림11). 후대에 이르러 각과 루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없어졌으며 누각(樓閣)이라는 단어가 주로 통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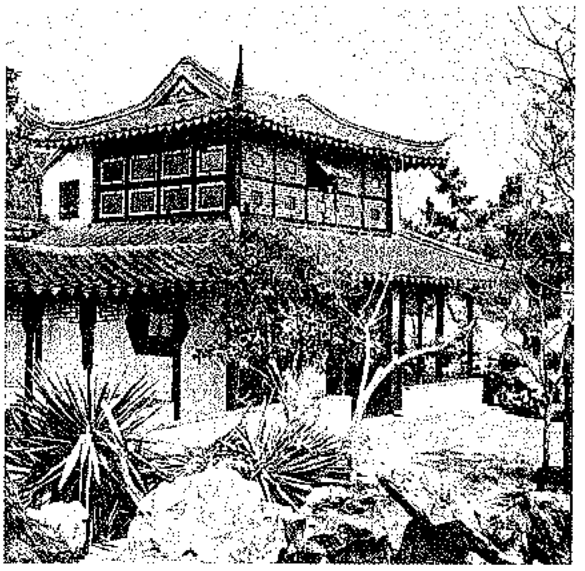

그림11: 소주 유원의 원취각

(10)사(榭)

사는 『설문』의 해석에 의하면 "대에 집이 있는 것이다(臺有屋也)"라고 하였으며 상대와 주대에는 고대(高臺) 위에 지은 집의 형식을 가리켰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대사(臺榭), 또는 대사(臺射)라고 불렀다. 그것은 사방에 벽이 없는 건물로서 초기에는 통치계층이 군사사열을 하고 연설을 하기 위한 곳으로 사용되다가 이후에 원림 안에 만들어지면서 유람과 오락을 위한 관상건축(觀賞建築)의 한 유형이 되었다. 특히 원림의 한 구성요소가 되면서 사는 『석명』에서의 해석처럼 일종의 차경(借景) 건축으로서 물가에 지어지고 융통성 있으며 자유로운 형식을 취했다. 이것은 주로 물가에서 돌출하여 수면 위에 세워지는 까닭에 구조가 경쾌하고 교묘하며 입면은 단층에 개방적이다.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은 물 속에 세운 돌기둥과 그 위의 보가 받친다. 그리고 평면은 장방형 또는 정방형에 가까운 것이 많으며 지붕은 대개 팔짝지붕의 형태를 사용한다. 주로 물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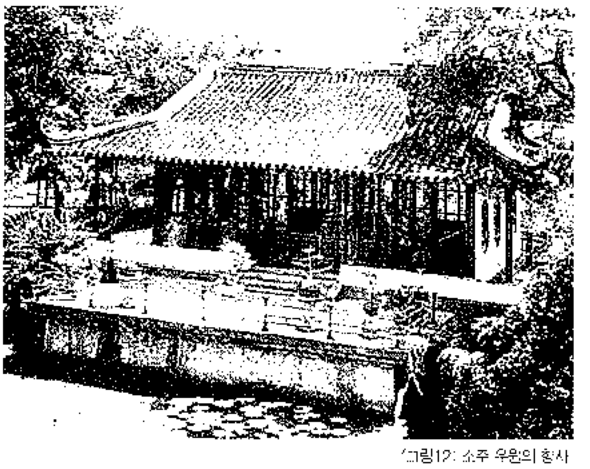

그림12: 소주 우원의 향사

장식하고 수면의 경관을 감상하는데 이용되는 건축물이다(그림12).

(11)헌(軒)

헌은 정과 마찬가지로 점경(點景)의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에 의자와 탁자를 진설하여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며 서화를 감상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점이 크게 다르다. 고대에는 난간, 문짝, 창호의 명칭이나 장랑의 의미로 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헌은 본래 수레 앞의 천막을 덮은 부분을 가리킨다. 『설문』에는 "만곡진 끌채가 달린 바람막이의 수레이다(曲輈轓車也)"라고 하였고 후대에 이와 유사한 것을 차용한 건축형식을 지칭하게 되었다. 강남지방의 상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청당의 전권(前卷 : 들보 위에 활꼴의 나무로 만든 천장이 있어 양 머리가 휘어져 내려오는 것)을 번헌(轓軒)이라고 부르며 삼면이 탁 트인 건축 역시 헌이라고 부른다(그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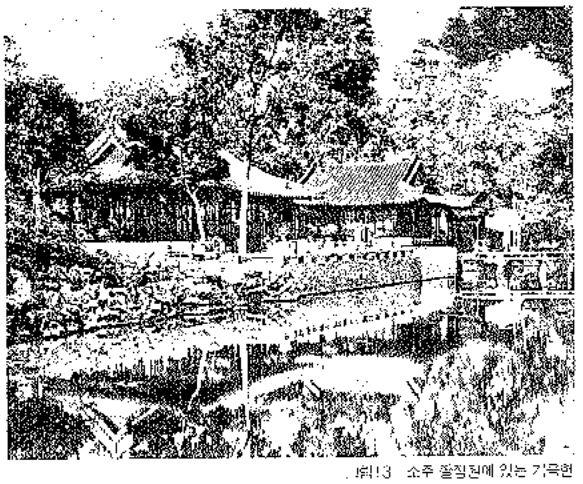

그림13 소주 졸정원에 있는 기욱헌

(12)랑(廊)

랑은 원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연결하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서 공간을 나누고, 경관구역을 조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동시에 그 자체가 원림의 풍격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세를 따라 놓여진 것을 유랑(遊廊), 굽이돌아 심하게 곡선을 그리는 랑을 곡랑(曲廊), 꺾어지지 않은 것을 수랑(修廊), 한가로이 거닐거나 배회할 수 있는 것을 보랑(步廊),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대랑(對廊),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죽랑(竹廊), 수면 가까이에 있으면 수랑(水廊)이라고 각기 부른다(그림14). 근대에 들어서는 대부분 지(之)자의 형상으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랑에는 모두 단청이 칠해져 있다. 랑은 『옥편』에는 "무 밑이다(廡下也)"라고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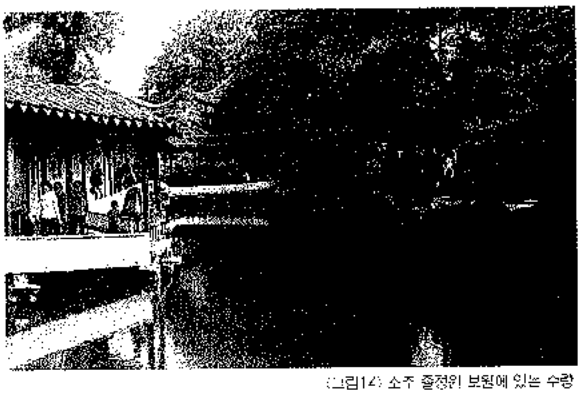

그림14 소주 졸정원 보원에 있는 수랑

있는데 안사고(顔師古)의 해석에 의하면 "당 아래 주변에 있는 집이다.(堂下週屋也)"라고 했다. 한나라 때에 이미 랑무(廊廡)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정원의 주위를 감싸는 일종의 건축형식이었다. 후대에는 텅빈 랑무를 이용하여 원림의 유람건축으로 삼았다.

(13)실(室)

실에 관해서 『석명 · 석궁』에는 "실은 채워져 있음이다. 사람과 사물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음이다(室, 實也. 人, 物實滿其中也.)"라고 하였다. 원시적인 의미로 보면 그것은 "집이 담 위로 보인다(屋見於垣上)"라고 하는 궁형(宮型) 건축(예전에는 옥개는 지상에 건축된 것이고 옥개 밑은 반지혈로 된 반혈거 형식)의 내부공간을 의미한다. 『이아 · 석궁(爾雅 · 釋宮)』에는 "실은 궁을 가리킨다(室謂之宮)"라고 하였다. 상대와 주대 이후 실은 당(堂)과 상대적으로 하나의 폐쇄적이며 깊숙하고 어두운 방 혹은 건축물로서 주로 침실용이었다.

4.3 건축 장식

원림건축의 장식은 일반 궁전이나 사묘와 달리 정교한 조각과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색채를 채용한다. 또한 공간의 투과방식을 통하여 실외의 사계절 경관을 담아낸다. 특히 고대의 목조구조는 내력벽으로서의 제한이 없어 기둥과 보 사이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대부분 벽이 없는 회랑, 문동(門洞), 누창(漏窓), 격선(隔扇)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서 외부를 향하여 경물(景物)을 감상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광경(框景 : 그림틀과 같은 형식으로 경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경관을 창출해 냈다.

건축물의 벽 위에는 일반적으로 도안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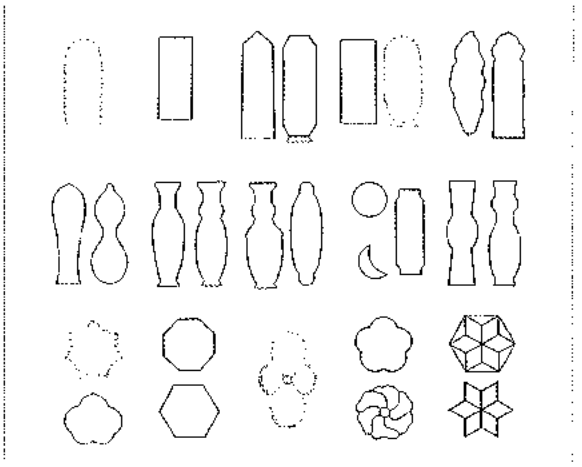

(그림15) 원야에 살려있는 문동과 누창의 다양한 형식

윤곽의 문이 있고 문이 열리는 쪽에는 대경(對景)을 조성하여 이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소품(小品)을 경험하도록 한다. 『원야』에는 이러한 문동의 기본 조형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그림15). 또한 창문은 통풍과 채광이라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경관을 취하고 장식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어떤 화창(花窓)은 문동처럼 도안화된 외형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또 어떤 것은 창문틀 안에 벽돌과 나무로 꽃 모양의 골격을 만들어 외부공간을 투과시킴과 동시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그림자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형태는 방형, 원형, 육각형, 팔각형, 부채형, 석류형 등 다양한 형상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의 난간은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장식이 가미되어 있다. 원야에 열거된 도안만해도 100가지가 되고 실재로 존재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다양하다(그림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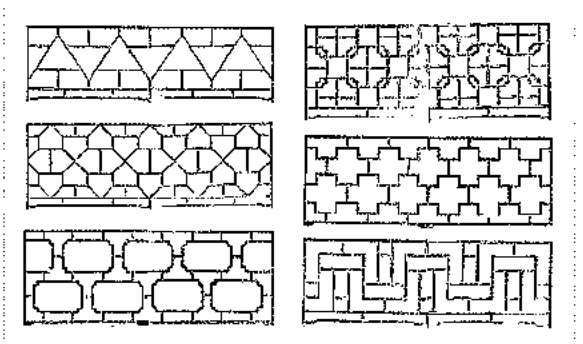

(그림16) 원야에 실려있는 난간 도안의 사례

고대의 장인들은 앞서 언급한 건축물의 각 부분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과 도안의 장식을 만들어냈다. 또한 재료의 질감을 살리기 위하여 벽돌을 물로 갈아 윤기를 내고 외부에 회를 바르지 않으며 나무에는 식물성 기름을 바르고 단아한 색채와 도형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채화만을 채용함으로써 궁전이나 사묘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원림건축의 세부장식은 실내뿐만 아니라 원림 내부의 바닥과 길 위에도 모두 정교하고 세밀한 구상과 정성스러운 시공을 반영하였다. 자갈을 깐 좁은 길은 원림의 필수품이며 각종의 낡고 못쓰는 재료와 보편적인 벽돌, 기와를 이용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노천에 깔아놓은 한 장의 카펫트 처럼 보인다. 특히 비가 온 뒤에는 각종 재질의 바닥재료가 각기 자신의 색채를 드러내게 됨으로 보기에 아주 좋다(그림17).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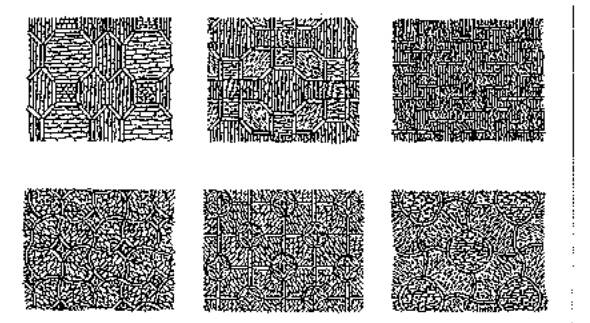

(그림17) 유람노선의 길 위를 장식한 도안의 사례

풍수지리로 분석한 뉴욕의 명당 (1)

Propitious Sites of New York According to Feng-shui

박시익 / 명당건축사사무소
by Park Si-Ik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건축사나 사업가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세계 제1의 도시 뉴욕에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뉴욕은 세계 제 1의 도시이다. 뉴욕의 마천루는 세계 제일의 도시 경관을 이루었고, 뉴욕 월 스트리트의 금융업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며, 또한 영화, 연극, 오페라, 음악, 건축 그리고 미술 등 각종의 문화 역시 뉴욕은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는 IMF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뉴욕을 비롯한 미국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호황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에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명당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뉴욕은 세계적인 명당이다. 그러나 뉴욕 안에서도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은 자리인가가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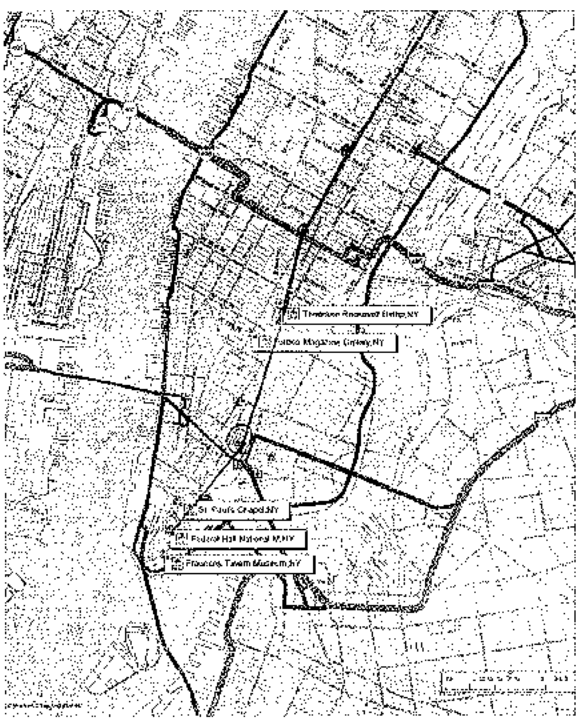

뉴욕의 지도

명당의 개념

뉴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장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좋은 조건의 사업장은 임대료나 각종 경비가 큰 부담을 갖게 한다. 동일한 비용으로 행운이 따르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사업 착수시에 중요한 부분이다.

사업장의 제반 조건, 예컨대 교통, 면적, 시설, 비용, 주변 조건 등 각종의 필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현장 조사에 의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자료 이외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새로운 사업장이 행운이 따르는 자리인가 또는 그렇지 못한 자리인가를 구분하는 일이다. 사업에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분위기를 중요시하는데, 이것은 분위기와 행운 그리고 성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행운이

있는 자리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정립된 풍수지리의 이론이 필요하게 된다.

풍수이론은 땅의 기운을 분석하는 방법론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땅은 지역에 따라 오랜 기간 사람을 편안하고 크게 성공케 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태풍, 지진, 홍수 그리고 한발이나 질병 등 자연의 재해로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땅도 있다. 땅의 토질은 다양하여 땅이 갖고 있는 기운도 모두 다르다. 식물도 토질에 따라 성장 과정이 다르다. 땅의 기운은 사람에게 활동력으로 유익하게 작용하지만, 땅의 기운에 따라서는 불리한 기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에서 사람들은 건강하며 근면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된다. 좋은 기운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병약하거나 우매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가 살고 있는 땅의 기운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좋은 기운이 많이 있는 땅을 명당 또는 혈이라고 한다. 명당을 선택하여 이곳에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이곳에서 생활하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좋지 못한 기운이 있는 땅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은 하루 빨리 행운이 있는 땅을 찾아 옮기는 것도 지혜중의 하나이다.

뉴욕의 명당은 월스트리트와 5번가

산이나 또는 언덕 중에서 높은 땅을 주봉 또는 주산이라고 한다. 땅의 기운은 주봉으로부터 시작하여 땅의 하부에까지 연결된다. 산으로부터 출발한 땅의 기운이 통과하는 지점을 용이라고 한다. 뉴욕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센트럴 파크 일대이며, 이곳이 뉴욕의 주봉이다. 센트럴 파크는 평탄하고 안정되어 주봉으로서 강한 기운을 만들고 있다.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 가장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주봉으로부터 발생한 강한 기운이 통과하는 지점을 주룡이라고 하는데, 뉴욕의 5번가가 주룡이다. 남쪽 보다 서쪽은 경사가 약간 급하며, 가장 급한 쪽은 동쪽이다.

뉴욕의 전체적인 기운은 센트럴 파크로 부터 시작하여 능선의 형태를 이루며 5번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며, 월스트리트 하단부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뉴욕의 형태는 센트럴파크는 용의 머리이며, 5번가는 용의 척추, 5번 가의 동쪽 지역은 용의 등, 5번가의 서쪽 지역은 용의 배에 해당된다. 월 스트리트는 용의 아랫배이며, 이곳이 자궁으로 가장 기운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뉴욕은 전체적으로 롱아일랜드를 등지고 미국 본토를 바라보고 누워있는 형태이다.

뉴욕 동쪽에 있는 롱아일랜드는 뉴욕의 청룡이다. 뉴욕의 서쪽에 있는 West New York는 백호다. 남쪽 가까운 곳에 있는 Governs Island, Liverty Island, Ellis Island 등 몇 개의 섬이 안산으로, 그리고 멀리있는 Staten Island 가 조산이며, 이들은 모두 주작이다. 뉴욕의 북쪽 Taconic 산맥으로부터 연결된 센트럴 파크는 주봉이며 현무다. 이와 같이 뉴욕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모두 잘 갖춰져 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 물은 사람에게 행운을 갖고 온다. 물에서 증발된 수분은 바람을 타고 흐른다. 물에서 부는 바람은 산의 기운과 만나면 행운의 기운으로 변화된다. 행운의 기운은 바람과 함께 흐르면서 지면에 그 기운을 전달한다. 물이 있다고 모두 명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이 너무 많은 곳이거나 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서는 행운의 기운이 만들어지지 못한다.

뉴욕은 동쪽에 East 강이, 서쪽에 Hudson 강, 남쪽에 Atlantic Ocean 이 있고, 그리고 남서쪽에는 Hackensack 강이 있어 모두 4종류의 서로 다른 강물로 둘러 싸여 있다. 음양으로 분석하면 땅은 양으로 남성을 그리고 강물은 음으로 여성과 재물을 의미한다. 뉴욕의 땅 형태는 남성의 생식기 형태를 이루고 있어 뉴욕 주변에 4개의 강물이 있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가 여성들 사이에 있어서 남녀 모두 활기차고 매우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 보다 4배로 힘이 강하고 4배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시내가 4개의 강물로부터 기운을 받고있는 형태는 강하고 부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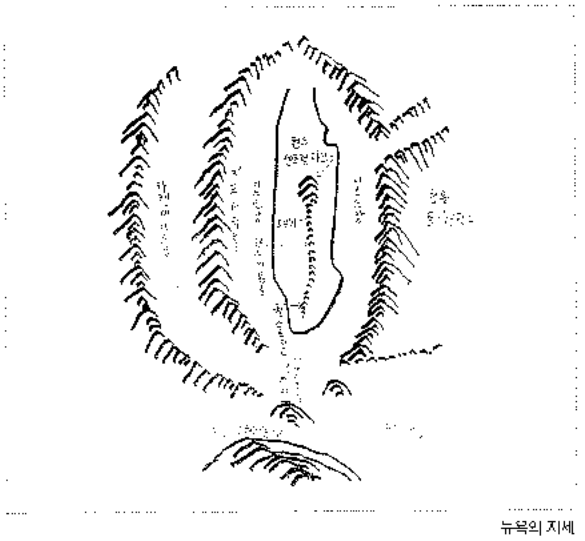

뉴욕의 지세

뉴욕의 사업가는 4명의 여성을 사랑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뉴욕 여성의 능력도 이와 같다.

남자와 여자가 음양으로 만나서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며 동시에 아이들이 출산된다. 명당은 음 기운과 양 기운이 결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음 기운은 강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며, 양 기운은 땅이 갖고 있는 기운을 말한다. 행운의 기운은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사랑으로 결합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사랑을 나누는 물에서는 명당이 된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물에서는 명당이 되지 못한다. 이 때 땅에 흐르는 기운은 행운의 기운이며, 행운의 기운이 있는 곳을 명당이라고 한다. 명당은 행운의 기운이 통하는 곳((Lucky Energy Zone, or Lucky Zone)이다. 지세의 분석은 물이 사랑을 나누는 위치를 찾는 일이다.

명당은 여인의 자궁과 같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신비한 생기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땅에서 발생되는 생기는 사람에게 건강과 재산 명예 성공 그리고 행운을 만들어 주는 행운의 기운이다. 비옥한 땅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명당에서 발생되는 기운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건강하며, 정신적으로 자비심과 창의력을 개발시킨다. 이웃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행운의 통로 위에서 사람이 살면 사람은 행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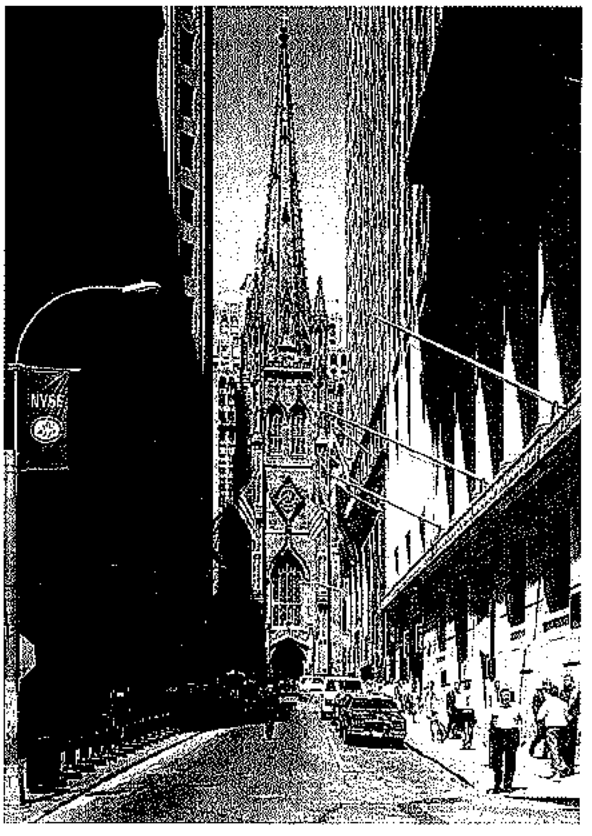

의 기운을 받아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독특한 능력은 명당의 땅에만 존재한다. 명당은 면적이 넓은 곳도 있으나 비교적 좁은 곳도 있다. 넓은 명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게 되어 큰 도시가 들어서며, 작은 명당에는 단 몇 채의 집이거나 심지어는 한 채만의 집이나 묘가 들어서게 된다

공기는 사람의 생명력을 만들어 주며 바람과 함께 사람에게 전달된다. 아무리 강한 사람에게 호흡이 단 1초라도 멈춘다면 그는 살아갈 수 없다. 좋은 바람은 사람에게 행복한 기운을 준다. 차갑고 강한 바람은 사람을 괴롭힌다. 뉴욕의 남쪽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롱아일랜드와 서 뉴욕 사이로 불어 정면으로 뉴욕을 관통한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 시간 동안 뉴욕 시내는 남쪽의 바다에서 바람이 북쪽으로 서서히 불어온다. 바다에서 올라온 바람은 땅의 기운과 결합하게 된다. 땅의 기운인 양과 바다의 기운인 바람은 음으로 뉴욕의 상공에서 서로 마주쳐서 사랑으로 결합하게 된다. 두 종류의 바람이 모여 사랑으로 생기를 이루는 곳은 Ney York 하부에서는 Wall Street 이며 상부에서는 5번 가 주변이다. 이곳이 명당의 중심지이다.

뉴욕의 토질은 강한 암반으로 이루었다. 땅의 기운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뉴욕의 명당 즉 행운의 통로(Lucky Zone)는 Central Park 남동쪽을 출발점으로 하여 5번 가를 따라 내려가 브로드 웨이 동쪽을 경유하여 Wall Street 로 연결된다. 땅의 끝 부분 기운은 서쪽으로 우회전한다. 중간에 Empire State Building, Theodore Roosevelt Birthplace, New York Stock Exchange, Federal Hal을 통과하여 Cunard Building 까지 연결되었다. 행운의 통로 위에는 생기가 강하게 흐른다. 이 행운의 통로 위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은 크게 발전하였다.

행운의 통로는 지역에 따라 일정한 폭을 갖고 있다. 5번가를 통하는 행운의 통로 폭은 중심선을 기준하여 동쪽으로는 1.5 블록, 서쪽으로는 2 블록 도합 3.5 블록 사이이다. 이 폭 내부는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다. 이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일수록 행운의 기운은 많다. 행운의 통로 폭 이내에 사업장이나 숙소가 있는 사람은 행운의 기운을 받아 크게 성공하게 될 확률이 많다.

뉴욕의 지세를 남북으로 구분하여 보면 중부(Midtown)지역에는 행운의 기운이 센트럴 파크 남쪽 5번가 주변에 가장 많다. Madson Square Park와 Union Square는 행운의 통로 위에 있다. 뉴욕의 남부(Downtown)지역에는 월 스트리트에 강하게 생기가 발생

한다. 월 스트리트는 뉴욕을 하나의 남성 생식기로 볼 때 가장 예민한 귀두부에 해당된다. Trump Tower 건물, Rockefeller Center, Union Square, Public Theater, Saint Patrick's Old Cathedral, Home Savings of America, Columbus Park, Municipal Building 들은 모두 행운의 통로 위에 자리잡고 있다.

뉴욕의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의 기운을 비교하면 서쪽에는 편안한 기운이 모여있다. 동쪽보다는 서쪽에 발전적인 기운이 많다.

뉴욕 항구의 남쪽 자유의 섬 (Liberty Island) 위에는 93미터 높이의 횃불을 든 여인 형태의 아름답고 거대한 조각이 있다. 1886년에 세워진 이 조각의 공식 명칭은 "자유의 조각" (Statue of Liberty) 이다. 이 조각은 항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등대의 역할도 한다. 이 조각 기단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조각되어 있다.

자유의 여인(Liberty Lady)은 말한다

" 당신의 지치고 가난함을 내게 맡기십시오 가련한 당신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Give me your tired, your poor, Your huddlec Masses yearning to breath bear.")

이 조각품의 작가 후레디릭 어거스트 바톨디 (불란서 인, Frederic-Auguste Bartholdi) 는 이 조각에서 "자유(Liberty)"를 표현하기 원하였다. 조각의 한 부분에 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 - 즉 "세상을 밝히는 자유" 라고 조각한 것도 작가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조각의 형태는 조각가의 어머니를 모델로 하여 아름다운 여인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조각가의 뜻과 조각된 시의 원문 등을 종합하면, 이 조각의 전체적인 의미는 "자유의 여인 (Liberty Lady)" 이라고 번역하게 된다.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유부인"이라고도 번역하게 된다. 한국식 이름으로 "자유의 여신상" 이라고 하여 "신"으로 이름한 것은 작품의 본래의 뜻과는 다르다. 작가는 여인을 나타내었으며 결코 여신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한국식의 "여신" 적인 개념은 무엇보다도 유일신의 기독교 이론에 부합되지 못한다. 자유의 여인이란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은 여인이라는 뜻이며, 그래야만 많은 사람에게 자유와 희망을 준다는 뜻이 포함된다. 만약 조각의 여인이 정숙한 유부녀라면 이 조각을 보고 사랑의 마음을 품은 남자들은 모두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음양의 이론으로 보면 남성 형태의 뉴욕 땅 전면에 서 있는 자유의 여인상은 뉴욕의 땅을 흥분시킨다. 아름다운 여성이 남성 전면에 항상 있으면 남성에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본능이다. 자유여인 (Liberty Lady)은 뉴욕의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 있다. 이에 자극된 뉴욕 남성의 노고는 뉴욕의 경제와 문화에 큰 발전를 갖고오게 하였다. 결국 뉴욕에 사는 남성들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여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땀흘리며 일하게 되었다. 자유의 여인상은 남성 성기 형태의 뉴욕 땅에 음양이 잘 맞는 조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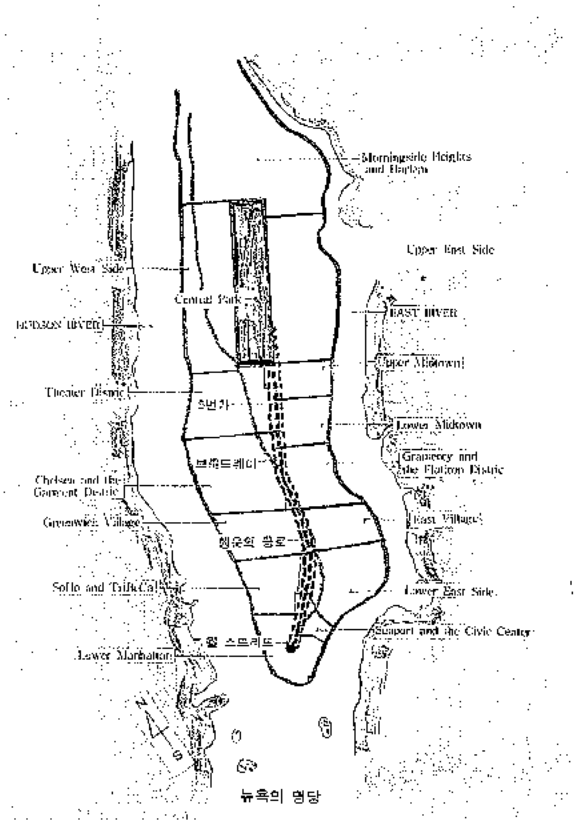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9) 참관기(2)

After Visiting The 9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술토론회 / 이필훈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교육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 이인호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대회 ① / 김홍일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대회 ② / 김형우 (동국대 건축공학과 4년)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술토론회

Programme Day 1 (9월 7일)

Session 제목 : Asia : World Trends
Keynote Speaker : Sir Michael Hopkins / United Kingdom, Cecilia oh / Malaysia, Tay Kheng Soon / Syngapore

Malaysia 건축가이며 ACA-9의 Convenor인 David Teh의 사회로 Session은 시작되었다.

세션의 주제는 '아시아 건축' 이었다. 작년 ARCASIA의 주제가 '기술과 전통' 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역성을 좀더 강화한 주제였다. 주지하다시피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똑같이 IMF의 상황을 겪었고 IMF의 권고 사항을 거부하고 자국의 방식으로 IMF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국가이다. 영국의 Hopkins경을 제외한 말레이시아의 Cecilia oh와 Tay Kheng Soon은 ASIA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할 건축의 Globalisation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 이라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한국의 국수주의적 세계관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논의 역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공통적, 일반적 접근보다는 자국우선 주의와 '우리식 해법' 을 주장했다. 어떤 점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려웠고 ASIA 국가들의 모임을 통해 공통점을 추출해 내자는 노력보다는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내세우며 자랑하려는 국가주의적 입장이 앞서 있는 것으로 읽혀져서 'Globalisation' 이라는 단어가 계속 어색하다는 느낌이었다.

Programme Day 2 (9월 8일 Am 9시)

Ken Yeang의 Session 제목 : Trends In Design (각국의 지난 10년간 설계 경향)

발표자 : 인도 / Vinary Parelkar, 한국 / 이필훈, 필리핀 / Francisco T. Manosa, 중국 / Tang Hua, 싱가폴 / Richard K F Ho, 태국 / Vimolsiddhi Horayangkura, 홍콩 / Anthony H H Nge

7개국의 발표자가 최근 10년 동안 자국의 설계 경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부분 자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특수성을 피력하고 이에 따른 건축적 해법을 준비해온 Slide와 함께 발표했다.

인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건축을 근간으로 하는 독특한 형태의 현대건축물이 주류를 이루었고 한국은 전통이란 화두에서 조금 자유스러워지고 다양해진 형태들을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연계시켜 발표했다. 싱가폴은 과밀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제시했고 홍콩은 홍콩전체의 미래적 Master Plain을 발표했다. 중국은 70~80년대 한국의 건축적 상황과 유사한, '전통과 현대사이에서 우왕자왕하는 건물들을 '전통의 계승'이란 표현으로 발표했으며 필리핀은 열대지방의 지역성에 맞는 건물과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현대건축물을 소개했으며 태국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시상된 건축물을 배경으로 어떻게 Globalisation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결국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각 나라별로 자신들의 identity를 확립하려는 노력들이며 그 노력은 집단적 identity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동일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는 Globalisation과는 그 방향이 다른 것이었다. Asia의 건축은 아직 형태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형태적 아름다움의 뿌리는 각국의 '전통적 형태'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Globalisation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씨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정치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유럽 같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아직 많은 면에서 성숙도가 떨어져 보여 안타까웠다.

Programme Day 3 (9월 9일)

Session 제목 : Beyond The State - 현실 또는 상황을 넘어

Keynote Speaker : Hong Kong / Rocco Yim, U.K. / Mark Goulthrope, Korea / 류춘수, 일본 / Tetsuo Furuichi, 오스트레일리아 / Gabriel Pool, U.K 말레이지아 / C J Lim

각 작가별로 자신의 건축관과 대표작을 발표하는 Session으로 학생을 포함한 많은 청중이 참가하여 한국에서 몇몇의 관계자만 참석했던 Session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홍콩의 Rocco Yim : 대형 Project에서 소홀하기 쉬운 틈새공간 만들기, 휴먼스케일화된 공간창조, 전통적 형태가 아닌 전통적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창조를 주제로한 발표를 했다.

영국의 Mark Goulthrope : Computer가 만들어내는 선형, 곡면 등을 이용하여 이제껏 만들 수 없었던 3차원 곡선의 형태, 공간 창조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매우 신선한 건축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전체에 인간과 Context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형태적 조작만이 있다는 질문과 비평이 따랐다.

한국의 류춘수 : 전통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전통적 형태를 유추해서 만든 건물을 현대적 기술로 발전시킨 예들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암리에 의도하고 있는 방향과 유사해서인지 특별한 질문은 없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심도 깊은 발표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일본의 Tetsuo Furuichi : 환경친화적 재료의 사용, 햇빛과 바람의 수용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ecology적 측면이 고려된 Project들을 소개했는데 건축에 대한 Asia적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추세에 동조해서 한 발 앞서 나가는 일본의 건축적 일면을 볼 수 있었다.

호주의 Gabriel Pool : 호주에서 주택만을 전문으로 설계한 Gabriel은 경사지에 토목공사를 거의 하지 않고 집을 지을수 있는 구법을 근간으로한 자사의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는데 매우 가볍고, 경제적이며 주변환경과 잘 조화된 건물들이었다. 싱가폴의 건축가인 Richard는 이런 건축적 방법이 싱가폴 같은 고밀도 주거에서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Gabriel은 자신의 건축

은 세계적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이라는 답으로 깊은 논의를 비껴갔다.

영국. 말레이시아의 C J Lim : 영국에서의 건축수업을 바탕으로 AA스쿨을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있는 젊은 건축가 C J Lim의 발표는 지어져 있는 집이 아닌 Paper Architectural Style의 Presentation이었는데 현실적인 건축적 접근이기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본 미래건축이었고 건축가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는 너무 편협한 AA School적인 접근방법이었으며 이로인해 많은 공격적 질문을 받았다.

Tradition, Identity, Sustainability, Ecology, globalisation, 위와 같은 단어들이 이번 Session의 주제어처럼 다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하나의 용광로 속에 다 용해될 수 있는지 혹은 용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조차 모색되지 않았다. 건축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 - Globalisation이라는 주제아래 Session을 계속했지만 오히려 지역, 역사적 특성에 따른 고유의 건축적 전통에 관한 논의가 부각되는 Session이었다.

Session을 참가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내용적 측면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형식적 측면이었다. 학생, 교수, 건축사가 일체화되어 적극적으로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건축사협회의 임원들은 모두 자국에서 존경받는 건축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록 한국보다 다른 부분에서는 후진국일지 모르는 아시아권의 많은 나라들이 건축에서만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의 문화,사회적 상황으로만 돌릴 수 없음은 그간의 건축사로서의 사회 및 단체에 대한 개인적 참여의식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필훈 /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교육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장소 : 말레이지아, Kuala Lumpur, Shangrila Hotel
일시 : 2000. 09. 05 ~ 2000. 09. 06
Chairman : Prof. Dato' Parid Wardi bin Sudin, 말레이시아, PAM 협회장

2000년 9월 5일과 9월 6일 양일간 ARCACIA 교육위원회 Meeting과 Workshop이 말레이시아 쿠마라룸풀 샹그리아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Council Meeting에서 채택된 교육관련의제를 다룬 이번 교육위원회 Meeting은 WTO 체제하의 Service시장 개방에 따라 UIA 교육 인증기준에 대비하고 있는 한국의 건축 교육실태를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시아 각국의 건축관련협회들은 다국간 Service 시장개방에 의한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응함과 동시에 범아시아권내에서도 각국간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석자간에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틀간에 토의되었던 회의 의제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주제

1) 개회사
2) Country Reports 제출
3) Proposal for the setting up of CODHASIA
4) ARCASIA College of Architecture

ACAE WORKSHOP

1) Election of a new Chairman
2) Studio Teaching Methods in Schools of Architecture
3) ARCASIA College of Architecture
4) CODHASIA

참석국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중국, 마카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상 13개국, Observer : 호주

ACAE MEETING

Tue. 5. Sept. 2000 오후 02:00 ~ 05:30

1.0 Introduction , Welcome by Chairman

1) 의장의 인사말과 Agenda, Workshop에 대하여 설명

2) 신임 Chairman 및 Deputy Chairman 두 명을 선출하기로 함.

2.0 Country Reports 제출

1)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이상 5개국

2) 각국보고서 (별첨 : 원본)

3.0 Proposal for the setting up of CODHASIA

1) 필리핀은 CODHASIA 설립에 관한 제안서 제출 (별첨 : 복사본)

2) CODHASIA 제안은 WORKSHOP에서 토론하기로 함

3) ARCASIA College of Architecture 및 CODHASIA 활성화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구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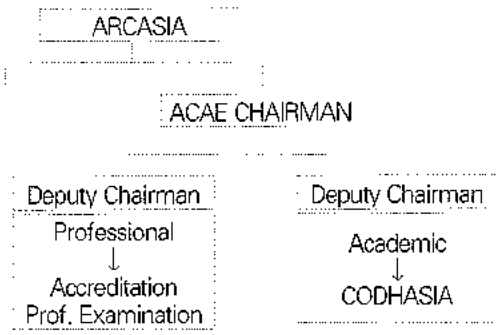

4.0 ARCASIA College of Architecture

1) 위원장의 Architecture School 설립의 문제점 및 새로운 제안

2) 태국과 인도가 자국 내에 학교설립 유치를 위한 제안서 제출

3) 학교설립에 따른 재정적 문제점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비충당, 교수들의 확보의 어려움 (Wardi)

4) 교과과정의 범위는 학부, 학부 + 대학원, 대학원 등의 형태가 추진될 수 있으나 학부 또는 학부 + 대학원 과정은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각국의 특색이 있으므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으며 기존 대학들과 차별 또는 형평성을 고려하면 Research Institute가 바람직하겠다. (Wardi)

5) Post - Graduate Program을 위한 Institute가 좋겠고 Research Program을 활성화하고 국가간 networking을 통한 교육으로 재정적 문제와 지역적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설립국가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다. 학과정은 다양한 Program을 채택하고 이 Program은 ARCASIA 전체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싱가포르)

6) 교과과정이 중요하므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이 교과 과정은 ARCASIA 국가들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인도)

7) Asian Context 및 Paradigm에 적합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 학술적인 과정과 전문과정(Academic / Professional degree)을 제안. (인도네시아)

8) 기부금이 학교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도)

9) International 또는 Global Standards의 기준이 무엇인가 (필리핀)

10) 학부의 교과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 (교양과목, 선택과목등) 예를들어, 몽고 학생이 타국에서 교육 받는다면 몽고의 문화, 환경, 건축재료, 기후가 다르므로 학부에서의 교육이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교과과정을 배제한다. (Wardi)

11) 미국의 SAIAC, 영국의 AA School과 같은 작은 규모의 학교형태 제안, 계속 교육제도 제안 (일본)

12) 건축학교는 학점 취득 및 인증이 중요하며, 원활한 학점취득을 위해서는 Program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교과정 선택이 용이하고 특히 다양한 Design Course의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13) 기존 대학내에 특별과정으로 Post-graduate program 과정을 두어 기본적인 Course를 마친 학생들에게 연구활동 자격을 부여하고 연구 활동후에 Degree를 수여 하는안 제의

14) ARCASIA는 학교설립 및 유지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없다. 학교 설립국가의 규정 및 법절차에 의한 교과과정이 된다면 ARCASIA는 학위를 인정할 수 있다. (Wardi)

15) 한국학부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학부형

태의 건축학교 참여는 문제가 있다. Post-graduate program의 Research 위주의 Institute가 설립되면 연구활동으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 한국의 학부제와도 충돌이 없을 것 같다 (한국)

16) 각국 대학의 Research 현황

① 일본 - Practice 보다는 Research 가 많다

② 한국 - 한국도 일본과 같이 Practice 보다는 Research가 많으며 Research가 기술분야(구조, 환경, 도시등)에 편중되어 있다.

③ 중국 · 태국 - 국가재원에 의한 Research 가 많다.

④ 인도 - 에너지, 주택문제의 Research가 활성화되어 있다.

⑤ 기타 국가들 - 전반적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Research 활동이 많다.

Workshop

Wed. 6. Sept. 2000 오전 09:00 ~ 오후 01:00

1.0 Election of a new Chairman

1) 각국의 추천에 의하여 후보들이 등록되고 다수결로 위원장을 선출

2) 새로운 조직표에 의하여 Chairman 밑에 Academic & Professional Deputy Chairman 두 명을 선출

• Chairman : Yolanda D.Reyes, FUAP University of Santo Tomas 학장

• Deputy Chairman (Professional) : George Kunihiro, JIA Kokushikan University 조교수

• Deputy Chairman (Acadimic) : Dr. Milton Tan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Workshop은 3개 주제에 의하여 각국 위원회 참석자들을 3개의 그룹(7~8명)으로 나누어 토론을 한 후 교육위원회 전체가 다시 모여 주제들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토론회는 아이디어 제안, 정보 및 각 주제들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도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측에서는 각주제그룹에 이필훈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이인호 (주)이래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성중 (주)일건건축사사무소등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2.0 Studio Teaching Methods in School of Architecture

1) Studio 교육이 Visual Design과 User Oriented Design중 어느 부분에 치중하는가?

2) Studio에서의 Evaluation 방법 / Identity란 무엇인가?

3) Studio 학생이 많을 때의 교육방법, Group 교육과 One to One 교육의 문제점

4) Studio 교육은 현장방문 또는 실습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5) 문화, 사회, 철학, 정치와의 관계

6) Studio 교육방법론에 있어서 Project Base 또는 Problem Base

7) Social Science인가 Art Object 인가

8) Studio Design 교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 (Freshman, Junior...)

9) Skill, Theory, Practical 교육의 병행 / Project Issue의 이해

10) Studio Design 교육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철학적 근거

11) 심미안적 / 도덕적 교육 필요

3.0 ARCASIA College of Architecture

1) 태국과 인도 건축사협회에서 제안한 건축학교 설립조건을 무시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다.

2) 건축학교 설립의 확고한 취지 및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3) 학교 설립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 학생들이 충당할 학비마련의 어려움

4) 특정국가에 설립시 발생되는 학생, 교수 교류와 교과정 인정, 아시아 각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역사, 문화, 종교, 지형, 기후등)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 방안

5) 학교의 규모 및 교과과정 (학부, 대학원 등) Research 과정을 주요 교과과정으로 제안

6) 졸업생들에게 부여될 자격, 학위에 대한 인증

7) 참여 학생들 및 교수들의 자격 (각국의 학부제와 교과과정이 다를 경우)

8) Jamboree 대회와의 연계

9) 식당 메뉴와 같은 다양한 Curriculum으

로 각 나라의 학제와 일치하는 Program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4.0 CODHASIA (Conference of Deans and Heads of Architecture School in Asia)

1) 필리핀 건축사 협회에서 1994년 마닐라에서 제의한 아시아 건축대학장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2) 우선 Dean 또는 Head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토론한 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자국의 학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Dean 또는 Head의 자격에 융통성이 있어야겠다고 제안함.

3) Representative 자격요건

① Dean 또는 Head는 각 건축대학 또는 건축과의 대표이어야 한다.

② Registered Architect / Design Professor

③ Head of Institution who are in Architecture

④ Architect, Member of Institute

4) 한국은 건축과 Director가 Design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주로 젊은 교수가 Director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재량권이 취약하여 Design 교수라 하더라도 대다수가 KIRA의 Member가 아닌 현실을 설명하였다.

5) 한국과 일본의 학제사정을 감안할 때 각 대학의 Design 교수를 대표할 사람이면 가능함

6) Convenor는 Host Country가 맡는다.

7) 교육위원회내의 Academic Chairman은 CODHASIA Chairman 이 될 수 있다.

8) 2001년 Singapore Forum중에 제1회 CODHASIA Working Group Meeting을 할 것이며 각국은 대표 1명씩을 보낼 것을 제안

9) Working Group Meeting을 대비하여 Steering Meeting을 올해 안에 열 것을 제안하고 이때 Final Document를 작성하기로 함.

10) 인도대표가 2000년 12월 말에 뉴델리에서 열리는 자국 학생 및 교수 Jamboree 대회에 운영위원회를 유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11) 각국 대표들은 인도가 운영위원회 Host Country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새로 선출된 Yolanda D. Reyes가 공식적인 Letter를 보내기로 하였음.

후기

ARCASIA 건축대학설립문제는 재정적 한계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와 경제적 격차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각국 협회간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정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Host Country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 형태의 학교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어떤 형태의 ARCASIA 건축학교가 설립되든 한국이 이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어사용교육이 가능한 System을 갖추어야 하고, UIA교육인증기준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교육 System에도 통용될 수 있는 교육제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Codhasia 위원회 참여에도 현 우리의 교육제도내에서는 변칙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참석자 자격요건이 건축대학장 또는 건축과의 Head로서 건축설계 실무에 참여하는 Design 교수로 되어있다. 한국의 대학들은 학위위주의 교수임용조건과 교수들의 실무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Codhasia 참석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미흡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현재 3개 단체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은 건축설계분야 주도의 통합된 단체로 재탄생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통감하며 현실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3 단체 상호간 긴밀한 학구적 협력이 요구된다. 전면적인 설계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 우리 건축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세계 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권 내에서조차도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 (이인호 /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대회 ①

제 9차 아시아건축사 대회가 MALAYSIA Kualar Lumpur에서 열리는 동안 약 30km 떨어진 샤 알람 (Shah Alam) 이란 소도시에 위치한 마라 공과대학 (Universiti Teknology MARA, 이하 UTM)에서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동안 ARCASIA 16개 회원국에서 참여한 400여 학생들의 잔치가 벌어졌다. 이번 학생대회(STUDENTS JAM-BOREE)의 주제는 "AKAR UMBI"라는 말레이어로 "근원", "뿌리",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21세기 지구 공동체로서 세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다른 문화

의 조화와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ARCASIA 회원국에서 약 150명, 주체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약 250명으로 모두 400 여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형우, 이성철 학생을 대표로 선발하여 국제위원인 필자와 함께 3인이 참석을 하였다.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가 참여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김형우군의 작품이 150여 참가작품에서 2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 준비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나 외국학생의 공항 마중부터 학생들의 장소이동, 연회, 파티 등의 모든 행사의 진행이 철저하게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져 학생잔치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사였다.

9월 5일 : 비행기가 9시간이나 늦게 출발하여 5일 새벽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을 하였는데 주최국 학생 3명이 우리를 샤 알람의 숙소로 데려가기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숙소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리조트 호텔로 거실과 3개의 방이 있는 유니트에 2명의 일본학생, 1명의 인도학생과 함께 우리 3명이 합류를 했다. 오전에 참가자 등록을 위해 학교에 도착을 하니 환영의 의식으로 말레이시아 전통 나막신으로 갈아신은 다음 꽃잎을 띄운 물을 발에 끼얹어 주었다. 이는 몸을 깨끗이 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하고 행사기간 내내 건강과 행운을 빌어주는 의식이라 한다. 각국의 학생들이 계속 도착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전통놀이에 참여하기도하고 학교를 구경하며 보냈다.

오후에는 챠코라마(Chacorama)라는 행사가 있어 참여를 했다. 챠코라마는 음악을 연주 하면 학생들이 이 연주를 들으며 그느낌을 목탄으로 표현하는 이벤트였다. 그림을 다 그린후에는 음악에 맞추어 춤도추고 그곳의 민속악기도 연주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저녁에는 공식 개막행사(Opening Cere-mony)에 참가를 했다. 이 행사에는 ARCASIA 에 참가한 각국 건축사들이 참가했고, 축하 연설과 강연 그리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며 만찬을 했다.

9월 6일 : 아침에 학교에 모여 편성된 조를 확인하여 각조의 work-shop에 참여를 했다. 주최측에서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work-shop 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여러나라 학생과 말레이시아 학생을 골고루 섞어 한조가 약 80명 정도가 되게 5개 조로 편성을 해놓았다. 조에 따라 work-shop의 내용과 건축방문의 순서가 달랐다. 김형우 군이 속한 C조의 경우 강연을 듣고 주제별 토론을 하였고, E조의 경우 연극에 대한 강연후 조별로 즉석극을 만들어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오후에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이슬람사원 등의 건축물을 조별로 방문하였다. 저녁에는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애고 친해진다는 의미의 "Ice Breaking Night" 파티에 참여했다. 공대의 건축과 건물은 "ㅁ" 자건물 두채를 서로 엇갈려 이은형태로 두 개의 중정이 있고, 그중 하나는 행사를 위한 반원형 극장으로 만들어 놨다. 파티는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전통혼례식을 재현하고 각국의 학생들이 하객이 되어 신랑 신부에게 돌아가며 축하를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사이사이 자연스레 축하 노래와 음악 연주,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9월 7일 : 오전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ARCASIA 본회의가 열리는 Kualar lumpur Shangri-La 호텔로 이동을 하여 개막식에 참여를 하였다. 개막식 후에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건설에 참여한 세계 최대높이의 KLCC 타워를 비롯하여 시내관광을 하였다. 저녁에는 본회의 Frendship Night 에 참여를 하여 한국의 건축사들과 같이 여흥을 즐기고 다시 KLCC 타워의 야경을 구경하였다.

9월 8일 : 이슬람 사원 및 말레이시아 정부 홍보관이 있는 Putrajaya지역을 방문하였다. 이슬람 사원은 복장에 대한 규제가 심하였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장할 수 없었다. 이 곳의 사원은 호수옆에 새로 지어진 사원으로 약간의 위락시설도 포함하고있다. 정부 홍보관에서는 건축과 학생들이 그곳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어 학생들에게 환영 받았다. 특히 이날은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중 유일하게 비가 온 날이었는데, 그곳 학생들 말로는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면 상당한 양의 비가 온다고 한다. 저녁에는 각국문화 홍보의 밤으로 참가한 학생들이 준비해 온 공연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국가별로 째즈 댄스를 준비해 온 팀, 전통노래를 준비한 팀, 연극을 준비해 온 팀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사전 정보가 없었고 인원수가 부족했던 관계로 그저 관람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9월 9일 : 오전에는 본회의에 유명건축가들의 강연이 있었고, 학생공모전 발표 및 시상이 있었기 때

문에 모두 Kualar Lumpur 의 Shangri-La 호텔로 이동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던 수상작 발표에서 싱가폴학생이 대상을 차지했고, 한국의 김형우군이 아쉽게도 2등에 해당하는 Honorable mention을 받았다. 내용이 좋아 은근히 대상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했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아마도 ARCASIA 회원국속의 한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 같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외국 학생들위 위주로 쿠알라룸프 시내 관광에 나섰다. 미처 친구들에게 줄 기념품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 말레이시아에서 뭔가 기념이 될만한 것을 남기려는 학생들 모두 낯선 물건이 가득한 시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저녁에는 행사의 마지막 파티가 있었는데, 서울로가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며 서울로 출발하였다.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은근한 우월감을 갖고 참석을 했던 우리는 건축에서는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과정이 어떻든 이미 그들은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고 건축사를 길러내는 전문교육제도가 확립된 상태였다.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행사 진행 과정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학생들만의 조직을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그들 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참가인원이 부족하고 사전 정보도없는 상태서 그래도 김형우군의 작품이 상을 받아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했다. 우리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외국의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국제감각을 익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홍일 /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대회 ②

벌써 9시간째이다. 낯선 곳으로 날아간다는 설레임도 계속되는 출발시간 연착에 사라져버리고, 이젠 그저 졸린 눈으로 멍하니 시계탑만 바라보고 있다. 비행으로 5시간, 서울과의 시간차는 30분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먼 곳을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단 생각이 든다.

새벽 3시, 쿠알라룸프 국제공항, 엊그제부터 미리 준비해두었던 '와아!' 하는 낯선 풍경에 대한 감탄사는 모두 잠기고 그저 차분한 시선으로 창 밖을 지나가는 야자수들을 바라보고 있다.

예정보다 훨씬 늦게 일어난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아침에서야 얼굴을 보게된 룸메이트들과 다소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나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마음을 졸이며 건성으로 먹었던 아침이 무색하도록 버스는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이것이 Malaysian Time 줄을 그때는 몰랐었다. 미리 알았으면 5박 6일내내 마음 편히 지냈을 텐데)

버스로 도착한 곳은 이번 학생 잼보리에 주행사장으로 쓰일 UiTM(University Technology MARA)의 야외 극장이었다. 들어가는 학생들의 신발을 벗기고 그들의 전통 나막신을 신긴다. 그 위에 꽃잎을 띄운 물을 붓으며 무엇인가 중얼거리는데, 그 순간 '아 이곳이 정말 말레이시아구나!' 비로소 낯설음과 새로움에 대한 인식이 활동을 시작했다. 스피커에서는 연신 흥겨운 그들의 가요가 흘러나오고 하나 둘씩 모여드는 학생들의 이야기 소리, 행사 진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UiTM의 학생들..., 그들의 배경이 되는 중정의 넉넉함이 여유롭다. 분위기 탓일까? 어느새 무리의 일부가 되어 말레이시아 전통 놀이를 따라하고 있다. 마치 오래 사귀었던 친구들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차코라마' 라 했던가? 음악에 맞춰 그 느낌을 도화지에 목탄으로 표현하는 의식(?)은 오전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림을 그리며 리듬에 몸을 흔드는 사람, 그림은 뒷전으로 하고 춤추기에 바쁜 친구, 이제는 익숙하다 못해 서로 얼싸안고 흥겹게 행사장을 도는 녀석들.

'ARCASIA STUDENTS JAMBOREE' 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에 대한 선입관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정숙한 복장으로 강의를 듣고 ,주제 발표를 하고, 시상식이나 할 것이란 생각했었는데, 은근히 걱정되어 영어로 발표하는 연습까지 해 보았었는데, 그런 발표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물론 강의나 발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강의와 발표보다는 조작업을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해가던 시간들이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던 카즈토미, 인도네시아는 1000여 개의 언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치카, 건축 대학이 단 한 곳밖에 없는 싱가폴 이지만 그래도 수준은 뛰어나다고 말하던 마니와 토란스, 그리고 시종일관 인도 귀족 같이 팔장 끼고 앉아 주위사람들을 머뭇거리게 하던 댑…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이고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 같은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것일까? 서로 얼굴 바로 보는 것도 어색하던 이들이 '르 꼬르뷔제', '루이스 칸'이란 말이 나오자 다들 눈이 반짝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이란!

학생 잼버리는 일종의 건축과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올림픽 같았다. 각국의 선수들이 와서 각자의 기량을 겨루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각국의 스포츠인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이 올림픽의 목적이듯, 학생 잼보리도 건축과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고 공모전을 통해 경쟁도 하지만 정작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의미부여 했던 것은 학생간의 친목 도모였다. 다시 말해 아시아 건축과 학생끼리의 M.T라고나 할까?

이 곳에 오기 전 내 나름대로 한국은 아시아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다. 분명 한국의 경제 수준은 아시아의 수위권 이지만 그에 비해 아시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나 행사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행사에서도 사전에 정보가 부족했던 터라 일부 행사에 참가할 수 없었고, 그나마 16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 참여해 '과연 한국이 언론 매체의 선전처럼 '아시아의 핵심' 일까?' 의심도 들었다.

행사 3일째, 'ACA 9' 공식 개막식을 마치고 쿠알라룸프 시내 구경에 나섰다. 야자수로 된 가로수와 한국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새롭지만 역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단연 쭉쭉 뻗은 고층 건물들. 전공은 속일 수가 없는가 보다. 40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두 목을 젖히고 건물을 바라보는 풍경이란... 낯선 행동에 놀라 같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두리번 거리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 더 우습다.

'야 참 많다.' 어렴풋이 잡지에서 읽은 기사가 기억이 났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훌륭한 도시 계획과 건물이 말레이시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명 건축가들을 초빙하는데 적극적이란다. 그래서인지 주위의 건물 하나 하나 예사로운 것이 없다.

'이런 곳에서 건축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좋겠다.' 막연한 궁금증에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하나같이 "글쎄?" 칭찬에 인색하고 퉁명스럽기는 어느 나라 건축과 학생이나 만찬가지인 듯하다.

뭐니뭐니해도 쿠알라룸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쿠알라룸프 센츄럴 타워가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높고, 두 개의 쌍둥이 건물 가운데 하나는 한국 건설회사가 지었다는데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을까? 게다가 시내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데, 왠지 기대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했던 외장에, 뭐 그저 높은 건물이었다. 그러나 밤에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다 보았을 때 남은 인상이란. 몇 개의 빛으로 꾸며진 외관이 마치 날아갈 듯 가볍게 하늘로 솟아 있다. 낮과 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지나가고, 아쉬운 작별만 남았다. 행사 일정보다 하루 먼저 떠나는 우리를 위해 환송회(?)까지 벌여 주었던 친구들, 낯선 외국인들이 어느덧 헤어지기 싫은 친구가 되었다. 서로에게 연락처를 적어주며, 애써 배운 말레이시아 인사 몇 가지를 잊지 않으려고 연신 되풀이하며 공항에 닿았다.

'이제 끝이네!' 습도 높은 무더운 기후라 줄곧 감기에 몸살까지, 고된 5일이었지만 그래도 아쉬움 섞인 큰 숨 한번 쉬어본다. 옆에 앉은 성철이도 "야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며 야단이지만 녀석의 속도 그리 편하지 않겠지. 그래도 세상이 변해(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집에 앉아서도 외국 친구들과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위로를 느끼며 밀렸던 잠을 청해본다.

참 언젠가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 "넌 어째 말레이시아 애들한테 인기가 좋으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다. 그건 "How do you feel about Malaysia?" 말레이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아이들에게 난 "싸이야 찐따 말레이시아(저는 말레이시아를 사랑합니다.)" 하고 몰래 배워둔 말레이시아 말로 대답하였고, 의외라는 듯 막 웃으며 "싸이야 찐따 코리아 두까(나도 한국을 사랑합니다.)"하고 답해주었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김형우/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圖

협회소식 / 75
건축계소식 / 79
현상설계경기 / 83
해외잡지동향 / 88
도시계획법시행령 / 94
회원현황 / 10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8
뒷마루 / 110

협회소식 KIRA news

이의구회장, 일본 건축사회 연합회 방문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제43회 전국대회 초청받아

이의구 우리협회 회장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협회와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가 건축기술정보교류, 건축관련법령 및 제도협의, 건축사상호 관심사항 협의,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지난 1985년 3월 체결된 한·일건축사교류각서에 의해 매년 상호 방문 및 초청 등의 형식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올해는 일본건축사회연합회로부터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 문화홀에서 열린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제43회 전국대회에 초청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방문기간 중 27일 있었던 전국대회 때 이의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예로부터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특히 건축분야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은 양국의 건축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우리협회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는 양국의 선린우호관계에 힘입어 건축분야의 학술, 기술,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선도해 온 오랜 동반자"라고 말하고, "21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점차 가속도를 더하고 있는 건축분야의 국가간 협상에 있어서도 양단체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은 자국 건축사회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나아가 양국 건축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공동목표 달성과 아시아건축의 권익과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자"고 역설했다.

건축기술 및 정보교류과 상호관심사에 대한 간담회가 있은후 선물교환을 하는 양측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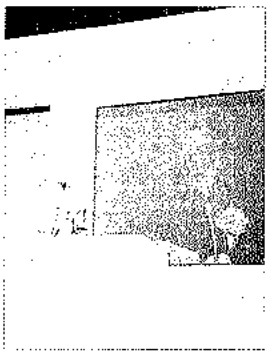
전국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이의구 회장

전국대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

우리협회, 건축사의『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적용 반대

선진외국은 건축설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 별도의 관련법으로 운영
시장개방에 따른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증에서 국내건축사 불이익 초래 우려

노동부와 교육부는 종전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폐지하고 모든 국가자격을 이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 '직업능력 표준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자격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지난 10월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변호사나 의사, 법무사 등 60여개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인정된다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관부처가 현행대로 개별법에 의거 관장토록 하면서, 건축사를 비롯한 117개 국가자격은 이 법에 통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리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건축설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사를 이법에 적용시키는 것은 정부가 건축문화의 주체인 건축사와 그 업무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이 법률(안)에서 건축사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선진 외국의 경우 건축사업무는 다른 자격과의 통용성이나 호환성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업무분야로 보아, 개인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건축관련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복합적으로 갖춘 건축작가이자 건축문화의 주체로 대우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건축사는 사회와 문화를 배경으로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예술가로서 의사,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사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인증방법도 지식만이 아닌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WTO는 건축사의 주업무인 건축설계분야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가간 자격을 상호인증토록하여 건축분야의 국제기구인 UIA(국제건축사연맹)를 통해『건축실무에 관한 전문성의 국제기준 권고에 관한 협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부대학을 중심으로 5년제 건축학과정을 도입하는 등 건축학을 건축공학에서 분리하여 건축계획과 디자인 위주의 건축교육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교육부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년제 건축대학의 설립에 따른 법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건축사자격면허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도 건축사자격을 건축계획 및 디자인 위주의 인증방식으로 전환하고 "건축사등록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자격제도를 갖추어 건축사의 국제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건축사를 학력제한이 없는 기술계 및 기능계에 통합관리 할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WTO 가입 국가들은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을 인식하여 각 국가별로 별도의 관련법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화예술적, 도시적 시각에서 건축물을 계획하고 그 형성과정을 총괄지휘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가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술 · 기능계와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화된 인정방법 및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노동부가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개선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사회

12회

우리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14일(화)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예산목간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업무용 컴퓨터 운영을 위한 S/W예산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00년도 일반회계(업무추진비→도서인쇄비)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일반관리비→유지관리비) 예산목간전용을 승인키로 의결함.)
- 제2호의안 : 2001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의 건
-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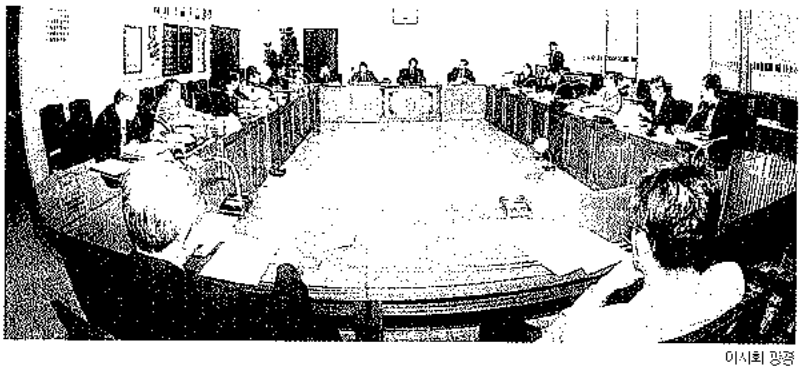

이사회 광경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전시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우리협회 아키텍트갤러리에서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전시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우리협회 아키텍트갤러리에서 있었다. 준공부문과 계획부문 수상작 총 39점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에는 이의구 우리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과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장, 장영수 건설총연합회회장 등 많은 내외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대상을 차지한 게스트하우스 등 본상이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우리협회에 1년간 상설 전시된다.

수상작은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도 볼 수 있다.

전시회 관람 광경

전시회 테이프컷팅 광경

회원 E-Mail계정 서비스 신청접수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협회에 등록한 정회원에 한하여 협회 인터넷을 통한 회원의 무료 E-Mail계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대략 1,500명정도이며, 사용가능공간은 각 계정당 잠정적으로 5MB입니다.

일정기간까지 접수완료 후 서버의 저장공간을 환산하여 각 계정에 맞는 용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Mail활용 방법 및 범위는 점차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며 많은 회원님들의 가입을 바랍니다. 현재 접수가능하며, 가입신청후 3일이내에 처리완료하여 신청회원에게 Mail로 가입완료 및 사용가능 사실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KIRA.OR.KR로 접속하신후 첫 번째 접속 화면상의 "E-Mail 계정신청" 란을 Click 하신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02-581-5711)에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 먼저 HTTP://WWW.KIRA.OR.KR로 접속합니다.

▷ 첫번째 화면에서 "E-Mail" 계정신청" 란을 선택합니다.

▷ 회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난 후 검색버튼을 선택합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귀하의 기본사항이 나타납니다.

▷ E-Mail ID 난에 원하시는 ID를 입력하시고 "E-Mail 신청" 버튼을 선택하시면 바로 접수 완료가 됩니다. 만약 지정하신 ID가 이미 사용중일 경우엔 다른 이름으로 다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 등 기타 위에 나열된 사항들이 실제의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각 시도건축사회에 연락하여 수정토록 협조 바랍니다.

▷ 신청을 완료하신후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02-581-5711~4)으로 문의 바랍니다.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 주최, 지난 11월 9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우리협회(회장 이의구)는 지난 11월 9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30층 비너스룸에서 스쿠다스 UIA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에서의 건축의 흐름과 정보교류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인간, 지구, 문화를 존중하는 창의성이라는 주제아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새천년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연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회의 의미와 건설환경의 국제적 위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스쿠다스 UIA회장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건축에 대한 국제정보교류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강길부 건교부차관, 우리협회 방문

건축관련 및 협회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교환

건설교통부 강길부차관이 지난 10월 26일 우리 협회를 방문하여 최근 협회 및 건축계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우리 협회는 최근 건축설계사무소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특히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적정 설계비 산정의 어려움과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른 저가 덤핑설계가 만연하고 있는 등 건축사사무소 경영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리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건축사수에 비해 설계물량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축물의 질적저하는 물론 자칫 건축설계업계의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전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건축법 개정안 제77조(벌칙)에서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벌칙기준이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무원 의제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은 건축사의 행정적인 권한이 미약하고, 또한 수수료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건축사의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법개정임을 건의하였다.

협회 아키텍트 갤러리에 전시중인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을 관람하고 있는 강길부차관

이러한 협회의 건의에 대해 강차관은 건교부에서도 다방면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관련제도는 정부의 규제완화나 개혁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여러가지 어려운 현 상황속에서도 이나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건축설계업계의 건의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건축사회 박홍우회원, 제12회 대전시문화상 수상

예술부분에서

우리협회 대전건축사회 소속 박홍우(협창건축사사무소)회원이 제12회 대전광역시 문화상 예술부분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9월 30일 대전 엑스포 아트홀에서 있은 제18회 한밭문화제 개막식 때 상을 받았다. 문화상을 수상한 박홍우회원은 건축사로서 33년간 활발한 작품활동과 22년간 충남대에서 강사로 후진양성에 진력하였으며,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시 초대회장으로 있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건축전(대전직할시 건축대전)을 창설해 지방건축전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또 그는 작품집을 비디오에 담아 각 대학 건축과에 배포해 지방 건축문화 활성화 등 지역문화예술 창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클래식기타 연주회

▷ **연주일시** : 2000년 12월 23일(토) 18:00~21:00
▷ **연주장소** : 대한건축사협회강당
▷ **참석대상**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및 가족, 애호가
▷ **연주곡목** : 클래식기타 독주 및 이중주, flute & guitar 이중주곡 등
▷ **연주자** : 김인환(독주, 건축사), 이후광(Flute, 건축사), 박종대(기타리스트)
▷ **주최 및 문의** : TAS건축사사무소(T:3675-2010)
▷ **후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가 일구어 놓은 제주의 새로운 명소 선린지 리조트

22년간 3만여평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제주의 새로운 명소로 가꾸어 가고 있는 회원이 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건축사사무소 신태양을 운영하는 양원영 회원이 그 주인공. 매년 틈틈히 심어놓은 각종 관상수들이 오늘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지금도 포크레인에 직접 올라가 테마 공원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을 가진 전원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한다. 지난 7월, 선린지 리조트 라는 간판을 달고 시작한 콘도형 숙박시설에도 Home Page (sunrinji.co.kr)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관광농원을 만드는 것도 제주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을 통하여도 드문일이라고 한다. 이미 4년전에 일부 분양한 전원주택 단지에는 몇몇 회원들이 전원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주)참존화장품에서도 수양관을 신축하여 개관한바가 있다. 우리 회원이 피땀흘러 만들어가는 이 농원을 우리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이용이 있었으면하는 바람이 있다. 양원영 회원은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 회원들이 한번쯤 방문하여 노후 설계를 해 보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주문이었다.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관(식당)과 콘도형 숙소가 있어 웬만한 단체행사도 가능한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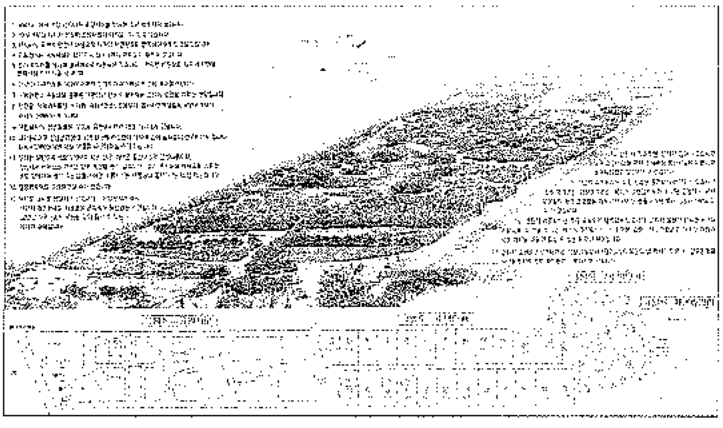

제2회 막구조 디자인 공모전 작품공모

11. 20. ~ 12. 22. 원서교부 및 접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 · 상 홈페이지에서 원서 Download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 · 상(대표 강철희)에서 주최하고, 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후원하는 제2회 막구조 디자인 공모전이 「스포츠시설에서의 막구조디자인(The Fabric Design in Sport Facilities)」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공모전은 현대에 막(Membrane)은 제5의 건축재료라고 일컬어질 만큼 외국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건축의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볼 수 있는 막구조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막구조에 대한 이해증진과 동시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개발 및 활용으로 한국 막구조 건축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된 건축공모전이다.

▷ 응모자격: 자격제한 없음. (개인 또는 3인 이하 공동출품 가능)
▷ 제출작품: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축척은 자유), 투시도(모형사진 가능),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면 및 설명문을 패널(가로90 x 세로 120cm) 1매에 자유로이 표현. A4용지 2매 내외의 국문 및 영문 작품설명서 제출
▷ 원서 교부 및 접수: 2000. 11.

20(월) ~ 12. 22(금)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 · 상 홈페이지에서 원서 Download

▷ 접수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 · 상 막공모전 진행사무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22-5 연안빌딩 2층 우편번호 150-051(우편 또는 FAX로 접수, 우편은 마감당일 소인 유효)

▷ 작품접수: 2001년 2월 20일 (화)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점 / 상장 및 상금 250만원
- 우수상 1점 /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장려상 3점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특선 5점, 입선 다수 / 상장

▷강연회: 2001년 2월 23일 (금)

주제 - "Membrane Structures : their Developments"

발표자 - Kazuo Ishii

▷심사위원: Kazuo Ishii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 공학박사, 막설계전문가)

David Wakefield (영국 TENSYS대표, 공학박사, 막설계전문가)

▷기술자문위원: 강철희 (건축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 · 상 대표)

▷문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 · 상 막공모전 진행사무처(담당 : 조기형) 전화 / 02-831-8631 팩스 / 02-832-9872 E-mail / iiia@chollian.net / Home Page : http://www.ideaimage.com

제5회 건축사진강좌 개최

2001년 1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청암 건축사진연구소(대표:임정의)에서는 제5회 건축사진강좌를 2001년 1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건축설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축사진 강좌를 개최한다. 12주간으로 진행될 이 강좌는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고건축촬영, 현대건축물촬영, 현상,인화작업까지 실제응용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임정의선생이 직접 강의하며 함께 실습지도한다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8시 30분
- 장소 : 청암 스튜디오-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9-7 (청화빌딩303호) < 뱅뱅사거리 논노빌딩옆 서측건물)
- 참가인원 : 12명
- 참가자격 : 사진의 기초지식이 있는분
- 참 가 비 : 30만원 (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 참가문의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 전화 (02) 598-6100
- 강의 내용

1주 - 건축을 보는 눈 (스라이드 강의)
2주 - 필요한 기자재 선택 (카메라, 렌즈, 필림의 선택)
3주 - 빛과 공간의 조화 (자연광과 인공광의 비교)
4주 -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타임,조리개,심도의 이용방법)
5주 - 현대건축물촬영실기-도시 (토요일오후 3시-오후7시)
6주 - 현대건축물의 촬영방법 (현대건축물 스라이드)
7주 - 모형촬영의 표현과 테크닉 I (단지모형과 단일모형촬영실기)
8주 - 모형촬영의 테크닉 II (모형재료에따른 촬영실습)
9주 - 고건축답사 사진기행 (토요일출발-일요일까지/1박2일)
10주 - 흑백현상 및 테크닉 (암실작업실습)
11주 - 인화방법 및 테크닉 (암실작업실습)
12주 - 작품제작 및 총평

2000년도 건축가 축제 및 대한민국 건축대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2000년도 건축가 축제 및 대한민국 건축대전이 오는 11월 24일(금)부터 12월 3일(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제19회 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해 초대작가 전시회, 2000년도 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제5회 건축사진전 수상작이 전시되며, 후원업체 홍보전이 함께 열린다.

특히 올해 건축대전은 일반공모전("이 시대 건축의 공공성")과 초대작가전("도시 정체성과 공동주거")이 모두 주제전으로 열리게 돼 초반부터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올해 건축대전 일반공모전은 총 2,327명의 원서 접수자 중 1,252명이 1차 작품을 제출했으며, 이 중 152점의 작품이 1차 합격통지를 받고 2차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1차 합격자들은 11월 21일(화) 정오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으로 2차 작품 패널과 모형을 접수해야 한다. 2차 응모작은 21, 22일 본심사와 23일 공개심사를 거쳐 24일 오전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건축가 축제 개막식은 11월 24일(금) 오후 2시, 건축대전 및 건축사진전 시상식은 12월 4일(월) 오후 3시에 개최된다. (문의: 02-744-8050)

제 5회 건축사진전 입상작 발표

최우수상에 김석환 회원의 "빛과 어둠"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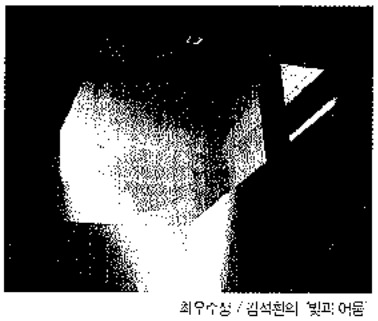

최우수상 / 김석환의 '빛과 어둠'

건축가협회 주최로 열린 제5회 건축사진전에서 우리 협회 김석환 회원이 출품한 "빛과 어둠"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올해 건축사진전에는 협회 회원을 비롯해 비회원, 학생, 건축인, 일반인 등 총 80여명, 111점이 응모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총 2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24일(금)부터 12월 4일(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리는 건축가 축제 기간 중 전시된다. 시상식은 12월 4일(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수상작 명단 및 심사평, 수상작은 건축가협회 홈페이지(http://webzine.kia.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2001 APA건축사진전

2001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건축사진에 관심있는 건축실무자들과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청암건축사진연구소에서 실시한 건축사진아카데미를 수료한 건축인들이 틈틈이 보고 느껴왔던 우리의 전통공간을 사진에 담아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빛과 공간의 조화를 주제로 36인의 건축인들의 눈으로 재조명하여 우리 전통공간의 멋을 보여주고자 한다. 오는 2001년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대학로 문화공간 2층에 있는 SK포토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문의: 02-598-6100

제9회 태양열 건축설계 공모전

11월 25일까지 우리협회 갤러리에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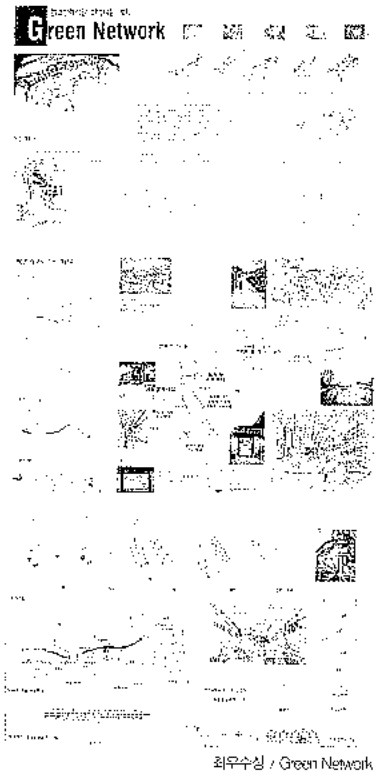

최우수상 / Green Network

한국태양에너지학회에서 주최한 제9회 태양열건축설계 공모전이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우리협회 아키텍트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주거와 생활환경시설에 자연에너지(태양열, 자연채광, 바람, 지열 등)와 자연 환경 친화적인 건축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함으로써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노인과 환경, 환경과 건축, 그리고 그 주변 전체의 상관관계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 실버타운을 주제로 열린 올 해 행사는 지난 11월 1일 작품을 마감한 결과 전국 55개 대학에서 266점의 작품이 최종 접수되어 11월 5일 이광노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가작 5점, 장려상 14점, 입선 87점을 선정하고, 11월 17일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수상은 Green Network를 출품한 연세대 이동원, 임수정학생이 차지했다.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전 개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에서

경기대학교 건축전문 대학원은 2000학년도 제2학기 건축전을 2000년 12월 6일(수) ~12월 9일(토)까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5개의 졸업스튜디오 및 8개의 디자인 스튜디오로 나뉘어 개최한다.

- ▶ Open Critique (12월 6,7일 오전 10시): 김승회, 캔민, 김준성, 조병수, 도창환, 김낙중, 정기용, 김영준
- ▶ 디자인스튜디오 튜터 : 천의영 · 송재호, 박흥서 · 안창모, 백문기, 김헌태, 김헌, 민선주, 황두진, James Hartford, 토마스한, 헬렌박 · 이강현, 이종건, 조택연, 이영범
- ▶ 문의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전화 : 02-390-5245,6 http://gsak.kyonggi.ac.kr

제2회 POAR가구디자인 공모전

12월 30일까지 접수

올해부터는 특정한 장소를 전제로 그 공간에 놓여질 가구디자인을 공개 경연에 부친다. 그 첫 대상지(site)는 20세기 한국현대건축의 최고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김수근의 원서동 공간사옥 카운터층의 세 곳으로 응모자는 세 곳 가운데 한 곳을 임의 선정하여 디자인안을 제출하면 된다.

- 공모주제어 : 공간사옥(김수근 作) 내 지정 장소에 놓여질 가구(현장답사 가능)
- 공모요강
  - 공모자격 : 디자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 참가제한 : 1인 1작에 한함
  - 본상 : 대상 1인, 금상 1인, 동상 1인 외 입선 다수
  - 응모일정 :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2000년 10월 9일(월) - 12월 30일(토)
- 참가신청 접수비 : 30,000원
- 작품제출 마감시한 / 2001년 1월 31일(수) 오후 5시까지(우편은 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제출요령
  - 제출조건 : 600×600㎜ 크기의 용지 2매 이내(분리 또는 조합 가능)에 표현하여 제출(패널작업은 절대 하지 말 것)
  - 도면표현 : 자유
  - 제작지침서 : A4용지 10매 이내에 워드로 작성하여 작품과 함께 제출할 것
  - 가구범주 : 테이블+의자(4 Piece내)
  - 재료선택 : 참가자 자유
- 신청접수 및 작품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7-7 청호빌딩 7층 (주)이석미디어 월간 건축인 POAR
- 기타

  신청접수시 직접 내사하지 않고, 우편, Fax, e-mail 등으로 가신청접수 하시고, 지정 은행계좌로 입금 완료하면 신청등록을 할 수 있다.
- 문의 : 월간 건축인 POAR 전화:02-519-6520 팩스:02-512-1372

근대건축물도 등록문화재로 지정

문화재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해 훼손 염려가 높았던 구한말 이래 건축물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은 내년 상반기 중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공사 중 문화재를 발굴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신간안내

건축의 바다

▷ 건축의 바다

전진삼(간향건축발전연구소 소장 / 월간 축인인 poar 편집인)씨가 기획하고 시공문화사가 제작을 맡은 4권의 책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선보였다. 이번 기획도서의 특징은 한 권의 책에 오직 한 작품만을 담는 「One House」개념의 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100권이 출판될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또한 건축사, 건축사진가, 건축비평가 3인이 각자의 역량을 한권의 책에 충실히 담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에 동시에 출간된 4권의 책들은 「가가불이」(건축가 이일훈+사진가 박영채), 「멀티박스 하우스」(건축가 김효만+사진가 조명환), 「임거당」(건축가 김효만+사진가 김용관), 「평심정」(건축가 우경국+사진가 염승훈) 등으로 각각의 책은 건축가 및 사진작가로 이루어진 공동 저자와 함께 한 사람씩의 비평가가 건축물의 해설을 맡고 있다. 문의 : 737-3930

도서출판 시공문화사 발행 / 96쪽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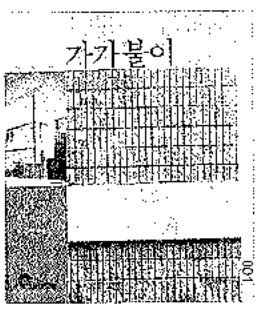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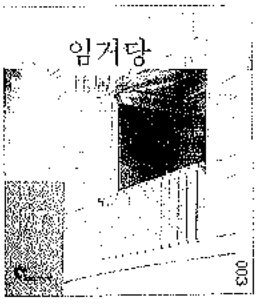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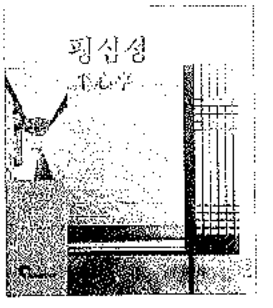

부산 가톨릭병원

Busan Catholic Hospital

부산 카톨릭병원 신축설계경기는 1951년 개원한 천주교 부산교구 하의 성분도병원이 남구 용호동으로 이전함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면적 6천㎡ 이상의 병원을 설계한 실적이 있는 사무소에 한해서 응모할 수 있는 제한자유공모로 진행되었다. 총14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이정덕 고려대 교수외 6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승 · 이해원)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지난 9월 25일 발표했다. 당선작 외에 우수작으로 (주)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김희수)안이, 가작으로 (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이규창)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5년경 완공될 예정이다.

▶ 당선작 / (주)삼우 종합건축사 사무소(박승 · 이해원)

대지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동 산85 -4,5
대지면적	21,000㎡
연면적	38,460.40㎡
건축면적	6,765.40㎡
건폐율	32.20%
용적률	137.20%
규모	지하 2층, 지상 12층
병상수	554병상
구조	지하층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층 - 철골 철근 콘크리트
설계참여	서상문, 이창덕, 박순희, 배성호, 김치현, 박혁수, 이철승, 김남희, 최현광, 서동현, 김상원

바다와 산이 있는 해안도시 부산의 동남쪽에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대지는 병원계획을 하기에 그다지 편안한 대지는 아니었다. 부산 지형의 특성상 평지가 많지 않은 실정을 이해한다면 경사가 급한 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 40m가 넘는 고저차, 도로에서의 접근, 대지에 있는 자연환경인 산책로, 약수터, 작은 운동시설, 녹지 등의 보존, 토목공사비의 절감, 이러한 조건들을 해결하여 설계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도 있었다. 배치계획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많은 토론이 오갔다. 기숙사, 수녀원, 사제관, 그리고 영안실, 병원본관동까지 급한 대지경사를 어떻게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많은 토론을 거쳐 배치안이 정해지기까지는 장래 증축방향과 5백병상을 수용하는 타워(주변 아파트 타워가 많은 부담이 되었다)의 위치와 형태, 축에 관한 것…. 그리고 좁은 진입로에서의 진입, 영안실의 위치, 사제관, 기숙사, 수녀원의 프라이버시 확보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병동부 형태에 관하여 수많은 스터디를 한 결과 후면에 산을 두고 있는 좋은 환경에서 굳이 중정을 두고 매스를 무겁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후면산과 환자 및 보호자의 동선을 연결하여 외부로의 접근을 꾀하였고(사색의 길) - 포디엄 부분과 어울리면서 전면에서는 판상형으로 느껴지고 좌우측면에서는 탑상형으로 느껴지는 향이 좋은 삼각형 병동으로 결정하였다. 병원의 부서별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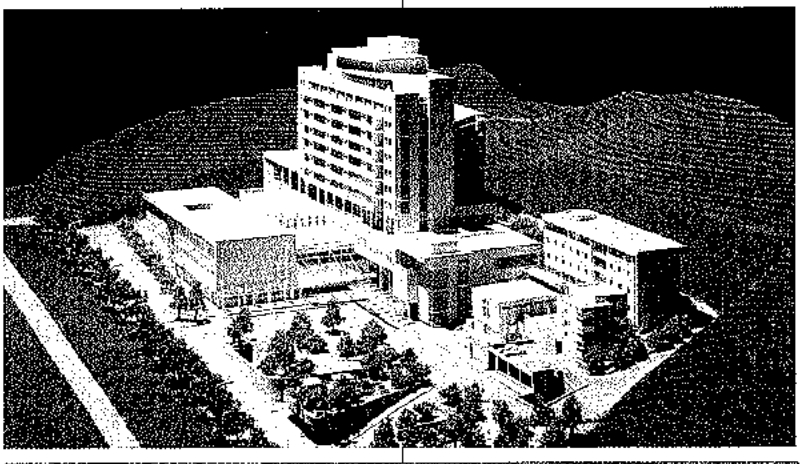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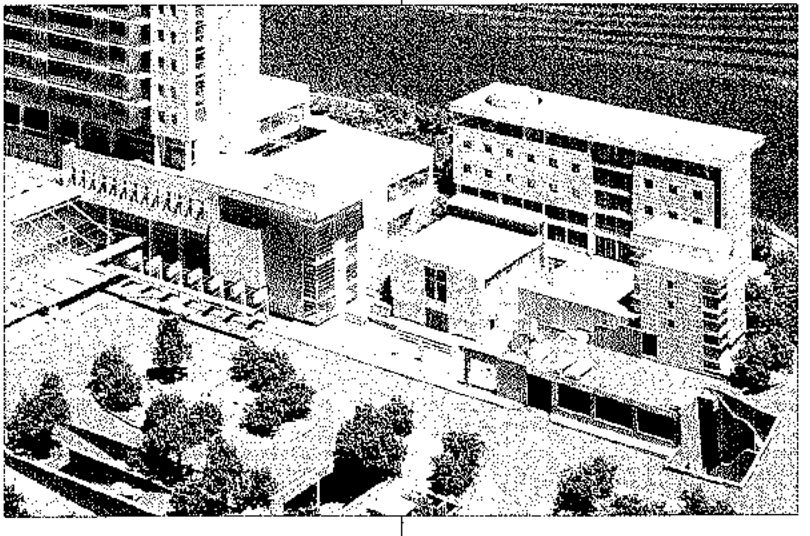

에 따라 매스를 분절시켜 매스의 변화를 꾀하였고, 외래부 또한 진료과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특성을 부여하여 중심화시켰다. 그리고 강당은 병원 내 활용 이외에도 부산지역의 의료학술세미나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강당 전용 출입구를 두었으며, 천창 등 빛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가톨릭에 부합되는 이미지와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안한 병원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입면은 초기안에서는 하이테크한 느낌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의 두 팔을 벌려 감싸안는 형태를 구성함으로써 진료와 선교(사회봉사)라는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초점을 맞추었다.

병동부는 거주공간의 따스함을 느끼도록 솔리드한 면으로, 저층부는 반거주공간으로 투명성을 강조하여 보이드하게 구성하였다. 외부공간은 선큰, 피로티, 테크 등 다양한 옥외공간의 어휘를 사용하여 재미있는 공간을 구성코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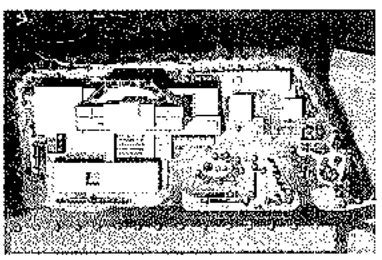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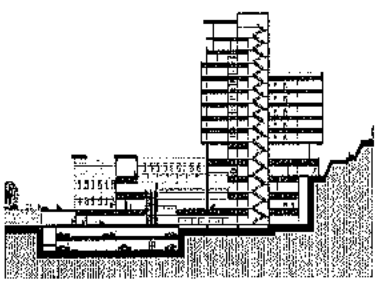

종단면도

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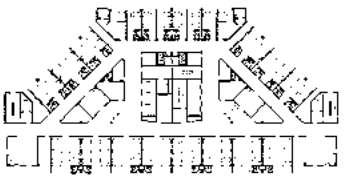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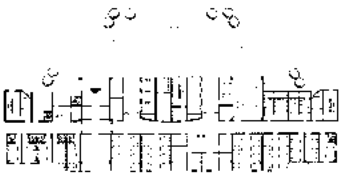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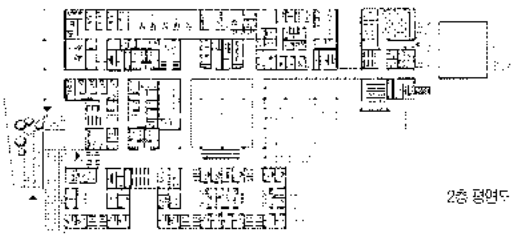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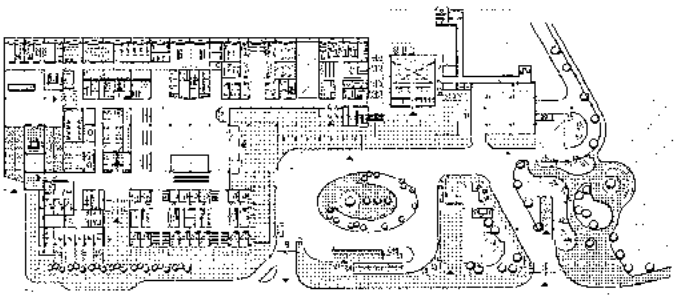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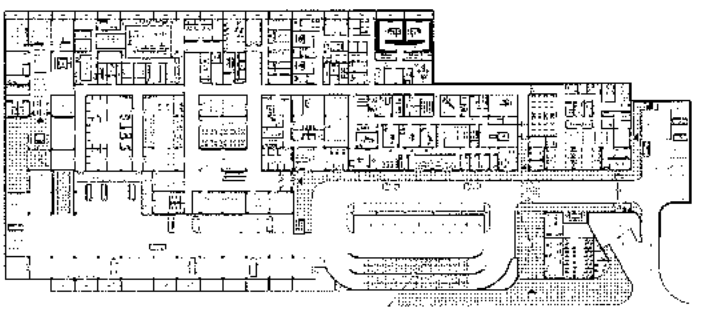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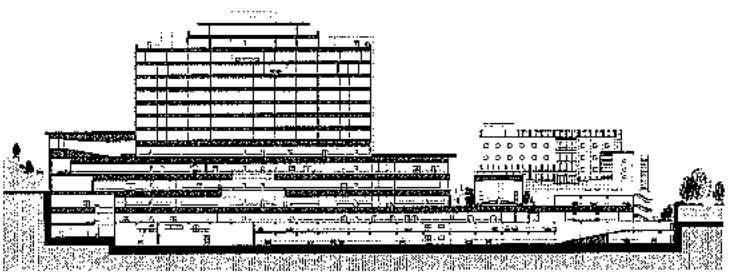

횡단면도

▶ 우수작 / (주)현신종합 건축사 사무소 (김회수)

연면적	52,135.5m²
건축면적	7,748.0m²
건폐율	36.90%
용적률	168.64%
구조	철골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층수	본관동 - 지하3층, 지상13층 부속동 - 지하1층, 지상 6층
외부마감	화강석물갈기, THK24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
주차개요	455대
조경개요	35.7%
병상수	500병상
설계 참여자	김병흠, 문종욱(계획총괄), 이윤석, 임병호, 채철균, 이재훈, 유지상, 배규환, 문봉호, 장길성, 여원민, 이준, 안광우, 정은성, 김태훈.

계획대지는 동서방향으로 구릉의 고저차가 30~40여m로 급경사를 이루고 6~7m의 깊이에 암층이 있어서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경제적인 단면계획과 아울러 기존대지에 경관이 양호한 소나무숲의 최대한의 보존과 북측 아파트에서의 향,조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지의 확보, 사제관, 수녀원, 간호사기숙사의 경사지를 고려한 독립적인 배치와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동선에 따른 내 · 외부공간의 죠닝(Zoning)과 프로그램의 배분을 전체계획의 주안점으로 생각하였다.

아울러 기존 병원의 획일적인 박스(Box형태로부터 벗어나 먼 대양을 향해 항해하는 배와 같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바다 위에 떠있는 듯이 가벼운 유선형의 병동부 형태와 배후 구릉지 능선의 부드러운 곡선의 이미지 등을 전체적인 형태디자인 어휘로 조합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부산의 지역적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내부공간은 동서방향 종축으로 뒷산공원의 조경요소를 내부로 유입시키고 수공간(벽천)과 더불어 중앙홀을 중심으로 아트리움(Atrium)을 계획하고 남북방향 횡축으로는 상부의 천창으로 자연채광이 유입되는 광정으로 호스피탈 스트릿(Hospital Street)을 계획하여 내부실내환경조절과 내부의 각 기능이 쉽게 인지되고 동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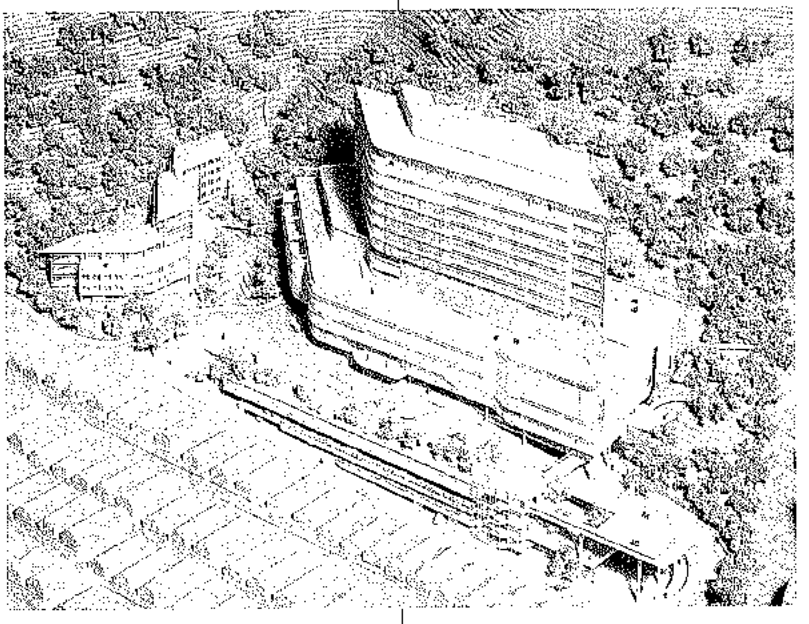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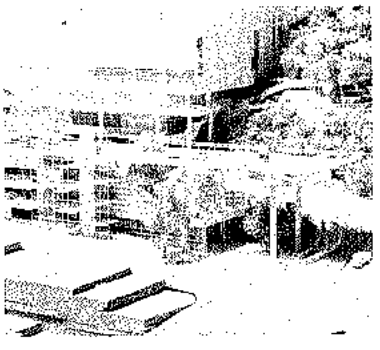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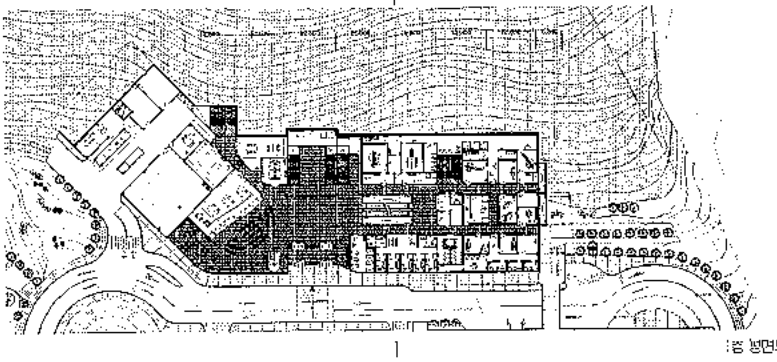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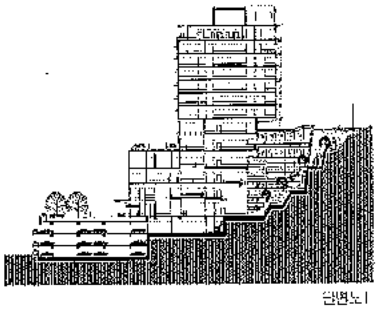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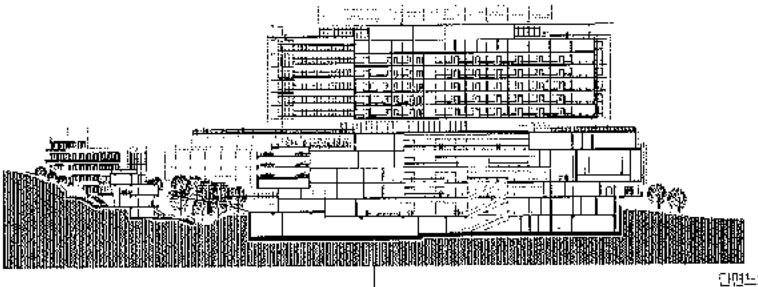

단면도2

▶ **가작 / (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이규창)**

건축면적	9,525.04m²
연면적	51,437.60m²
건폐율	45.36%
용적률	166.48%
구조	LC FRAME 구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병상수	504병상
주차대수	401대
외부마감	외벽 - 병원동/금속패널, 부속동 / 외벽단열시스템, 창호 - 24m 투명복층유리
설계참여	박대식(총괄담당), 백용태, 김신우, 함명균

선교 · 의료 · 봉사

'카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피는 데에 있다.'

선교와 봉사라는 카톨릭 의료기관의 상징성을 확보하며, 새천년 첨단의료시설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환경 조성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의료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남부지역의 중심병원으로서 환자 중심의 병원, 자연친화적인 쾌적함, 치유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감의 병원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새로운 병원상의 한 단면이 되고자 하는데 계획의 목표를 두었다.

배치 · 토지이용계획

병원동의 배치는 도시의 가로축과 나란하게 설정하여 열린 조망과 건물의 정면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병동부의 구성은 일조와 배치축을 고려한 삼각형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사제관, 수녀원 및 기숙사는 각 동의 독립성 및 주거성을 고려하여 대지의 남측에 배치, 병원동으로부터 영역성 확보 및 상호 연계를 꾀하였다.

본 계획의 관건이었던 지형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원형의 진입광장을 설정하고 대지 진입부의 성모상, 계단광장으로부터 병원동으로의 자연스러운 보행자 및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였으며 환자, 이용자를 위한 전면녹지공간과 옥상정원 등 풍부한 외부공간을 형성하였다. 각 기능별 동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지 내 각 기능별 동선을 명확하에 구분하며 대지 내 각 기능별 연계를 위한 순환동선을 계획하고 주변 근린공원과의 연결 및 장래 증축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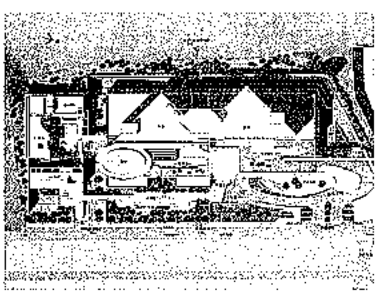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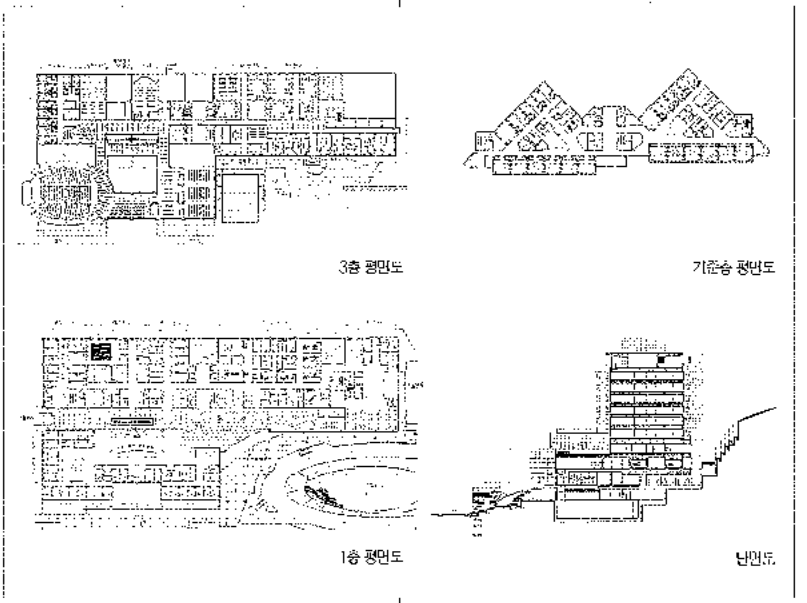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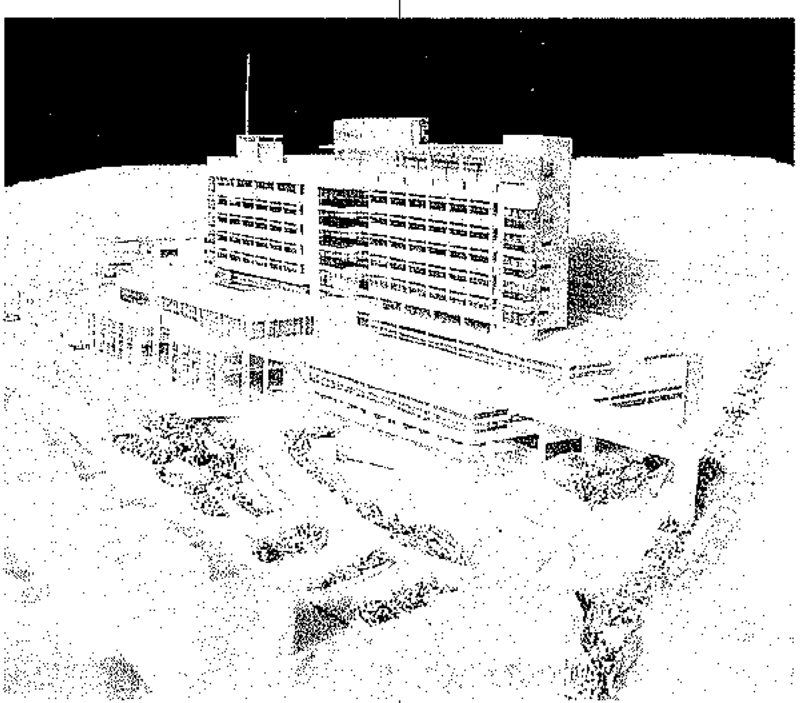

▶ 참가작 /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노형래)

건축면적	9,187.21㎡
연면적	52,269.52㎡
건폐율	43.75%
용적률	156,72%
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30 화강석 버너구이, 물갈기 / T24컬러 복층유리 / T3 알루미늄 시트
설계참여	고종준, 신창식, 주영준, 신인주, 이창훈, 허 한, 원종석, 송기황

Design Motive

완곡의 부드러움과 포용, 낯설지 않은 친숙한 조형언어를 Motive로 전체매스를 형성하며, 외부공간을 매개로 부산이라는 도시와 병원, 그리고 자연을 엮으려 했다.

배치계획

전면으로 넓게 트인 외부공간을 제공해 주 접근이 되는 대지 북측의 교차로 부근으로 충분한 진입공간과 외래부를 배치해 손쉬운 접근을 확보하고, 북측의 아파트 단지와 교차로로부터 떨어진 대지 남측으로 프라이버시를 요하는 사제관, 기숙사 및 근조부가 자리하였다.

전면녹지는 인접한 주택가와 좁은 도로를 고려해 거대한 병원의 스케일 감을 줄이며, 자연과 만나는 부산도시와의 연결을 매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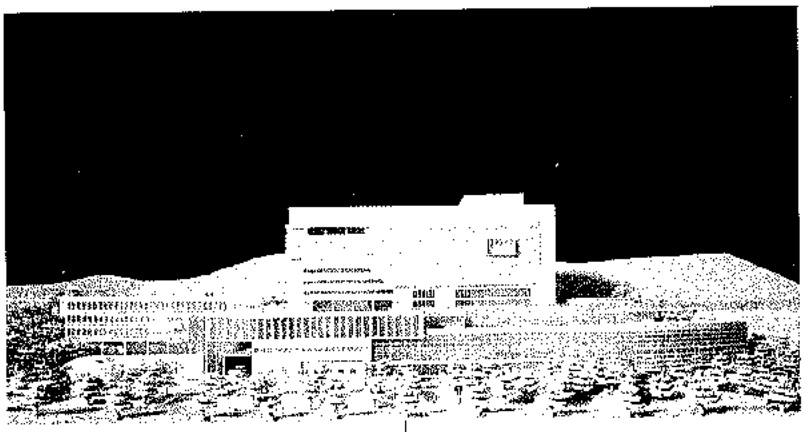

평면계획

풍부한 내부공간을 갖고 손쉬운 war finding이 가능하도록 hospital promenade를 두어 후면으로 중앙진료를 배치하고, 전면으로는 대지 주 진입과 연계된 외래부를 유선형으로 계획해 거부감 없는 새로운 병원 평면안을 제시하였다. 좁은 대지여건으로 충분한 산책공간과 녹지제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3층에 쉽게 접근 가능한 옥상정원을 제공해 주었다.

병동은 중앙이 오픈된 'ㅁ'자형으로 병실 뿐만 아니라 전실을 외기에 면하게 하였으며, 5인실을 기준으로 한 병실에는 환자를 고려해 각각 화장실을 배치하여 기능적인 해결을 하였으며, 1개 층에 2개의 nurse station 과 darkroom를 배치해 충분한 공용공간을 제공하였다.

입면계획

부드러움으로 포용하는 완만한 곡선을 주제로 전체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도시와 자연을 있는 매개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역동적 이미지를 연출해 부산카톨릭병원의 독특한 조형을 만들었다.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커튼월을 적절히 사용해 곡선과 병원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새로운 병원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 된 조형을 형상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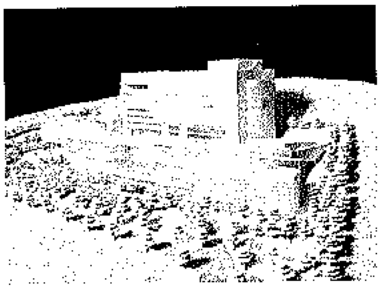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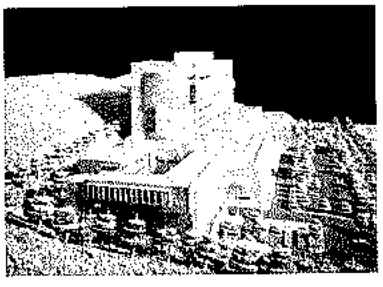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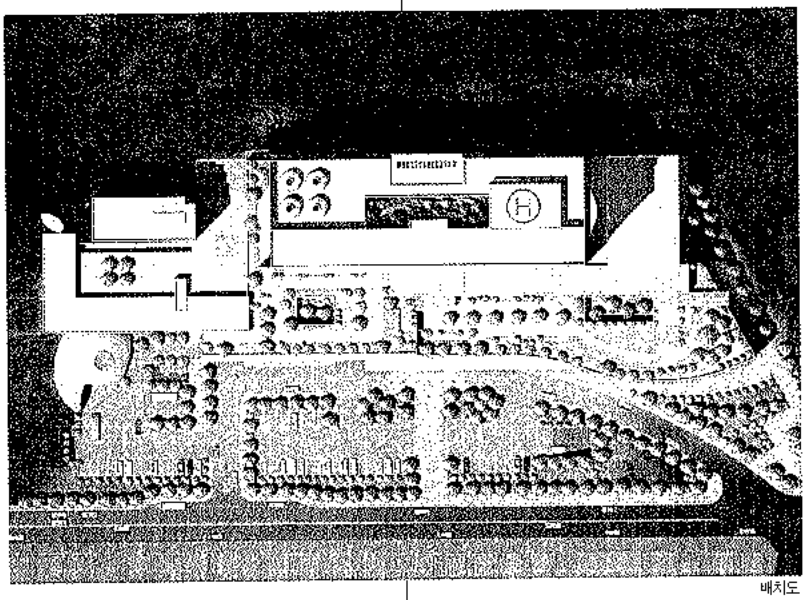

배치도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Domus
a+u
건축문화
신건축

Architectural Review

2000년 9월

이번호는 1851년 이래로 이슈가 되었던 Expo 건축물을 재조명하였으며, "Man, Nature, Technology"의 모토아래 개최된 Hanover 2000의 각 국가관과 주요건물들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낡은 창고를 주택과 사무실로 개조한 사례와 파리 국립 기술 박물관 리노베이션 기사를 실었다.

■ Hanover 2000

1851년 이래로 총 61회 Expo가 개최되었다. 매회마다 당시의 기술과 문화를 반영하는 기념비적인 건물이 세워졌다. 이번 Hanover expo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문화와 기술을 보여주는 pavilion이 세워졌으며, 일부는 영구적으로 존속하도록 계획되었다.

▶ Herzog + Partners의 Expo Cano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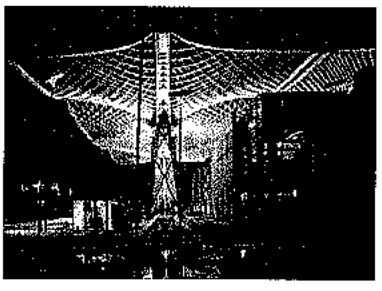

주 야외공연장의 지붕구조물로서 이번 엑스포의 모토인 "Man, Nature, Technology"에 정치적으로도 부합되는 재료인 목재로 지어졌다. 20m높이의 파일론이 지지하는 이 나뭇잎구조의 지붕은 총 10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야외 무대의 연주자들과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있는 작은 파빌리언들을 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중 곡면의 지붕은 방수 처리가 된 목재의 그물구조로서, 지붕의 빗물경사는 마스트 방향으로 처리되어 우수는 모두 마스트 안의 홈통으로 배출된다. CNC robot computer에 의해 이중곡면 부재를 제단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엔지니어, 구조기술자와의 긴밀한 협의로 재료와 형태가 결정되었다.

▶Alvaro Siza and Eduardo Souto de Moura의 포르투칼 관

세라믹으로 유명한 포르투칼의 핸드메이드 타일로 마감된 포르투칼관의 외관은 황금색과 푸른색 벽면의 대비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2개층 높이의 전시홀은 반투명한 비정형 곡면의 천장이 덮고 있다. 전시홀 볼륨의 외벽은 방수처리를 한 코르크재질의 패널로 마감되었는데, 이 건물이 철거될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절제된 형태와 풍부한 재료의 사용으로 비싼 재료와 시공법으로 국력을 자랑하는 여타 국가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Petern Zumthor의 스위스관 ▶Shigeru Ban의 일본관 ▶Cruz Y Ortiz Arquitectos의 스페인관 ▶MVRDV의 네덜란드관 ▶Sarc Architecture의 핀란드관 ▶ Murray O' Laire의 아일랜드관 ▶Gy rgy Vad sz의 헝가리관 ▶Tabanlio lu Architecture의 터키관 ▶Von Gerkan, Marg & Partners의 기독교관 ▶Jean Nouvel의 전시홀 등이 소개되었다.

■ 인테리어 디자인

▶ Jo Crepain의 Antwerp 사무실과 아파트 개조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들이 많은 Antwerp의 항구에 자리잡은 낡은 창고가 건축설계사무실과 주택으로 리노베이션되었다. 전면의 벽돌벽은 보수되었으며, 후면은 알루미늄 패널이 부착되었다. 내부의 주철기둥이 수선되고 검정 라커칠 된 콘크리트 샤프트가 추가되어 구조보강과 함께 각종 설비시설을 내부에 담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거친 콘크리트 마감의 내부는 메탈의 키친 퍼니쳐와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건축주의 모던 페인팅 콜렉션을 돋보이도록 전반적으로 무채색톤이 채택되었다.

▶ Andrea Bruno의 파리 국립기술박물관 리노베이션

■ 기 타

▶런던에서 열린 Kinetic art 전시회 ▶네델란드 젊은 건축가들에게 수여되는 상 Archiprix ▶MVRDV의 Amsterdam 주택 2제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다뤄졌다.

Architectural Record

2000년 9월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젊은 영국 건축가들의 작품을 소개하였으며, 공장이나 창고들을 성공적으로 개조한 인테리어 작품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 High-Tech 아닌 High Design으로 주목받는 영국의 젊은 건축가

Norman Foster, Richard Rogers와 같은 High-Tech건축가들은 복권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시행된 랜드마크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영국의 건축주들은 보다 디자인에 민감해지고 있으며, 위의 프로젝트보다는 소규모이지만 건축적 아이디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프로젝트들을 젊은 건축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Caruso St Jhon의 The Walsall Art Gallery는 데뷔작치고는 매우 신중한 재료의 사용과 조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High-Tech의 해독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Alsop & St rmer의 Pekham 도서관은 낙후된 지역 사회를 부흥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넓은 공공공간과 색색의 유리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다채로운 빛으로 가득한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역의 구심점이 되었다.

▶ Fermau & Hartman의 Oxygen Media 신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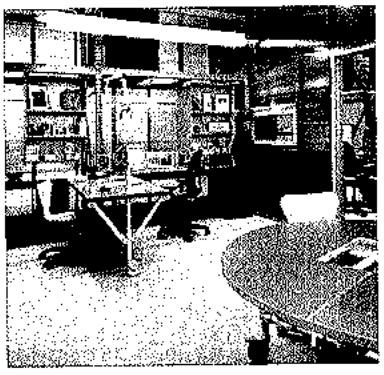

Oxygen은 최근 급성장하는 여성전용 케이블 TV 방송과 네트웍 회사로서 타이트한 예산과 촉박한 공기안에 사옥이 완공되어야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국 맨하탄의 오래된 공장건물을 개조한 Chelsea Maket의 상부 2개층에 사옥이 자리잡게되었다. Fermau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어슬렁거릴 수 있는 책상들 사이의 공간에 관심을 가졌다. 전체적으로 두종류의 사회적 공간이 계획되었는데, 전 직원이 모여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큰 홀과 비형식적이고 자유로이 프로젝트에 관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을 여러 곳 배치하였다. 전통적인 작업공간과는 달리 가구이면서 수납 기능을 담당하는 스틸 프레임의 선반시스템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 인테리어 근작

▶ Jakob+MacFarlane의 파리 퐁피두 센터 테라스카페 리노베이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마친 퐁피두 센터의 최상층 레스토랑은 Jakob+MacFarlane의 알루미늄 쉘로 특징지어진다. 그들 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작업하기보다는 일단 프로젝트 안으로 침투하여 가장 적당한 것을 모색하는 이들은 이전 프로젝트에서 31inch×31inch의 바닥 그리드에서부터 작업을 출발하였다. 이 바닥 그리드는 위로 융기되어 4개의 쉘을 만들어내며, 쉘 내부의 색깔은 각각 수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선택되었다. 실제적으로 알루미늄 볼륨들을 플로어에 부착시키는데는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 27개의 스프링 커넥tus이 설치되어 하중에 의한 휨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컴퓨터 모델링은 예산의 절감과 공기를 단축시켜주었을뿐 아니라 건축가들의 디자인 프로세스에도 도움을 주었다. 초기에는 4개의 BOX로 계획되었다가 컴퓨터의 변형에 의해 구조와 스킨을 동시에 담당하는 shell이 채택된 것이다.

낡은 창고건물을 리노베이션한 ▶ Architectonis의 뉴욕 Duggal Digital Headquarter, 전구공장을 리노베이션한 ▶ Sauerbruch Hutton

의 Zumtobel Staff 정보센터 Elliott+Asosociates의 North Guest Apartment ▶ Marble Fairbanks의 뉴욕 SoHo Loft ▶ Morphosis의 라스베가스 레스토랑

■ 기 타

▶ 아름답고 독특한 "계단"들을 담은 Photo Essay ▶프랑스 Nantes에서 열린 유체역학적 형태를 추구하는 NOX의 Lars Spuybroek의 전시회," Vision Machine" ▶ Biomorphism (생체표현)이 두드러진 Venice Biennale 소식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Domus

2000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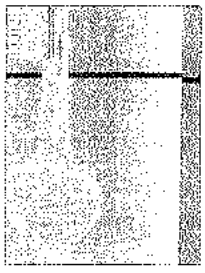

새로워진 DOMUS 9월호는 상하이시를 집중 조명하여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상하이시 마스터플랜 현상에 제출된 스타 건축가들의 계획안들을 다루었다. 또한 새롭게 도약하려는 이태리 남부도시 Salerno의 재개발 현황과 Chipperfeild와 Hadid가 짓게 될 Salerno 법원과 페리 터미널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 Michael Young의 Reykjavik, Astro Bar

Reykjavik,은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인구 400,000의 작은 도시국가이다. 바람이 많고 추운기후로, Young은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색상을 선택하였다. 이곳은 지열을 이용한 야외 온천이 많은 곳으로 실내에 야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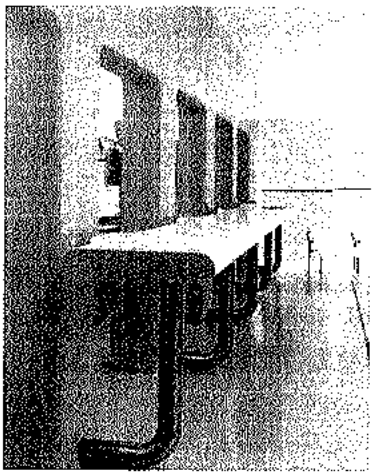

Michael Young의 Reykjavik, Astro Bar

hot spring을 만들고 마치 피크닉을 온 것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내부의 모서리각은 모두 둥글게 깎여서 유동적 형태를 만들어낸다. 디테일이 모두 제거되고 마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실제 생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이태리 남부 도시 Salerno의 도시계획

BC194년 로마제정시기에 세워진 상업과 무역 중심도시인 Salerno는 11세기의 Doumo를 비롯하여 많은 건축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비정형적이고 좁은 보행자도로로 이뤄진 구도심과19세기의 근대적 그리드 체계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De Luca Salerno 시장은 도시의 대대적인 재개편과 개발을 통해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제 공모전을 통해 도시재개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David Chipperfield의 구도심 거리 제안은 1998년 구도심 재개발 공모에 당선된 안으로 구도심 길을 따라 기념비적인 구조물에 계단, 램프, 테라스등을 부착하는 프로젝트이다.

▶Sejima & Nishigawa의 공원 재개발

허브가든과 식물원을 테마로 하는 도시공원 재개발안으로서 첫 번째 단계는 사인과 이미지들이 그려진 백색 포장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Sejima & Nishigawa의 공원

▶Zaha Hadid의 페리터미널

페리와 유람선의 승객을 수용하게될 이 터미널의 1층에는 티켓오피스와 카페, 신문 kiosk가 위치하게 된다. 일련의 램프를 통해 레스토랑과 배에 이르는 입구에 이르게된다. Hadid는 구조물을 등대의 불빛에 비유하였다. Salerno 항구의 입구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David Chipperfield의 Salerno 법원이 소개되었다.

■ 건축계 최근 소식

▶Frank Gehry의 새로운 구겐하임

구겐하임미술관은 Frank Gehry의 새로운 미술관 계획을 뉴욕 맨하탄의 East River의 9,12,13번 피어 재개발 사업위원회에 제안하였다. 빌바오 구겐하임보다 2배 면적으로서, 이 미술관의 건립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Massimiliano Fuksas의 로마 Italy Space Agency 본사 컴피티션 당선 ▶Hanover Expo 2000 ▶ Michael Wilford의 베를린 영국 대사관 ▶로마 Villa Medici에서 열리는 야외 전시회 "the City, the Garden and Memory" ▶스위스에서 열린 'Urban Globalization vs Local Identity'라는 주제의 Symposium 소식 등이 소개되었다.

■ 기 타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 상하이의 기념비적 타워와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했던 상하이시 마스터플랜 재고 ▶

Frank Gehry의 Experience Music Project ▶자동차 유전학 ▶베니스 비엔날레 소식 ▶이태리의 두 거장 디자이너 Enzo Mari와 Ettore Sottsass의 꽃에 관한 대담 등을 다루었다.

a+u

2000년 9월호

이번 호에서는 '하노버 국제박람회 2000'에 대한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전시관과 주제관의 건축을 소개하면서, 이번 박람회에 선보인 건축물들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를 한 마이클 웹(Michael Webb)의 에세이와 건축가들의 작품 설명, 사진과 도면, 디테일 등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 특집 - 하노버 국제박람회 2000

▶ 소국(小國)들이 더 빛났던 박람회

하노버 국제박람회는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대박람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온 국제박람회로서 그 동안 줄기차게 박람회를 개최해온 영국, 미국, 프랑스와는 달리 한번도 국제 박람회를 개최해 본 적이 없는 독일이 모처럼 마련한 행사이다. 여행이 불편했던 시절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문물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오늘 이러한 박람회의 성격은 조금 변하게 되었다. 강대국들보다는 오히려 작은 나라들이 자국의 모습에 대한 강한 인상을 세계인의 기억에 강하게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시관 건축에 있어서도 작은 나라들의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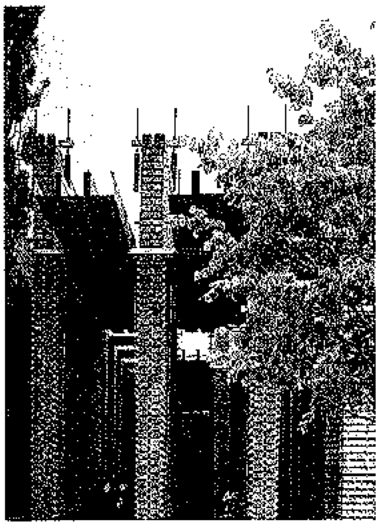

피터 준터(Peter Zumthor)의 스위스관

▶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들 중 하나는 피터 준터(Peter Zumthor)의 스위스관이다. 스위스는 자국의 아이덴티티와 이번 박람회의 테마(인간-자연-기술)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자국의 건축가들에게 설계안의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당선된 피터 준터에게 전시관 계획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임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조국과 국제박람회의 테마에 대한 시적인 메타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준 것이었다. 콘크리트의 슬라브 위에 강철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낙엽송의 각재를 쌓아 길이 52미터의 미로를 만들었다. 낙엽송으로 이루어진 벽과 천장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을 주어 쌓아 빛과 바람 외부 혹은 건너편 미로의 풍경이 들어오도록 되어있다. 입구는 여러 군데 설치하여 관람자는 자유로이 미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별 다른 전시물 없이 전시관 건물 자체가 전시물이 이 미로를 나무 향기를 맡아가며 거닐도록 계획하였다. 여기서 관람자들은 자연의 모습, 인간의 표정, 기술의 축적 등 이번 전시회의 테마에 대한 생각들과 함께 스위스의 강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MVRDV의 네덜란드관

▶ 전시가 개막되기 전 가장 기대를 모았던 작품은 MVRDV의 네덜란드관이었다. 최근 건축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던 이들이 이번 박람회에서 어떠한 작품을 내 놓을 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6층의 슬라브를 중첩하고 각 층마다 서로다른 랜드스케이프를 부여한 후 외벽을 모두 없애 이들을 노출시킨다는 깔끔한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그 결과물은 조잡한 것이 되었다. 상부의 거대한 매스는 중압감을 가져왔고, 전시관 내부의 전시물도 개념적인 것이어서 전시 내용 보다는 건물의 중압감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했다는 평들이 많이 나왔다. 또한 동선처리도 하나의 동에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도록 하여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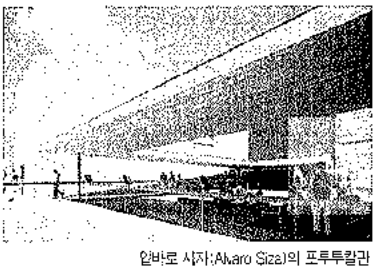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포루투칼관

▶ 여러 국제박람회에서 꾸준히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여 왔던 북미의 국가들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평이한 작품들을 내 놓아 조금은 김이 빠져버린, 재미없는 모습들을 나타내었다. 바다스 & 파트너스(Vad sz and Par-

tners)의 헝가리관은 하늘을 향해 벌린 두 손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목조로 된 독특한 입구구성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포루투칼관은 평범한 내부공간 구성을 보였으나, 입구부분의 디자인에서 누구라도 그의 작품임을 알 수 있는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번 박람회에서도 커다란 이슈로, 대부분의 전시관들은 전시가 끝난 후 철거되고 그 폐자재들은 다시 재사용 되도록 계획되고 있다. 스위스관의 경우 사용된 목재들은 경매에 붙여져 판매될 계획으로 있으며, 일본관의 경우 재활용 종이를 사용한 구조물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축문화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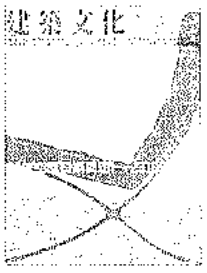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서 건축과 가구의 토털디자인에 대한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건축물과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 그리고 거주인의 의상까지 일관되게 디자인하려 했던 여러 초기 근대 건축가들처럼 주택에서 건축과 가구를 함께 디자인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디자인 방법의 가능성과 과거와의 변화된 양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특집: 주거공간과 가구의 토탈 디자인

▶건축가의 가구디자인: 현재 건축가가 가구까지 디자인하는 사례는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디자인 컨셉을 반영하여 일체감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건축설계에서 가구설계까지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건축가의 손에 의하여 건축과 가구가 토탈디자인된 사례를 주거공간에 국한하여 16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각각은 공간과 가구에 있어서의 컨셉 형성에서부터 가구제작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구의 소재와 가격, 제작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제작에 있어서의 노우하우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축가와 가구디자이너의 단체에 의해 디자인된 가구도 6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에세이와 대담으로는 건축가 요꼬가와 켄(横河健)과 가구모델러인 미야모토 시게키(宮本茂紀)의 대담과 데이빗 레클레르(David Leclerc)가 집필한 건축가 R. M. 쉰들러(Schindler)의 가구디자인에 관한 에세이를 게재하고 있다.

▶건축가에 의한 가구디자인은 근대 거장들과 근대 초기의 아방가르드들에 의해서 행해진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은 이들의 가구디자인 경향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근대 거장들처럼 의자나 테이블 등의 소품을 디자인하거나 근대 초기의 아방가르드들이 주택의 디자인과 분위기를 맞춘 가구디자인으로 양식적 통일을 하려 했던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공간에 대한 컨셉을 실현하기 위해 가변벽 형태의 수납장이나 이동식 테이블이 부착된 벽면 등 공간의 기능적인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 가구를 만들고 당초의 공간개념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가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자나 테이블 등 독립된 소품보다는 붙박이 장이나 책장, 벽에 붙은 테이블 등 그 규모가 큰 특징을 보이며, 독립된 소품들에서는 오히려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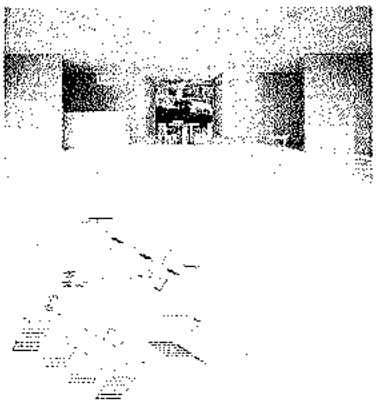

스퀘어 그리드의 집

▶반 시게루(坂茂)의 '스퀘어 그리드의 집'은 단층의 정방형 평면을 갖는 주택을 가로세로로 3등분하여 9개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이 분할하는 벽들을 가변형의 간막이로 구성하여 주택의 내부공간을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커다란 하나의 공간에서 9개의 분할된 작은 방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공간을 지탱하는 주택 양 끝단의 마주보는 두터운 벽면은 이들 간막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거대한 수납장이며, 설비가 매입된 공간이기도 하다. 와따나베 마코또(渡 眞理)와 키노시타 요우코(木下庸子)가 참여한 설계조직 ADH가 설계한 YAH(Y씨의 주택), FUH(집합주택 '靑山居'의 F씨의 주호)과 이리에 케이이치(入江經一)와 Power 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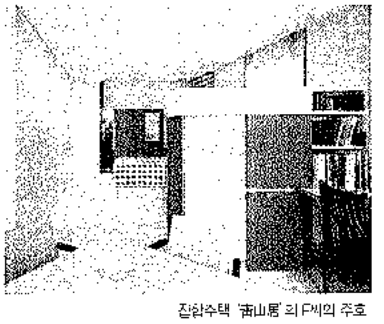

집합주택 '靑山居'의 F씨의 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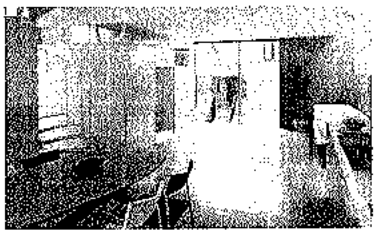

西藏有의 주택

Studio의 공동작업인 西麻布의 주택 등에서도 설치된 가구들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있고, 이들 가구의 변형에 의해 공간이 분할되거나 통합되고 있다.

신건축

9월호

이번 호에서 소개된 작품들 중 가장 많은 지면에 할애된 작품은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顯)의 '국립 하코다테 미래대학'으로 혁신적인 공간구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 밖에 안도 타다오(安藤忠雄)의 '페브리카(FABICA)', 요꼬가와 켄(横河健)의 'Sejio6', 반 시게루(坂茂)의 'GC오오사카 빌딩', 미야자키 히로시(宮崎浩)의 再生木을 사용한 세 개의 프로젝트 등이 소개되었다.

▶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顯)의 '국립 하코다테 미래대학'

이 대학 건물은 연면적 27,000㎡의 거대한 유리상자의 모습을 하고있는 외관으로부터 보는 이를 놀라게 하고

있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식당, 체육관, 사무실 등등의 대학 시설물들을 하나의 거대한 매스안에 통합하여 놓은 것이다. 이 공립 하코다테 미래대학은 설립과정에서부터 새로운 시도들을 하였다. 학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 대학의 교수진이 될 30대의 젊은 학자들로 구성된 '대학계획책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건축, 가구디자인에서부터 교수방법, 커리큘럼, 신입생 모집방법, 지역사회와의 교류방법 등 대학 설립에 필요한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설계공모로 이루어진 이 대학의 건축설계에서 야마모토 리켄이 제안한 커다란 스튜디오공간(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축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진보적인 사고를 지닌 이 위원회는 건축가를 놀라게 할 정도로 아제껏 실현해 보지 못한 대학건물을 완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초 계획에서 3개의 건물군으로 분리되었던 시설을 하나의 거대공간으로 통합하고, 모든 벽을 유리로 마감함으로서 각 개실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끔 하였으며, 강의실은 물론 교수 연구실도 유리벽으로 시각적인 개방을 허락하여 그간 건축가가 실현시키지 못했던 제안들이 현실화되게 되었다.

▶ 안도 타다오(安藤忠雄)의 '페브리카(FABICA)'는 이탈리아 톨레비조에 세운 베네통 아트 스쿨이다. 이 작품에서 안도는 종래의 노출 콘크리트로 작업하던 자신의 스타일과 이탈리아지방의 전통양식을 혼합하여 건물을 구성하고 있다. 안도는 이번 작품을 통해 '역사에의 응답'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요꼬가와 켄(横河健)의 'Sejio6'는 집합주택 형태에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일본 집합주택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그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5가구가 모여 살도록 계획된 이 집합주택은 이중 1가구가 이 집의 주인으로, 임대하는 4가구와의 적절한 연결과 단절을 꾀하고 있고, 각 주호의 프라이버시 확보와 함께 집합주택이 가지는 사회성의 확보, 그리고 집합주택에서 놓치기 쉬운 풍요로운 삶의 공간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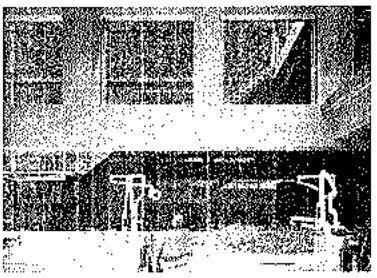

GC오오사카 빌딩

▶ 반 시게루(坂茂)의 'GC오오사카 빌딩'은 치과의료기기제작회사의 오오사카 영업소이다. '목재내화피복-01'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 철골구조를 내화목재로 피복한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 내화목재는 ISO834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시켰다. 이러한 목재로 마감된 구조는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의 입면에서도 유리벽면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어 마치 목재로 이루어진 집을 연상시킨다. 또한 6층 높이의 건물 옆면에 동일한 높이의 담쟁이 담과 그 사이에 작은 마당공간을 두어 삭막해지기 쉬운 의료기기의 쇼룸에 녹색의 자연스러움을 도입하고 있다. 미야자키 히로시(宮崎浩)의 '再生木루버하우스', 거리의 驛 人保의 鄕, TAG(Transportation Amenity Garden) 등 再生木을 사용한 세 개의 프로젝트는 각각 재생목 사용 가능성, 재생목사용에 있어서 디테일의 연구, 목조디테일의 다른 재료에의 사용이라는 테마를 갖고 작업한 것으로 경쾌한 공간구성과 함께 재료사용에 대한 그의 연구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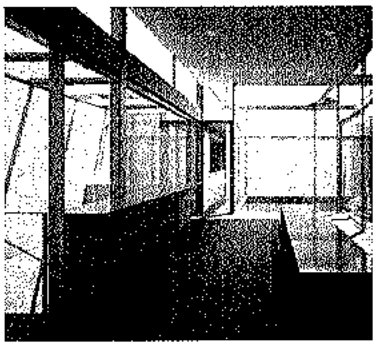

再生木루버하우스

도시계획법시행령(3)

도시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81조(회의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 ·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 · 도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 · 도의 공무원
3.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방재 ·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3조(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 · 군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 ·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2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 부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2이상의 시 · 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인구가 많은 시 · 군 또는 구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및 부시장 · 부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

③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 · 군 · 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 · 군 · 구의 공무원
3.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방재 ·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82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제7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수당 등)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87조(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및 활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표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개발 ·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데이타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 대민 서비스의 제공 등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축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되고 호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 · 활용 및 표준화 등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계획의 작성기준 및 수립절차 등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8조(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명시한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 · 위치 및 종류
2. 준용하고자 하는 조항
3. 준용하고자 하는 이유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의 준용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시 · 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9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경기도외의 지역에 있는 군에 한한다)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협의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경기도외의 지역에 있는 군에 한한다)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결정

가. 5제곱킬로미터 미만인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도시계획구역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벌칙

제90조(과태료의 부과)

① 시 · 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 · 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도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관한 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안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주민의견 반영여부의 통보에 관한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 · 공람을 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 도시계획결정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을 신청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④ 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제24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안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⑤ 지형도면의 승인기한에 관한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지형도면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 7월 1일까지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용의 청사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중 공영차고지는 동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은 동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광장으로 본다.

제6조(전용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은 제29조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 · 제62조 · 제6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전용주거지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 · 1종일반주거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②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③ 2000년 7월 1일 당시의 1종일반주거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1종일반주거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미관지구 및 제2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종미관지구(관광지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4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종미관지구 중 관광지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와 제5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미관지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고도 또는 최저고도를 정하여 지정된 고도지구는 각각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또는 최저고도지구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존 또는 중요시설물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는 각각 제3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자원보존지구 또는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항지구는 제30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는 제30조제2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상세계획안에 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지구 또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조제3호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1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 ·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 ·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2 내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2 내지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제20호중 "도시계획법 제82조"를 "도시계획법 제69조"로 한다.

③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풍치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하고, 동목의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⑥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⑦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⑧ 전통사찰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라목중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⑨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적용대상구역"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 한다.

⑩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제5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⑪ 농업 · 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⑫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27조의3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의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⑭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⑮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제9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⑯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동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란 제2호 내지 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각각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을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⑱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⑲ 소음 · 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⑳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본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 다목 및 제14호,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6조제2항 · 제3항, 제23조 내지 제30조,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7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내지 제86조와 제88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 제36조제3항 · 제4항, 제37조제3항 · 제4항, 제39조, 제52조, 제59조 내지 제69조,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6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내지 제94조, 제96조, 제9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1항 · 제2항, 제9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82조"를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7조 내지 제58조, 제63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㉒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도시계획법 제2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한다.

㉓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의4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㉔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제4항"을 "도시계획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㉕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㉖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로 한다.

㉗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4.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계획법 제26조"로, "지적고시 승인신청"을 "지형도면승인신청"으로,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㉚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로 한다.

제37조제10호 및 제39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8조"를 각각 "도시계획법 제66조"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도시계획법 제71조"로 한다.

㉛ 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㉝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한다.

㉞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6조"로 한다.

㉟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㊱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의 내용란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공공시설용지"를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도시계획시설용지"로 한다.

㊲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제50조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마. 당해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3조, 하수도법 제15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나. 도로 ·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의 면적 미만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으로서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공공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4) 보전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미만

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 · 넓이 ·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 내려앉음 ·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 · 다지기 · 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4. 토석의 채취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변의 상황 ·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토지분할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을 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후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1) 허가신청인이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2)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분할하기 전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경우

(나)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과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이며,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1) 녹지지역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4) 국 · 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 ·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환경의 오염,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이동이 용이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 · 기록매체복제업 ·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 필름현상 ·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 · 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 · 기록매체복제업 ·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 필름현상 ·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 · 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 · 기록매체복제업 ·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 필름현상 ·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 · 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 ·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별표 7 제2호마목의 공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1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

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7조제2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면적의 2배(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4배) 이하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 · 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 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 미용원 ·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 · 경찰관파출소 · 소방서 · 우체국 · 전신전화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 ·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 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 체력단력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 수리점 ·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 표구점 · 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장의사 · 동물병원 · 독서실 ·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 · 성당 · 사찰 · 기도원 · 수도원 · 수녀원 · 제실 · 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음악당 · 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 · 공회당 · 회의장 · 마권장외발매소 · 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 ·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기념관 · 산업전시장 ·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 · 식물원(동물원 · 식물원 ·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 대형점 · 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9.8.7. 개정)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9.8.7. 개정)
9. 운동시설
가. 탁구장 · 체육도장 ·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육상 · 구기 · 볼링 · 수영 · 스케이트 · 로울러스케이트 · 승마 · 사격 · 궁도 · 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0. 업무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금융업소 · 사무소 · 신문사 ·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 수상관광호텔 · 한국전통호텔 ·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 장
물품의 제조 · 가공(염색 · 도장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 · 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 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 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 · 양봉 ·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 ·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 보육 · 교육 ·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9월)

(2000. 9. 30. 현재)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전월말 회원수		7,701		2,995		718		547		236		256		277		156		920		183		210		180		216		117		267		339		84	
금 별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건축사	2급
회 원 수		7,685	16	2,991	4	717	1	547	0	236	0	256	0	276	1	156	0	917	3	183	0	209	1	176	4	215	1	116	1	267	0	339	0	84	0
회원변동사항	입 회	17	0	4		5				2				2		1		1						1						1					
	재입회	6	0	3		1																						1				1			
	전 입	4	0	2						1												1													
	전 출	-9	0	-2										-1				-5		-1															
	폐 업	-16	-1	-7		-1		-2						-1				-4							-1							-1			
	사 망	-1	0	-1																															
	등록취소	0	0																																
금월말 회원수		7,686	15	2,990	4	722	1	545	0	239	0	256	0	276	1	157	0	909	3	182	0	210	1	177	3	215	1	117	1	268	0	339	0	84	0
계		7,701		2,994		723		545		239		256		277		157		912		182		211		180		216		118		268		339		8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건축사회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회원	건축사	7,686	2,990	722	545	239	256	276	157	909	182	210	177	215	117	268	339	84
	2급	15	4	1	0	0	0	1	0	3	0	1	3	1	1	0	0	0
	계	7,701	2,994	723	545	239	256	277	157	912	182	211	180	216	118	268	339	84
	비율(%)	100.0	38.9	9.4	7.1	3.1	3.3	3.6	2.0	11.8	2.4	2.7	2.3	2.8	1.5	3.5	4.4	1.1
준 회 원		15	5	7	0	0	0	0	0	0	0	1	0	0	0	2	0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형태별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원수	5,230	2,454	17	7,701	
비율(%)	67.9	31.9	0.2	100.0	
사무소수	4,729	1,600	15	6,344	
비율(%)	74.5	25.2	0.2	100.0	

설계도서신고현황

2000년도 9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9월분(99.9) 6백6십6만8천7백23㎡ 보다 40.5%(2백7십만3백76) 감소한 3백9십6만8천3백47㎡의 실적을 보임. (97년 9월의 41.1%)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9월 누계 4천5백4만7천7백27㎡ 보다 8.6%(3백8십6만2천9백69) 증가한 4천8백9십1만6백96㎡의 실적을 보임. (97년 9월의 54.6%)

다. 전월비

전월 8월분(2000.8) 4백5십9만7천4백7㎡ 보다 13.7% (6십2만9천60) 감소한 3백9십6만8천3백47㎡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부 산	101,246	713,455	612,209	604.7
	대 구	102,373	165,387	63,014	61.6
	인 천	212,062	288,424	76,362	36.0
	충 북	84,568	133,740	49,172	58.1
	전 남	60,634	124,520	63,886	105.4
	경 북	68,552	95,397	26,845	39.2
	경 남	179,909	205,741	25,832	14.4
감소지역	서 울	3,962,112	1,075,545	(2,886,567)	-72.9
	광 주	119,986	78,637	(41,349)	-34.5
	대 전	87,319	84,350	(2,969)	-3.4
	울 산	54,873	11,319	(43,554)	-79.4
	경 기	1,201,502	692,537	(508,965)	-42.4
	강 원	93,318	66,575	(26,743)	-28.7
	충 남	156,582	111,621	(44,961)	-28.7
	전 북	137,964	76,324	(61,640)	-44.7
	제 주	45,723	44,775	(948)	-2.1
합 계		6,668,723	3,968,347	(2,700,376)	-40.5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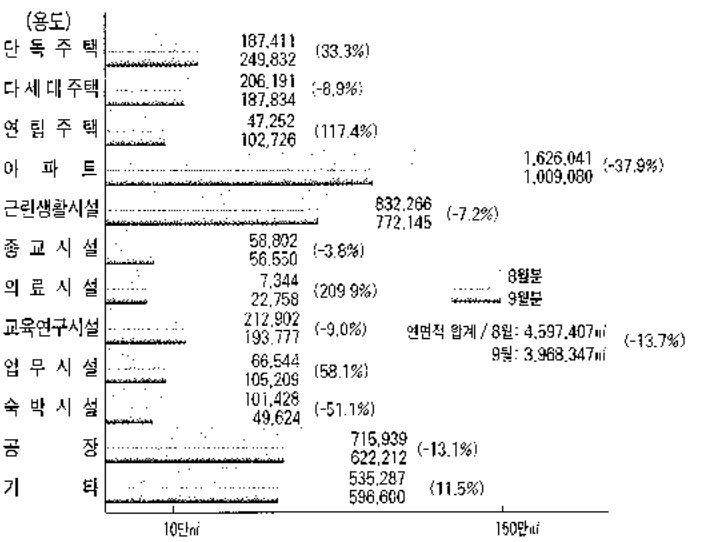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도 9월분)

구분 / 용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627	665	152,612	775	830	249,832	148	165	97,220	63.7	
다세대주택	156	170	114,248	316	323	187,834	160	153	73,586	64.4	
연립주택	39	43	77,359	25	29	102,726	(14)	(14)	25,367	32.8	
아파트	71	116	3,918,416	55	68	1,009,080	(16)	(48)	(2,909,336)	-74.2	
근린생활시설	1,275	1,327	708,985	1,418	1,461	772,145	143	134	63,160	8.9	
종교시설	41	42	26,327	63	66	56,550	22	24	30,223	114.8	
의료시설	13	14	13,494	13	15	22,758	0	1	9,264	68.7	
교육연구시설	141	150	230,587	92	94	193,777	(49)	(56)	(36,810)	-16.0	
업무시설	32	34	24,650	30	30	105,209	(2)	(4)	80,559	326.8	
숙박시설	42	45	32,766	44	45	49,624	2	0	16,858	51.4	
공장	488	618	507,856	517	664	622,212	29	46	114,356	22.5	
기타	482	575	861,423	427	515	596,600	(55)	(60)	(264,823)	-30.7	
합계	3,407	3,799	6,668,723	3,775	4,140	3,968,347	368	341	(2,700,376)	-40.5	(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 (2000년 9월 누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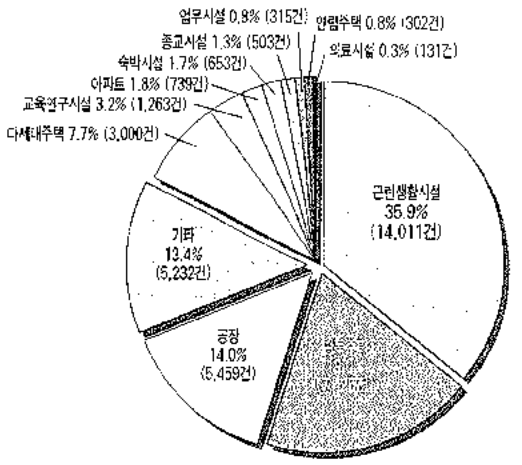

건수 (총 39,03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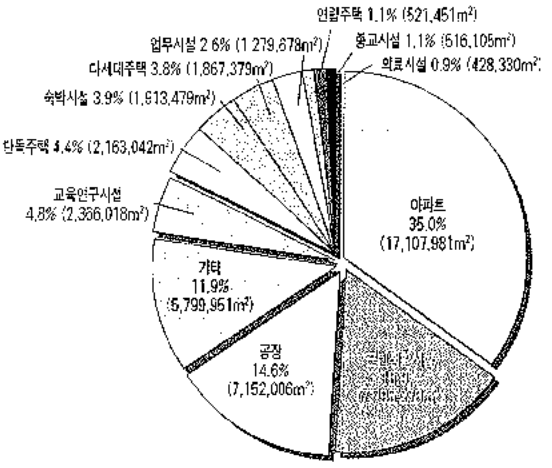

연면적 (총 48,910,696㎡)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 9월분)

구분 / 건축사회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481	483	3,962,112	431	431	1,075,545	(50)	(52)	(2,886,567)	-72.9	
부 산	112	163	101,246	367	380	713,455	255	217	612,209	604.7	
대 구	176	176	102,373	208	208	165,378	32	32	63,014	61.6	
인 천	99	103	212,062	306	306	288,424	207	203	76,362	36.0	
광 주	108	146	119,986	132	166	78,637	24	20	(41,349)	-34.5	
대 전	127	127	87,319	93	93	84,350	(34)	(34)	(2,969)	-3.4	
울 산	67	67	54,873	11	11	11,319	(56)	(56)	(43,554)	-79.4	
경 기	835	987	1,201,502	928	1,080	692,537	93	93	(508,965)	-42.4	
강 원	162	186	93,318	118	127	66,575	(44)	(59)	(26,743)	-28.7	
충 북	254	276	84,568	166	183	133,740	(88)	(93)	49,172	58.1	
충 남	210	210	156,582	146	146	111,621	(64)	(64)	(44,961)	-28.7	
전 북	109	111	137,964	137	142	76,324	28	31	(61,640)	-44.7	
전 남	125	127	60,634	213	213	124,520	88	86	63,886	105.4	
경 북	186	219	68,552	141	206	95,397	(45)	(13)	26,845	39.2	
경 남	271	327	179,909	310	359	205,741	39	32	25,832	14.4	
제 주	85	91	45,723	68	89	44,775	(17)	(2)	(948)	-2.1	
합 계	3,407	3,799	6,668,723	3,775	4,140	3,968,347	368	341	(2,700,376)	-40.5	(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 (2000년 9월 누계분)

구분 / 건축사회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3,449	3,467	24,674,692	4,765	4,809	18,724,609	1,316	1,342	(5,950,083)	-24.1	
부 산	1,409	2,012	1,287,427	1,524	2,014	2,396,884	115	2	1,109,457	86.2	
대 구	1,412	1,412	1,115,252	1,719	1,719	1,733,337	307	307	618,085	55.4	
인 천	988	1,029	2,225,391	2,446	2,446	2,587,049	1,458	1,417	361,658	16.3	
광 주	1,119	1,345	899,286	938	1,165	728,638	(181)	(180)	(170,648)	-19.0	
대 전	801	801	473,226	1,381	1,380	1,119,142	580	579	645,916	136.5	
울 산	833	846	548,694	806	806	551,451	(27)	(40)	2,757	0.5	
경 기	6,582	8,019	6,731,754	10,819	12,932	11,025,182	4,237	4,913	4,293,428	63.8	
강 원	1,580	1,728	632,211	1,479	1,599	719,380	(101)	(129)	87,169	13.8	
충 북	1,956	2,232	1,123,899	2,281	2,599	1,518,584	325	367	394,685	35.1	
충 남	1,634	1,634	933,942	1,777	1,777	1,030,226	143	143	96,284	10.3	
전 북	1,106	1,127	694,361	1,370	1,379	967,421	264	252	273,060	39.3	
전 남	1,503	1,556	739,106	1,632	1,671	1,025,597	129	115	286,491	38.8	
경 북	1,727	2,002	1,113,495	2,114	2,678	1,517,798	387	676	404,303	36.3	
경 남	2,386	2,778	1,556,485	3,031	3,646	2,720,884	645	868	1,154,399	73.7	
제 주	736	827	288,506	951	1,079	544,514	215	252	256,008	88.7	
합 계	29,221	32,815	45,047,727	39,033	43,699	48,910,696	9,812	10,884	3,862,969	8.6	( )=마이너스